

19

독일통일 총서

외교 분야 II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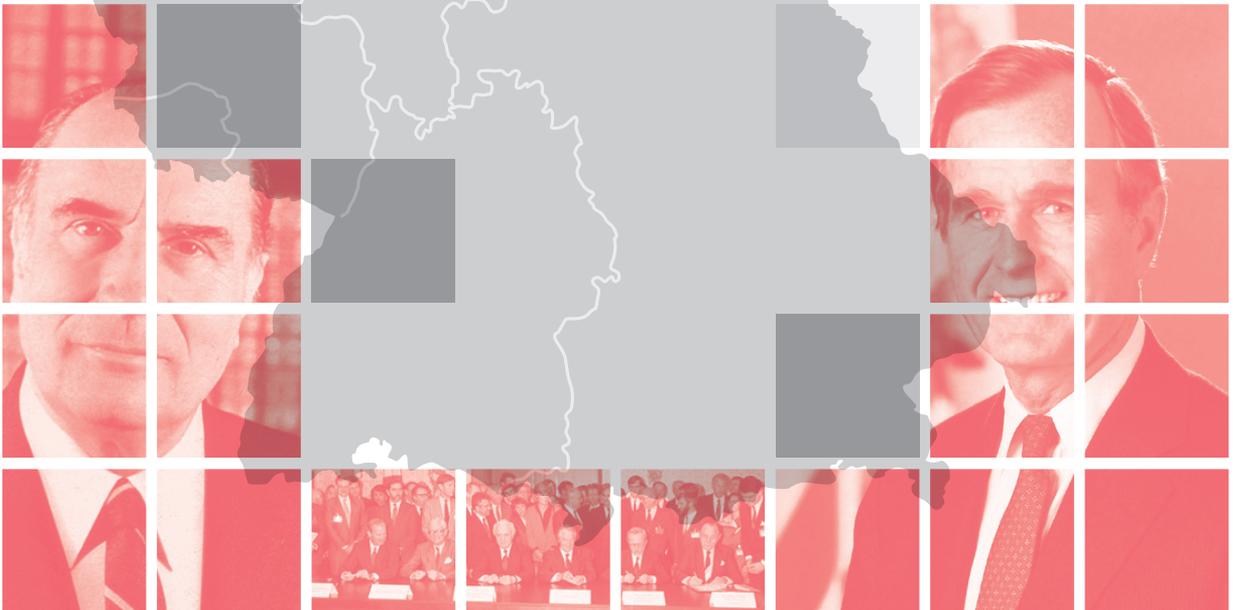


19

독일통일 총서

외교 분야 II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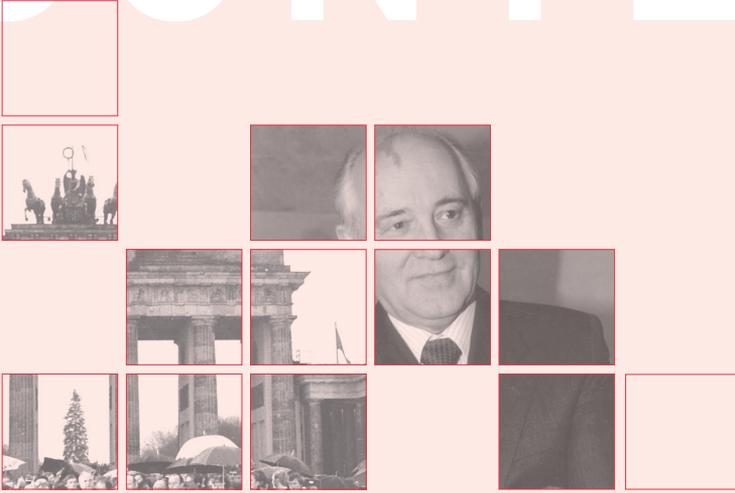
외교 분야 II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활동과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

제1장 2+4회담에 대비한 독일의 외교활동	10
제1절 콜 · 고르바초프 정상회담	10
제2절 콜 · 부시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13
제3절 통일외교에 힘을 실어준 동독총선 결과	15
제4절 독 · 소 외무장관 회담	16
제5절 콜 총리의 정상외교 활동	18
1. 콜 · 대처 정상회담	18
2. 콜 · 미테랑 정상회담	20
3. EC 특별 정상회의	21
4. 콜 · 드 메지에르 정상회담	21
제6절 2+4회담에 임하는 독일정부의 주요 입장	23
제2장 2+4회담 성공을 위한 외교활동	26
제1절 제1차 2+4회담(1990.5.5, 본)	26
제2절 대소련 차관제공 외교활동	29
제3절 독 · 소 외무장관 회담	31
1. 제네바 외무장관 회담	32
2. 브레스트 외무장관 회담	35
3. 윈스터 외무장관 회담	36

제4절 콜 총리의 대미 외교활동	37
제5절 제2차 2+4회담(1990.6.22, 동베를린)	39
제6절 콜 · 고르바초프 정상회담(1990.7.15~16)	40
1. 모스크바 회담	42
2. 캅카스 정상회담	43
제7절 제3차 2+4회담(1990.7.17, 파리)	46
제8절 기타 미해결 문제의 해결	48
제9절 2+4조약 체결(1990.9.12, 모스크바)	50
1. 동독지역에서 소규모 외국군 훈련문제	50
2. 2+4조약 체결	51
제10절 대외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	55
제3장 독일통일과 독일통일의 특징	58
제1절 내부적인 문제의 해결	58
제2절 통일된 독일	60
제3절 독일정부의 독일정책	61
1.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1949~1963년 재임)	62
2. 빌리 브란트 총리(1969~1974년 재임)	64
3. 헬무트 콜 총리(1982~1998년 재임)	66
제4절 독일통일의 특징	69
제4장 통일 이후 대외적인 문제 처리 결과	72
제1절 동독의 대외 관계 처리	72
제2절 조약과 협정의 처리 내용	73
제3절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조약 체결	76
제4절 독일 주둔 소련군과 서방 연합군의 철수	78
제5절 독일 연방군의 감축 이행	80

CONTENTS

제5장 독일통일의 시사점과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	81
제1절 독일통일로부터 얻는 시사점	81
제2절 한반도의 통일 환경: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	85
제3절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	89
제4절 맺는 말	94
부록	
독일통일 주요 일지	96



정책문서를 통해 본 2+4회담

들어가며	106
제1장 통일로 가는 외교적 협상의 길목에서	110
제1절 독일문제를 둘러싼 외교 협상의 방향 설정	111
제2절 회담을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준비회의	115
제3절 급변하는 소련의 내적 상황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대응	117
제2장 서독 외교문서를 통해 보는 2+4회담의 주요 논제	120
제1절 회담 전기 소련의 입장과 관련된 서독 외무부의 분석과 판단	120
제2절 국경문제	129
제3절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 문제	133
제4절 군사력과 군사동맹의 문제	138
제3장 외교협상의 기술 혹은 예술	144



외교 분야 II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50**

문서 요약 **176**
문서 요약(문서번호 1~167) **176**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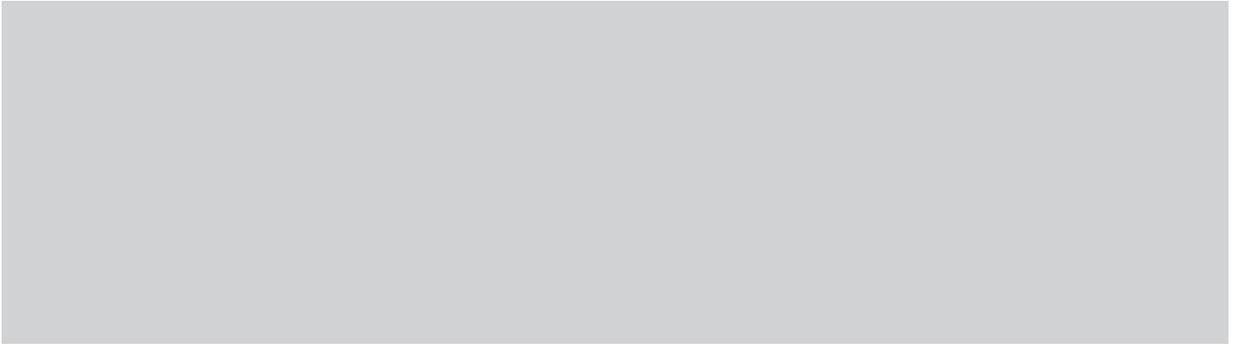


표 목차

표 1-1) 2+4회담 개최 현황 **55**

표 2-1) 2+4회담의 일정과 논의 주제 **107**

외교 분야Ⅱ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활동과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

손 선 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전 주함부르크 총영사)



2+4회담에 대비한 독일의 외교활동

제1절 콜·고르바초프 정상회담

독일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동·서독의 합의 이외에 독일의 분단으로 발생한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대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대부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소련의 동의가 중요했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독일통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1989년 12월 3일 부시 미 대통령과의 몰타 정상회담에서 “유럽의 유엔 회원국이며, 주권 국가인 서독과 동독 두 개의 독일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려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통일에 반대했다. 또한 12월 5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겐서 외무장관에게 콜 총리의 독일통일 10개 방안을 거론하며 통일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처럼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에 강하게 반대했다.

따라서 콜 총리로서는 독일통일에 대해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이해시키고 그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했다. 콜 총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조언을 참고하여 12월 14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장문의 서한을 보냈다.¹ 이 서한에

¹ 부시 미 대통령은 1989년 12월 3일 브뤼셀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콜 총리에게 몰타 미·소 정상

서 독일정부의 대동독정책과 유럽정책에 관해 설명하며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지원하고 정상회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가 요청한 생필품 지원을 2주 만인 1990년 1월 24일 신속히 승인했다.² 콜 총리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2월 2일 답신을 보내 동의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월 9일 부시 대통령은 콜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두 가지를 약속했다. (1) 소련이 전승 4개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일문제를 소련 마음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으며 (2) 미국이 독일통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시의 서한은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을 앞둔 콜 총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콜과 고르바초프 간의 정상회담은 1988년 10월(모스크바)과 1989년 6월(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월 10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독일통일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즉, 동독을 떠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국가 재정도 파산상태에 있어 동독이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했다.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은 동독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세 강 선이 될 것이며, 통일된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잔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향후 독일문제 협의 시 독일이 참여하지 않는 전승 4개국만의 협의에 반대한다는 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³ 이어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독일통일과 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고르바초프를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²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90년 1월 8일 유리 크비친스키(Juli Kwizinski) 서독 주재 소련 대사를 통해 콜 총리에게 생필품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다. 콜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통일 10개월 발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가 요청한 소고기 5만 2천 톤, 돼지고기 5만 톤, 버터 2만 톤, 우유가루 1만 5천 톤, 치즈 5천 톤과 구두와 옷 등의 생필품 지원을 2주 만에 신속히 승인했다. 총액 2천만 마르크 상당으로 독일정부도 일부 비용을 지출했다.

³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이 약속은 독일에게 매우 중요했다. 소련은 3월 후인 2월 13일 2+4회담에



런 결정적인 발언을 했다.⁴

“본인은 소련과 독일연방공화국 및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에는 통일에 대해,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와 앞으로의 사태 진전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 대해 어떠한 의견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나 사이에 독일인들이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합의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독일인들은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소련은 한 나라에 살고자 하는 독일인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독일통일 문제는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독일인들이 스스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시기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통일을 실현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독일통일이 ‘현실’을 인식한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현실’은 독일과 소련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으며, 이 전쟁에서 소련국민이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결과 분열의 극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서독의 독일인들이 이미 역사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했다. 콜 총리는 “한 나라에 살고자 하는 독일인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발언내용을 되풀이 하면서 그에게 재차 확인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정상회담 직후 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나라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
참여하기로 수락했다.

⁴ Helmut Kohl, *Ich wollte Deutsche Einheit*, (Berlin: Propyläen, 1996), pp.272-273. 고르바초프는 콜 총리와의 회담 10일 전인 1990년 1월 30일 모드로우 동독 총리에게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독일국민의 고유한 권한임을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를 얻어냈다. (1)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원칙적인 지지와 (2) 향후 독일문제 협의 시 독일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협의하기로 한 점이다. 다만,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 잔류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콜 총리는 NATO에 잔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여 통일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시작에 불과했다.

콜 총리는 2월 15일 연방하원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통일된 독일은 중립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서방 측 동맹기구(NATO)에 잔류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또한 통일을 유럽의 안정과 모든 유럽 국가들의 안보문제를 고려하여 이룩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는 서방 측은 물론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통일을 이루겠다는 메시지였다.

제2절 콜·부시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1989년 11월 말 콜 총리가 독일통일 10개 방안을 발표할 때 만해도 소련과 주변국들의 반대가 심해 통일의 가능성은 낮았다. 이 당시 콜 총리는 통일을 3~5년에 걸쳐 완수하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준비가 부족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2월 10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독일통일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2월 13일에는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다룰 2+4회담 기구도 구성되었다.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1989년 말과 비교하면 통일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미국은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일찍



부터 독일통일을 지지했다. 이제 독일은 2+4회담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확보하고, 통일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했다. 영국은 여전히 독일통일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프랑스는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으나 미진했다. 미국으로서도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를 확실히 하면서 유럽의 안보문제 등에 관해 서독과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콜 총리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1990년 2월 24~25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콜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지난 2월 10일에 있었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동독주민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고, 재정도 파탄나는 등 동독의 붕괴 가능성도 언급했다. 동독이 무너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 동독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며, 다른 방안은 유럽을 불안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계속 유럽에 주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콜 총리는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포기를 약속했다.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은 오데르-나이세 강 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콜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직전 대처 영국 총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대처가 독일통일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3개월 전 대처는 EC 정상회의에서 독일통일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이 외에도 콜 총리와 부시 대통령은 3개항에 합의했다.⁵ (1) 부시 대통령은 대처 영국 총리가 계속해서 독일통일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며, (2) 콜 총리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3) 2+4회담은 동독에서 자유총선이 실시되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민주정부가 구성

.....
⁵ Helmut Kohl, *Erinnerungen 1982-1990*, München: Droemer, 2005, p.1081.

된 후에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와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지속적인 유럽 주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독일의 NATO 잔류로 소련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의미는 독일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고하며, 영국이 지지하도록 부시 대통령이 노력하겠다고 했고, 독일은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를 확실히 한 점이다. 소련,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는 독일이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되었다.

제3절 통일외교에 힘을 실어준 동독총선 결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 확고한 상태에서 콜 총리는 1990년 내에 통일을 완료하기 위해 서둘렀다.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들을 9월까지 해결하려고 했으나 4회로 예정된 2+4회담만으로 시간이 모자랐다. 해결해야 할 내용도 많았지만 주요 문제에 대해 독일과 소련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련,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협의할 2+4 본 회담에 대비하여 독일은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외교활동에 나서는 콜 총리와 겐서 외무장관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이 있었다.

바로 3월 18일 실시된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 결과였다. 투표율 93.9% 속에 치러진 선거결과 동독 기민당(CDU)이 40.8%를 얻어 기민당이 속한 ‘독일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⁶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동독에는 비교적 노동

⁶ 독일동맹은 헬무트 콜 총리의 주선으로 총선을 앞둔 1990년 2월 5일 동독 기민당, 독일 사회주의당(DSU) 및 민주주의 출발당(DA)이 결성한 동맹이다.



자들이 많아 사민당(SPD)이 근소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민당은 21.9%를,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은 16.4%를 각각 얻는 데 그쳤다. 기민당이 주축이 된 ‘독일동맹’은 선거과정에서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신속한 통일을 주장했다. 동독총선에서 ‘독일동맹’의 승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1) 동독 기민당의 통일정책이 서독정부(콜 총리)가 추진하는 통일정책과 같아 통일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2) 동독주민들이 신속한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콜 총리의 국제적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련, 영국과 프랑스는 동독주민들이 통일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소련은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한 사민당의 승리를 기대했었다. 통일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소련은 독일에 대한 영향력을 한동안 지속시킬 수가 있었으나 사민당의 패배로 소련의 이러한 기대는 좌절되었다.⁷

제4절 독·소 외무장관 회담

소련이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동의한 이후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독일통일에 대한 첫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1990년 3월 17일 프라하에서 열린 바르샤바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는 동·서독의 통일은 독일국민의 권리이며, 독일국민이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통일 작업은 유럽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헝가리,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통일된 독일이 NATO 회원국이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러나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통일된 독일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⁷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 길, 2016), p.91.

2+4회담을 앞둔 독일로서는 2+4회담에 임하는 소련의 입장이 중요했다. 겐서 외무장관은 1990년 3월 21일 나미비아의 독립 기념행사 참석 계기에 독일 대사관저에서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과 대화를 나누었다. 세바르드나제는 “1945년 8월의 포츠담협정이 여전히 소련국민과 소련정치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2+4회담이 이 협정의 토대 위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1) 독일통일에 따른 모든 문제를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2) 독일 점령기간 중에 소련 점령 당국이 행한 모든 조치들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되며 통일 이후에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겐서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의 물결이 바뀌었는데 강화조약 체결은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강화조약 체결이 2+4회담의 의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2+4회담은 과거가 아닌 독일과 유럽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날 독일과 소련 간에 처참한 전쟁이 있었지만, 대(代)를 이은 적대감은 없으며, 이는 향후 독일과 소련 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이 되면 두 나라 간에 협력이 증진되고 경제적 이익의 잠재력도 무한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바르드나제 장관도 동의했다.

겐서 장관은 세바르드나제를 만난 뒤 같은 장소에서 베이커 미 국무장관 과도 협의했다. 베이커 장관은 세바르드나제가 국내에서 처한 어려운 입장을 설명했다. 즉,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세바르드나제 장관을 반대하는 자들의 눈에는 세바르드나제가 독일문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비추어져 공격을 받고 있으며, 독일통일의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세바르드나제가 신경이 과민한 상태라고 했다. 또한 소련의 국내사정으로 세바르드나제가 독일의 NATO 잔류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겐서 장관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인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 폴란드도 통일된 독일이 중립국으로 남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는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가 이들 나라의 안보문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일 이후 미군의 지속적인 유럽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 이후 독일 군 병력을 감축하겠지만, 감축 문제는 2+4회담에서가 아니라 빈(Wien) 군축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동부 국경선 문제는 폴란드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결할 것임을 설명했다.

겐서 장관은 세바르드나제 장관과의 비공식 회담을 통해 2+4회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파악하고 독일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소련은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지만, 대외적인 문제를 강화조약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독일의 NATO 잔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겐서 장관은 또한 베이커 장관에게 독일의 NATO 잔류 의지를 거듭 확인시키며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제5절 콜 총리의 정상외교 활동

1. 콜·대처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한 콜 총리는 대처 총리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상외교 활동에 나섰다. 우선 콜 총리는 1990년 3월 29~30일 간 캠브리지와 런던에서 대처 총리와 회담했다. 캠브리지에서는 독일과 영국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연례 포럼인 쿠퍼닉스빈터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대처 총리의 입장은 확고했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6주 전에 대처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모스크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⁸ 11월 18일 파리에서 열린 EC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국가 국경선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며 독일

.....
⁸ 『DER SPIEGEL』Nr. 39/2010(27. September 2010).

통일에 반대했다. 국경선의 현상 유지에는 동·서독 경계선의 현상 유지도 담겨 있어 두 개의 독일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콜 총리는 대처 총리가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⁹ (1) 독일이 다시 유럽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되고, (2)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EC)와 NATO의 안정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3) 독일통일이 소련의 개혁 세력(특히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강경 세력이 집권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콜 총리는 대처 총리의 이러한 반대가 영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허드 외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각료들은 독일통일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유독 대처 총리가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¹⁰

대처 총리는 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독일통일에 동의했다.¹¹ (1)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해야 하며, (2) 통일 이후에도 독일에 NATO의 핵무기가 계속 배치되어야 하고, (3) 통일 이후에도 영국군과 미군이 독일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9년 말 만해도 독일통일을 완강히 반대했던 대처 총리가 지지로 돌아선 이유는 독일통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원칙적인 지지, 통일문제를 다룰 2+4회담 기구의 구성, 그리고 동독총선 결과 주민들의 신속한 통일 의지 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총리는 독일통일을 계속해서 반대

⁹ Helmut Kohl, *Erinnerungen 1990-1994*, München: Droemer, 2007, p.60.

¹⁰ Helmut Kohl, *Erinnerungen 1990-1994*, München: Droemer, 2007, pp.60-61. 콜 총리는 대처 총리의 독일정책을 3단계로 분류했다. 대처는 (1) 1989년 11월에서 1990년 2월까지의 독일통일을 방해했고, (2) 1990년 2월에서 여름까지는 통일을 지연시키려고 했으며, (3) 그 이후에는 통일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협조했다고 했다. 또한 대처는 각료들에게 독일이 통일이 되려면 적어도 10-15년은 걸릴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했다. 그 정도로 대처는 독일통일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Helmut Kohl, 앞의 책, p.60.

¹¹ Hans-Dietrich Genscher, *Erinnerungen*, Berlin: Siedler, 1995, pp.754-755.



하기 어려웠다. 독일통일에 대한 대처 총리의 지지를 얻은 것은 콜 총리로서는 큰 외교적 성과였다.

2. 콜·미테랑 정상회담

대처 총리의 지지를 얻은 콜 총리의 다음 외교활동의 대상자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었다. 콜 총리는 1990년 들어 이미 두 차례나 미테랑 대통령을 만났다. 1월에는 프랑스 대서양 연안 가스코뉴지방의 라체에서, 2월에는 파리에서의 만남을 통해 미테랑 대통령은 이미 독일통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였다. 특히 프랑스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의 국경선 문제와 관련, 독일 연방하원이 1990년 3월 8일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은 오테르-나이세 강 선이 될 것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미테랑 대통령과의 우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다.¹²

두 정상은 제55차 독·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4월 25일 파리에서 다시 만났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유럽 내 동·서 관계, 소련 국내 정세, 독일통일 문제와 유럽통합 문제였다. 콜 총리는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콜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독일통일에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독일통일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통합의 진전을 위해 공동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3일 후 더블린에서 열릴 EC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겐서 외무장관은 별도로 뒤마 외무장관과 2+4회담 의제에 관해 협의했다. 콜 총리는 파리회담에서도 독일통일에 대한 미테랑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

¹² Helmut Kohl, 앞의 책, p.94.

3. EC 특별 정상회의

독일통일 문제와 독일통일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기 위한 EC 특별 정상회의가 4월 28일 더블린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독일통일 과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 EC 집행위원장의 소집으로 이루어졌다.¹³

EC 12개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독일통일이 유럽 전체는 물론 특히 EC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독일통일이 유럽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어 만족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독도 단계적으로 EC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말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EC 정상회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독일통일을 지지했다.

이로써 독일은 통일에 관해 EC의 지지도 확보했다. 그동안 독일이 통일을 유럽통합의 틀 내에서 이루겠다고 줄곧 강조해 왔는데 대처와 미테랑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 정상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EC 정상들의 지지는 독일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외교활동의 결과였다.

4. 콜·드 메지에르 정상회담

콜 총리의 통일외교 노력에는 전승 4개국 정상들과의 회담 이외에 동독 총리와의 만남도 중요했다. 동독총선 결과 1990년 4월 12일 로타 드 메지에르를 총리로 하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드 메지에르는 4월 19일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 추진과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 입장을 밝혔다. 동독이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방향이 서독과

¹³ EC 특별 정상회담이 개최된 배경에는 특히 영국(대처 총리)과 프랑스(미테랑 대통령)가 독일통일이 유럽의 통합을 방해한다든가 또는 지체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Hans Georg Lehmann, *Deutschland-Chronik 1945 bis 1995*. Bonn, 1995, p.427.



갈아 통일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¹⁴

콜 총리는 드 메지에르 총리와 4월 24일 본에서 통일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주민을 줄이고, 동독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동독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가능한 한 조속히 통화와 경제 동맹 조약을 체결하여 7월 1일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과 별도로 겐서 외무장관은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 신임 동독 외무장관(SPD 소속)과 회담했다.¹⁵ 목사 출신으로 외교 문제에 경험이 없는 메켈 장관에게 겐서 장관은 2+4회담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자신과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제23조에 의한 통일은 대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2+4회담을 가을까지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켈 장관은 동독 외교의 주요 목표는 유럽의 안정 속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통일 이후 폴란드와의 동부 국경선 문제도 협의했다. 동·서독 외무장관은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2+4회담에서 논의될 대외적인 문제에 관해 입장을 정리했으며, 외교 문제에 관해 경험이 전혀 없었던 메켈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동독은 2+4회담의 한 당사자였으나 역할은 별로 없었다. 2+4회담이 동독이 사라지는 독일통일을 염두에 두고 열리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국경문제가 걸려있는 폴란드와도 협의했다. 겐서 장관은 5월 2일 폰 바이츠체커 연방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수행한 기회에 폴란드 외무장관과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렇게 서독은 2+4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5개 회담 당사국의 정상과 외무

¹⁴ 독일인들은 종종 통일에 행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점도 행운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¹⁵ 메켈 장관은 외무장관 취임 직후인 1990년 4월 17일 겐서 장관을 자택으로 방문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장관들을 모두 만나 이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지지로 돌아섰다. 2+4회담을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얻은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소련도 통일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 즉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해제 문제,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확정 문제,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문제(비용 문제 포함) 등이 해결되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2+4회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는데, 해결 과정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소련은 독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2+4회담을 지연시켜 독일통일을 늦추려고 했기 때문이다.

제6절 2+4회담에 임하는 독일정부의 주요 입장

1990년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2+4회담을 앞두고 독일정부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정치적인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 2+4회담에 나섰다.¹⁶

첫째, 2+4회담이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만 다루어야 했다. 독일은 통일을 유럽의 통합과정 및 안보문제와 조화를 이루어 달성하고자 했다. 독일통일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모든 회원국들의 안보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2+4회담 결과가 1990년 11월 파리에서 열리는 CSCE 정상회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2+4회담의 협의 대상은 ‘오로지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이며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
¹⁶ Richard Kiessler/ Frank Elbe,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pp.106-118. 이 내용은 외교 1의 제4장 제1절의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들’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독일정부의 협상 목표인 점을 고려하여 추가했음을 밝혀둔다.



둘째, 2+4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국의 권리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했다. 2+4회담에서 동·서독의 권리가 전승 4개국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동·서독은 1955년 제네바에서 전승 4개국이 독일문제 협의 시 발언권도 없이 조그만 옆자리에서 지켜보았던 악몽이 있었다. 따라서 2+4 회담에서 동·서독의 권리가 다른 참가국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셋째, 강화조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독일은 처음부터 강화조약 체결에 대해 반대하며 모든 전쟁 당사국들과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련은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넷째,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은 완전히 해제되어야 했다. 전승 4개국이 갖고 있는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통일이 되는 시점에 완전히 해제되어야 했다. 과도기간을 두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어서는 안되며, 독일이 통일이 되면 어떠한 미해결 문제도 남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다섯째, 통일된 독일은 통일 시점부터 완전한 주권을 가져야 한다. 독일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통일 시점에 독일과 관련한 연합국의 모든 권한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하며, 전후의 어떠한 권한도 남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통일된 독일은 NATO에 잔류한다.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서방 연합국의 확고한 목표는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도 NATO에 잔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독일의 이러한 입장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독일의 NATO 잔류에 반대했다.

일곱째, 통일된 독일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거나 차별받아서 안된다. 통일된 독일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서도 안되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등’이란 대내외적인 문제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했다. 통일협상 과정에서 소련은 배상 문

제라든가 독일의 비핵화 문제에 관한 강화조약을 체결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소련의 이러한 입장에 반대했다.

여덟째, 동독 주둔 소련군이 완전 철수되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조건 아래 소련군이 철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이나 서방 측은 소련이 자국군대의 철수를 서독 주둔 외국군(특히 미군)의 철수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주장은 근거가 약했다. 미군의 주둔은 NATO군과 바르샤바조약기구군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서방 측은 소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홉째,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은 동독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을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으로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국경선 문제는 통일 이후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통일 3개월 이내에 폴란드와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독일 의회가 비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프로이센과 폴란드의 관할 아래에 들어간 오데르-나이세 강 선 동부 독일지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결성한 독일피난민협회는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통일의 사명에는 영토회복의 의미도 있는데 1937년 12월 31일 기준의 독일영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4회담 성공을 위한 외교활동

제1절 제1차 2+4회담(1990.5.5, 본)

1990년 2월 13일 2+4회담 기구가 구성된 데 이어 3월 18일 총선 실시로 동독에 민주정부가 출범하여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협의할 요건이 충족됐다. 민주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2+4회담의 결과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2+4회담의 성공을 위해 전 외교력을 기울여야 했다. 외무장관들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2+4회담 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6개국 실장급 실무대표단들은 3월 14일(본)과 4월 30일(동베를린) 두 차례 회의를 했다. 이 실장급 실무회의는 2+4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열려 본 회담을 지원했다.

준비회의를 토대로 제1차 2+4회담이 1990년 5월 5일 본에서 열렸다. 2+4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수석대표는 서독의 한스-디트리히 겐서,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영국의 더글라스 허드, 소련의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프랑스의 롤랑 뒤마와 동독의 마르크스 메켈 장관이다. 제1차 회담에서는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 유럽 내 국경선 문제, 회의 의제와 일정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겐서 외무장관은 주취국 대표로서 모두 발언을 통해 독일통일에 대한 독일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주요 입장은 (1) 독일통일이 국제법과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규정된 자결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자결권은 독일인들이 어떤 형태의 국가를, 어느 시기에, 어떤 조건에서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¹⁷ (2)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토대로 협의하고자 함. (3) 통일된 독일은 NATO에 잔류할 것임. (4) 4개국의 권한과 책임이 2+4회담에서 해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내용들은 2+4회담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다. 이 외에 독일통일이 전 유럽 국가들의 안보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2+4회담 결과를 1990년 11월 파리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의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통일이 1990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했다.

미국, 영국과 프랑스 장관들은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를 지지했다. 그러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독일인의 자결권을 존중하지만, 통일된 독일은 군사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한다”며 NATO 잔류에 반대했다. NATO는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에게 과거나 지금이나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적대적인 군사동맹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대외적인 문제’의 해결 시기를 ‘내부적인 문제’의 해결 시기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¹⁸ 이 발언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1) 독일통일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며, (2) 통일이 되더라도 독일의 주권을 수년 동안 정지시키고자 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베이커 장관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서방 측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¹⁷ 이 발언은 1990년 2월 10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콜 총리에게 “독일통일 문제는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¹⁸ 콜 총리는 5월 9일 소련의 이러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통일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었으나 제1차 회담은 건설적으로 진행되었다. 각국 대표의 입장을 들은 겐서 장관은 네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고 정리했다.¹⁹ (1)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독일인들의 의지가 인정되어야 하고, (2) 독일통일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3) 국경선 문제 협의 시 폴란드 외무장관의 참석을 보장해야 하고, (4) 현재의 폴란드 서부 국경선은 확정적인 것으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겐서 장관은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이 국제법적인 규정으로 구속력 있게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4회담의 의제도 정해졌다. (1)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 (2) 유럽의 안보구조를 고려한 정치·군사적인 문제, (3) 베를린문제, (4)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해제 문제이다. 그리고 2+4회담 결과를 국제법적인 조약 형태로 체결하기로 했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이 다섯 번째 의제로 독일통일의 ‘대외적인 문제’와 ‘전 유럽의 통합과정’을 연계시키자고 제의했으나, 서방 측이 이 문제를 (2)의 의제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반대하여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2+4회담을 1990년 9월까지 3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제2차 회담은 6월에 베를린에서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제3차 회담은 7월에 파리에서 국경선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국경선 문제가 다루어지는 파리회담에 당사국인 폴란드 외무장관도 참석하도록 했다.²⁰ 마지막 제4차 회담은 9월에 모스크바에서 갖고 2+4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제1차 회담 직후 겐서와 메켈 외무장관은 국경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괴를리츠조약’(1950.7.6)과 ‘바르샤바조약’(1972.12.7)에 규정된 대로 폴란드의 현 서부 국경선이 통일된 독일과의 국경선이 될 것임을 밝혔다. 다

¹⁹ Hans-Dietrich Genscher, *Erinnerungen, Berlin*: Siedler, 1995, p.777.

²⁰ 폴란드 외무장관의 참가는 폴란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랑스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만, 국경선 확정 문제는 국제법적인 조약의 대상이므로 통일 이후 독일정부가 폴란드정부와 국제법적인 국경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독일의회가 이 조약을 비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쾰른 장관은 국경선 문제는 통일이 된 후에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독일통일 문제에서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인 국경선 문제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2+4회담의 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제2절 대소련 차관제공 외교활동

독일통일 과정에서 소련에 대한 독일의 경제지원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소련은 1989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독일과 더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1990년 2월에 생필품 부족을 독일의 지원을 받아 겨우 해결한 바 있는 소련은 생필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 긴급히 외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수가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을 지원할 의사가 없었고,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건이 못 되었다. 오직 독일만이 지원 가능한 상황이었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제1차 2+4회담 전날인 5월 4일 콜 총리를 예방한 기회에 독일정부의 차관제공 가능성을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콜 총리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콜 총리는 지난번 생필품을 지원했던 것처럼 차관을 신속히 제공하여 소련 내에 독일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의 목적은 당연히 독일통일이다. 소련이 요구하는 차관의 규모는 5-7년 거치 약 200억 마르크였다. 차관제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월 8일 콜 총리가 주재한 비밀회의에서 드레스덴은행과 코메르츠은행의 고위 인사들은 소련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잃었고, 지불불능 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



다. 또한 소련이 요청한 차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독일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콜 총리는 차관제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텔치 외교안보 보좌관을 비밀리에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은행 측 인사들도 동행했다.

텔치 외교안보 보좌관은 5월 14일 니콜라이 리슈코프(Nikolai I. Ryzhkov) 총리,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시타리안 부총리, 모스코브스키 대외경제 은행장을 만나 차관제공 문제를 협의했다. 리슈코프 총리는 신용대출로 15~20억 루블, 장기 차관으로 100~150억 루블을 요청했다. 텔치는 콜 총리가 소련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독일정부는 이 지원이 독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협상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이 텔치 발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

이어 텔치 보좌관 일행은 시타리안 부총리 및 모스코브스키 대외경제 은행장과 가진 별도 회의에서 소련의 재정상태와 외채구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독일 측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소련 측은 예상 외로 솔직하게 각종 자료와 수치를 제공하며 차관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텔치 보좌관은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만났다.²¹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 독일의 차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텔치는 특히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지원하고자 하는 콜 총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고르바초프가 1989년 6월 독일방문 시 콜 총리를 그의 고향 캅카스로 초청하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정상회담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했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텔치 일행은 고르바초프 대통령, 리슈코프 총리,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과 시타리안 부총리 등 소련의 최고위 인사들을 모두 만났다. 이는 소련의 경제여건이 어려워 독일의 차관지원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
²¹ 고르바초프는 1990년 3월 15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텔릭 보좌관으로부터 소련 방문 결과를 보고받은 콜 총리는 50억 마르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5월 22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콜 총리는 독일과 소련 두 나라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통일된 독일과 소련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소련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독일정부가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신에서 독일통일에 따른 미해결 문제들이 1990년 안에 2+4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되기 바란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독일정부는 소련이 요청한 차관을 2주 만에 신속히 처리하면서 차관제공이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지지와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독일로서는 차관을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련에게 통일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제3절 독·소 외무장관 회담

독일정부는 ‘대외적인 문제’를 마무리하여 1990년 9월에 2+4조약을 체결하기에는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2+4회담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승 4개국 중에서 특히 소련의 동의가 중요했는데, 소련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대소련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생필품 지원에 이은 신속한 차관지원도 이러한 외교 노력의 하나였다.

독일은 대외적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2+4회담과는 별도로 소련과의 고위급 회기가 필요했다. 소련도 독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양자회담이 필요했다. 두 나라 정상회담에 앞서 겐서 장관은 세바르드나제 장관과 3차례의 회담을 하면서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 제네바 외무장관 회담

소련이 먼저 회담을 제의했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의 요청으로 1990년 5월 23일 제네바 주재 소련대표부에서 독·소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다. 주요 의제는 독일통일과 관련한 소련의 관심 사항에 관한 협의였다. 세바르드나제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4개국의 권한과 책임이 계속해서 인정되는 일정한 과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1차 2+4회담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겐서 장관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는 어떠한 미해결 문제가 남아서는 안된다”며 1990년 11월의 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 전까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겐서 장관이 소련이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해 줄 것을 요청하자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²²

- (1)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일정한 과도기간에 전승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속되어야 함.
- (2)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을 3년 이내에 20-25만 명으로 감축해야 함.
- (3) 소련이 동독지역 점령기간 중 (1945.5-1949.10)에 행한 토지개혁과 재산 몰수 조치 등의 효력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정되어야 함.
- (4) 독일정부가 나치시대의 강제 노역자들에 대해 보상해야 하고, 나치 활동이나 나치주의의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함.
- (5) 동독 내에 있는 전몰자 묘지와 전쟁기념물 등이 계속 보존되어야 함.
- (6) 서독과 동독이 제3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이 통일 이후에도 유효해야 함.
- (7)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에 반대하며,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동시에 해체하고 새로운 전 유럽안보기구가 창설되어야 함.
- (8) 독일 주둔 서방 연합군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함.
- (9) 마지막으로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일임. 이 중에서 독일의 NATO 잔류

.....
²² Hans-Dietrich Genscher, 앞의 책, pp.789-791.

문제가 ‘모든 문제 중의 핵심 문제’라고 했다.²³

독일통일 과정 내내 소련은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를 중점 제기했는데, 이에 관해 세 가지 방안을 갖고 있었다. (1) 통일된 독일이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공동 회원국이 되는 안 (2) 통일된 독일이 NATO에서 탈퇴하여 중립국이 되는 안 (3)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동시에 해체하고 새로운 범유럽안보기구를 창설하여 통일된 독일이 이 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안이다. 그러나 소련은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어떠한 확고한 입장이 없이 상황에 따라 대처하려고 했다.²⁴ (1) 한 나라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군사동맹 기구에 가입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2) 독일이 중립국이 되는 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3) 세 번째 안은 두 동맹체 간에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고 시일도 오래 걸려 가능하지 않았다. 그 어느 안도 독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련은 독일이 통일이 되더라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철저히 약화시키고자 했다. 또한 점령기간 중에 소련이 행한 조치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겐셔 장관은 독일 측 입장을 설명했다. (1) 통일이 되면 독일은 다른 나라와 동등한 국가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는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따라 독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함.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는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국경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인 바, 통일된 독일정부가

.....

²³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는 소련 내부의 여러 정치 여건상 자신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문제”라고 했다. 그는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하게 되면, 소련은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독재국가가 출현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이야기가 모스크바에서 나돌고 있다는 소련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세바르드나제의 이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1991년 8월 구테타가 발생하여 고르바초프가 잠시 실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Hans-Dietrich Genscher, 앞의 책, p.791.

²⁴ Richard Kiessler/ Frank Elbe,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pp.134-135.



폴란드와 국경 조약을 체결하여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독일의회가 비준할 것임. (3) 독일의 군 병력 감축은 독일만이 아닌 빈 유럽군축회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이후 35-40만 명의 군 병력을 유지할 계획임. (4) 동독지역에 있는 전쟁 관련 기념비와 유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통일 이후에도 잘 보존할 것임.

겐서 장관은 지금까지는 독일과 소련 두 나라 관계에 독일 본단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미래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 소련은 현저한 이익을 얻을 것이며, 두 나라 관계도 더 긴밀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독일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더 나은 유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양자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제네바회담 후 겐서는 프랑스, 영국과 미국을 방문하여 외무장관들에게 세바르드나제와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에 관한 진전이 마소 정상회담과 영국 턴베리(Turnberry) NATO 외무장관 회의에서 있었다. 6월 3일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일된 독일이 완전한 NATO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는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따라 독일인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을 밝혔다. 고르바초프는 부시의 발언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계속해서 찾겠다고 했다.²⁵

6월 8일 턴베리 NATO 외무장관 회의에서 외무장관들은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정치적인 의견교환이 더욱 더 확대되고 심화되기를 지지했으며, 유럽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위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게 우

.....
²⁵ Richard Kiessler/ Frank Elbe, 앞의 책, pp.147-148.

호와 협력 관계를 맺자고 제의했다. 또한 독일통일이 유럽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턴베리의 메시지는 (1) NATO가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원하고 있으며, (2)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7월 1-11일 열리는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다. 턴베리회의 결과는 런던 NATO 정상회담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2. 브레스트 외무장관 회담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두 장관은 6월 11일 소련의 브레스트(Brest)에서 다시 만났다. 브레스트는 독일과 러시아 간의 휴전협정(1918.3)과 히틀러-스탈린협정(1939.8)이 체결됐던 곳이며, 또한 세바르드나제 장관의 형이 1941년 6월에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한 곳이기도 하였다.²⁶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가 소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바르샤바조약기구와 NATO에 대한 독일의 의무 이행 방안에 관해 물었다. 또한 NATO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더 이상 적어 아니고, 두 동맹체 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과도기간’ 문제도 제기했다. 동독 주둔 소련군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국의 권한과 책임이 일정기간 연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겐셔 장관은 4개국의 권한 및 책임과 관계없이 소련군의 주둔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될 것이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의 NATO 잔류문제와 관련하여 겐셔 장관은 6월 8일의 턴베리

.....

²⁶ 겐셔 장관은 세바르드나제가 소련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곳을 회의 장소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NATO 외무장관 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통일독일은 유럽의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NATO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소련국민들에게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독일의 군 병력 감축 문제와 관련, 겐서는 재차 35~40만 명 선을 제시하며, 군축이 독일만이 아닌 전 유럽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 문제에 대해 소련의 입장이 다소 완화되어 진전이 이루어졌다.

3. 뮌스터 외무장관 회담

독·소 외무장관 회의는 6월 18일 독일 중부도시 뮌스터(Münster)²⁷에서 이어졌다.²⁸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독일통일이 유럽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동·서 관계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는 비동맹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련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했다.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 감축 계획에 대해 겐서 장관은 유럽 군축회의 차원에서 감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NATO가 런던 정상회의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독일의 군사적 지위문제를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두 군사동맹체 간에 신뢰조성 조치와 독일의 군사력 감축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소련이 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해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세 차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해 소련의 입장이 크게 완화되어 받아들일 태세였다.

²⁷ 뮌스터는 1648년 10월 베스트팔렌조약이 체결되어 30년 전쟁(1618-1948년)을 종결지었던 곳이다. 겐서 장관은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냉전을 뮌스터에서 종식시키고자 했다.

²⁸ 3일 전 코펜하겐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만났던 두 장관의 회의는 1990년 들어서만 8번째였다.

다음날 6월 19일 콜 총리는 겐서 장관과 지금까지 세 차례의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외교 추진방향에 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2+4회담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9월로 예정된 모스크바회담에서 끝내기로 했다. 또한 소련에서 암살 또는 쿠데타 등 갑작스런 일로 통일 작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소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²⁹ 이처럼 독일은 고르바초프 대통령 재임 중에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6월 21일 겐서 외무장관은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전 사항에 관해 연방하원에 보고했다. 독일통일이 유럽의 통합에 기여해야 하며, 독일은 프랑스 편에 서서 민주주의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통일된 독일은 민족주의적 이기주의의 국가가 아닌 전 유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며 유럽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4절 콜 총리의 대미 외교활동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인 1990년 5월 17일 콜 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수행했다. 정상회담에서 콜 총리는 5월 18일에 동독과 ‘통화·경제와 사회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7월 1일에는 독일 마르크화(DM)가 동독에도 통용되는 통일과정을 설명했다. 텔치 외교안보 보좌관이 5월 14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등 소련 지도층과 나눈 면담 내용도 언급했다.

부시 대통령은 독일의 NATO 잔류 당위성을 다시 강조하며, 동독 주둔

²⁹ 실제로 이로부터 40여 일 후인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의 관심은 독일통일과 유럽문제에서 중등으로 옮겨갔다. 다행히도 이때는 2+4회담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독일통일 문제가 마무리 되고 있었다. 또한 1990년 말에는 셰바르드나제가 외무장관직에서 물러났고, 1년 뒤인 1991년 8월에는 고르바초프가 잠시 실각하였다가 12월 25일에는 완전히 물러났다. 이러한 일로 독일인들은 통일과정이 조금만 늦어졌어도 통일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소련군 철수 시기와 미군의 유럽 주둔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이 재차 강조할 정도로 독일의 NATO 잔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콜 총리는 독일의 NATO 잔류를 거듭 약속하며, 미군의 유럽 주둔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소련이 2+4회담을 오래 끌려고 한다면, 오는 9월까지 회담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6월 초로 예정된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 시 분명한 입장을 주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어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1) 소련의 심각한 경제위기, (2) 소비에트 연방의 결속력 약화, (3)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코메콘의 해체 위기, (4) 독일통일의 가시화 등으로 고르바초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했다. 심지어 고르바초프가 소련 지도부 내에서 조국의 위대한 업적을 날려버렸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서방 측의 이해와 직결된다며,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 시 그가 약한 지도자로 보이지 않도록 그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다. 독일로서는 독일통일에 호의적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내에서 강한 지도자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³⁰

3주 후인 6월 8일 콜 총리는 하버드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회에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했다. 7월 런던 NATO 특별 정상회의에서 다룬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과의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와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독일이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서방 측의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콜 총리의 제의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대소 경제지원을 반대하는 미 의회의 강경한 입장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독일로 돌아온 콜 총리는 6월 11일 기민당 의장단 회의에서 부시 대통령

.....

³⁰ Helmut Kohl, *Erinnerungen 1990-1994*, München, Droemer, 2007, p.116.

이 독일의 관심사항인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독일에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콜 총리는 지난 2월 이래 3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와 통일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콜 총리는 통일을 추진해가는 어려운 때에 부시 대통령이 독일 편에서 통일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독일로서는 큰 행운이었다고 회고했다.

제5절 제2차 2+4회담(1990.6.22, 동베를린)

제2차 2+4회담은 6월 22일 동베를린에서 열렸다. 회담 전에 6개국 외무장관들은 ‘찰리 검문소’³¹ 철거 행사에 참석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자유로이 동·서베를린을 오가는 상황에서 검문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회담에서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통일된 독일의 국제법적인 지위와 관련한 조약안을 제시하며 서방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다. 즉, (1) 독일통일 5년 이내에 독일 주둔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며 (2) 통일 이후 3년 이내에 독일군 병력을 20~25만 명 선으로 감축하고 (3) 통일 이후에도 5년 동안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5년 동안 주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독일이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공동 회원국이 되어야 하며, 독일 주둔 외국군의 단계적인 철수도 주장했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의 제의에 대해 서방 측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통일된 독일의 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베이커), 독일에 특별한 지위를 두어 유럽의 안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되고(허드), 독일은 통일 시점에 완전한 주권을 가져야 하며 미해결 문제가 남아서는 안된다고 했다(젠서).

.....

³¹ 찰리 검문소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난 9일 후인 1961년 8월 22일에 세워졌다. 분단 시 외국인들과 외교관들은 이 검문소를 통해 동베를린을 오갔다.



이날 저녁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일된 독일은 파리 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 후 완전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 시 5년 동안 독일의 주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발언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다. 세바르드나제의 발언은 한편으로는 제28차 소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어려운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며, 또한 7월 초로 예정된 런던 NATO 정상회의에서 소련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 것이기도 했다. 이후 소련은 통일된 독일의 주권 제한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6개국 외무장관들은 2+4회담 결과보고서를 파리 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그 전까지 ‘대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했다.

1990년 6월 25~26일 더블린에서 EC 정상회의가, 10일 후인 7월 5~6일에는 런던에서 NATO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다. NATO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더 이상 적(敵)이 아니고, 핵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며, NATO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해야 함을 강조하며,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신뢰할만한 동반자 관계를 제의했다. NATO 정상회의의 선언은 소련에게 ‘우호의 손’을 내민 것으로 7월의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제6절 콜·고르바초프 정상회담(1990.7.15~16)

지난 2월 10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독일통일은 독일인들이 해결할 문제이며,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았다. 통일된 독일의 군사동맹체(NATO) 소속 문제를 비롯하여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문제 등의 외교·안보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해제되어 독일이 통일이 되고,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된다. 콜 총리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마침 제28차 소련 공산당 대회(7월 1~11일)에서 고르바초프는 압도적인 표 차로 서기장으로 재선되었다. 소련 보수파는 오래전부터 국내 경제위기, 민족 분열 문제와 독일통일 문제에서 지나친 양보 등의 실정을 거론하며 고르바초프를 공격했으나 쓰러뜨리지 못했다. 이 공산당 대회 결과는 고르바초프에게는 물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독일로서도 매우 중요했다.

1990년 들어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7월 15~16일 소련에서 열렸다. 이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독일의 50억 마르크 차관제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독일통일의 시기는 이 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려 있었다.

정상회담의 의제는 (1) 통일된 독일의 범위, (2)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 문제, (3)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 감축 문제, (4)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시기와 철수 시까지 동독지역에서 독일군의 지위 문제, 그리고 (5) 독일의 소련에 대한 경협지원 문제 등이었다. 의제 중에서 통일된 독일의 군 상한선 규모와 관련 콜 총리와 겐셔 장관은 37만 명으로 제의하기로 합의했다. 콜 총리는 40만 명을, 겐셔는 35만 명을 주장했는데 모스크바로 가는 기내에서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겐셔 외무장관, 테오 바이겔(Theo Weigel) 재무장관, 조니 클라인(Jonny Klein) 공보장관과 텔치 외교안보 보좌관 등이 수행했다.

1. 모스크바 회담

7월 15일 아침 레닌 언덕 위에 위치한 외무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독·소 두 나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콜 총리는 통일이 되면 1년 이내에 소련과 여러 면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블린 EC 특별 정상회의(1990.4.28), EC 정상회의(6.25~26), 런던 NATO 특별 정상회의(7.5~6)와 휴스턴 G-7 정상회의(7.9~11) 등 일련의 정상회의가 독일통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소련의 개혁정책을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1일을 기해 통화·경제와 사회통합 조약이 발효되어 동·서독이 경제적으로 통일된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핵심 내용인 2+4회담 의제에 관해 소련 측 입장을 제시했다. 통일된 독일의 범위는 현재의 동·서독과 베를린이 되어야 하고, 통일된 독일은 ABC 무기를 포기하여야 하며, NATO군을 동독지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및 한시적 주둔 문제에 관한 조약 체결을 제의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해제된다고 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독일은 과도기간 없이 통일과 동시에 완전한 주권을 갖고, 독일이 어떤 군사동맹체에 속할지는 통일된 독일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통일된 독일이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에 오해가 없도록 다시 말해 달라는 콜의 요청에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발언 내용을 되풀이하며 확인해 주었다. 독일통일에 가장 큰 장애요소였던 독일의 NATO 잔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이다.

이어 두 나라 장관 등 수행원들도 참석한 확대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독일의 50억 마르크 차관 제공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50억 마르크의 차관 제공이 소련이 필요로 하는 적기(適期)에 이루어졌으며, 이 차관 제공으로

캡카스에서 회담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³²

콜 총리의 요청으로 두 정상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던 독일의 NATO 잔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콜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먼저 콜 총리의 방문이 큰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안을 협의했다고 했다. 콜 총리는 2+4회담이 올해 안에 종료되고, 독일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의로 그의 고향인 캡카스 산악지방의 아르키즈(Archiz)에서 이어졌다.

2. 캡카스 정상회담

캡카스 정상회담은 7월 16일 오전 10시 두 나라 외무장관 등 수행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날 밤 콜 총리는 겐서 외무장관과 바이겔 재무장관 등 수행원들에게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회담에 대비했다.

정상회담에서 콜 총리의 제의로 두 정상은 장래 독·소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좀 더 큰 틀의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될 독일의 범위는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오데르-나이세 강 선이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독일은 통일과 동시에 완전한 주권을 갖기로 했으며, 2+4회담 결과를 국제법적인 조약 형태로 체결하기로 했다. 독일이 통일과 동시에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명시하기로 했다.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 측의 제의로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독일의 군사동맹체 소속 문제와 관련하여 2+4조약에 독일이 동맹체를 선

.....

³² Theo Waigel /Manfred Schell,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München: Ed. ferenczy bei Bruckmann, 1994, p.35.



택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고르바초프의 요청으로 군사동맹체가 NATO임을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³³

소련군 철수 이후 동독지역에 NATO군의 배치 문제와 관련, NATO에 소속된 독일군의 배치는 가능하나 NATO에 소속된 외국군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고르바초프가 NATO에 소속된 외국군의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는 통일 이후 3~4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소련군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정부가 철수 군인들을 위한 주택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 상한선을 37만 명 선으로 합의했다. 고르바초프가 35만 명 선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37만 명이 되어야 한다는 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 대신에 독일은 ABC 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

오후 1시 45분, 3시간 45분에 걸친 회담이 끝났다. 예상 외로 큰 논란 없이 대부분이 독일이 원했던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7월 초의 런던 NATO 특별 정상회의 결과가 전환점이었다고 했다.³⁴ 또한 3차례(제네바, 브레스트, 윈스터)의 독·소 외무장관 회담의 결과이기도 했다. 회담을 마치고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가까운 쉘레스노포드스크(Schelesnowodsk) 시내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콜 총리가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³⁵

.....
³³ 그 이유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국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논리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³⁴ 런던 NATO 특별 정상회담에서 NATO 정상들은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더 이상 적이 아니고, 핵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며, NATO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³⁵ 8개항의 내용은 Helmut Kohl, *Erinnerungen*, München: Droemer, 2007, pp.177-179를 토대로 했다. 콜 총리는 소련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7월 17일 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10개항으로 다시 발표하며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1. 통일된 독일의 범위는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그리고 전 베를린을 포함한다.
2. 통일이 완료되면, 통일과 함께 4개국에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와 함께 통일된 독일은 통일 시점부터 완전하고도 무제한적인 주권을 가진다.
3. 통일된 독일은 무제한적인 주권을 행사하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최종 의정서에 따라 군사동맹체 가입여부와 어느 동맹체에 가입할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기자회견장에서 콜 총리는 통일된 독일이 NATO 회원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 통일된 독일과 소련은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에 관해 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철수는 통일 이후 3~4년 내에 완료하기로 한다. 동시에 동독에 3~4년 동안 독일 마르크화(DM) 도입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전 조약을 소련과 체결한다.
5.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NATO군을 동독지역으로 이전·배치하지 않는다. 이와 상관없이 NATO조약 제5조와 제6조는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적용된다.
6. NATO군에 소속되지 않는 독일군, 즉 오로지 독일영토 방위만 담당하는 독일군은 통일 즉시 동독지역과 베를린에 배치할 수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동독지역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방 3개국 군대도 베를린에 주둔할 수 있다고 본다. 독일정부는 서방 3개국 군의 주둔과 관련한 조약을 서방 3개국 정부와 체결할 것이다.
7. 독일정부는 빈(Wien) 군축 회의에서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을 3-4년 내에 37만 명으로 줄이기로 선언한다. 이 감축은 제1차 빈 군축 협정의 발효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8. 통일된 독일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제조·보유 및 사용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 남는다.



콜 총리의 발표가 끝나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보충 설명을 하였다. 캅카스 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과 관련된 모든 외교·안보와 군사문제가 타결되어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즉 독일은 (1) 과도기간 없이 통일된 날로부터 완전한 주권을 갖고, (2) NATO에도 잔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일이 반드시 달성해야만 했던 내용들이었다.

지난 2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사실상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미국, 영국과 프랑스 3개국이 통일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다, 7월 1일에는 통화·경제와 사회통합이 이루어져 동·서독은 사실상 통일이 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소련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독일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소련은 더 이상 독일통일을 막을 명분이 약했다. 영국과 프랑스까지 독일통일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소련 혼자 막기도 어려웠다. 또한 콜 총리와 겐서 외무장관이 꾸준하게 추진해 온 외교활동의 성과이기도 했다. 콜 총리가 캅카스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소련이 독일통일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한 요인으로 영국의 역사학자 티모티 가튼 아쉬(Timoty Garton Ash)는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³⁶ (1) 동독의 내부로부터의 붕괴와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에 비공산 국가의 빠른 등장, (2) 소련의 경제위기와 민족분쟁의 발생, (3) 소련의 경제위기 시 독일정부의 신속한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들었다.

제7절 제3차 2+4회담(1990.7.17, 파리)

제3차 2+4회담은 7월 17일 파리에서 열렸다. 캅카스에서 전날 밤 파리에 도착한 겐서 장관은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아침 식사를 하며 콜 총리와 고

.....
³⁶ Karl-Rudolf Korte,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M: Campus, 1994, pp.151-152.

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모스크바와 캅카스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본 회의에서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캅카스 정상회담에서 주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다. 모스크바회담 시 까지 2+4조약의 문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9월 말 UN 총회 계기에 뉴욕 또는 런던에서 추가로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통일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세바르드나제의 제의에 대해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

3차 회담의 주요 의제는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확정 문제였다. 회담 의제와 관련 있는 스쿠비체브스키 폴란드 외무장관도 참석했다. 폴란드 외무장관은 2+4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외부 인사였다. 국경선 문제를 협의하는 3차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폴란드가 소련, 미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치열하게 활동한 결과였다.

겐서 장관은 독일인들은 통일을 이루어 유럽의 이웃 나라들과 자유와 평화 속에 지내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정신에서 국경선 문제와 관련하여 동·서독 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이미 폴란드정부에 통고했음을 밝혔다.³⁷ 다만, 폴란드와의 국경조약 체결은 2+4조약이 체결되고 통일이 되어 완전히 주권을 얻은 후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3차 회의에 참석한 스쿠비체브스키 장관은 국경문제와 관련한 폴란드의 입장을 장시간 설명했다. 오테르-나이세 강 선을 조약 형식으로 국경선으로 승인하는 문제에 관해 폴란드와 독일 간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확정적인 내용이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정으로 인해 의문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³⁸ 폴란드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6개국 외무장관들은 통일된 독일

.....

³⁷ 동·서독 의회는 1990년 6월 21일 오테르-나이세 강 선이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이 될 것이라고 의결했다. 서독정부는 이 내용을 폴란드정부에 통고했다. 이로써 국경선 문제는 독일에서는 해결된 상태였다.

³⁸ 폴란드정부는 독일 기본법 전문 또는 제23조 조항이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향후 오테르-나이세 강 선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독일로 가입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개정된 기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의 헌법에 다른 지역이 독일로의 가입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통일된 독일의 영토는 현재의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과 전 베를린으로하기로 했다. 이는 1990년 6월 21일의 동·서독 의회의 의결과 7월 16일 갑카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독일은 통일 이후 어떠한 영토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독일 국경에 관한 5대 원칙을 채택했다. 이 회담 결과에 대해 폴란드는 크게 만족했다. 이외에도 제3차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강화조약이 아닌 국제법적인 조약을 체결하여 해결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제8절 기타 미해결 문제의 해결

갑카스 정상회담에서 주요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나 독일과 소련 간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독일로서는 첫째, 대외적인 문제가 9월의 모스크바 2+4회담 전에 해결되어야 하며, 둘째 이때까지 독일과 소련 두 나라 관계가 모든 면에서 분명해야 했다. 겐서 장관은 8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세바르드나제 장관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겐서 장관에게 세 가지 사항을 집중 거론했다. (1)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비용 부담 문제, (2)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 감축 문제, (3) 소련이 동독 점령기간 중에 실시했던 토지개혁과 몰수 조치에 대한 효력 문제였다. 특히 토지개혁과 몰수 조치의 효력을 통일된 독일정부가 계속해서 인정하는 내용을 2+4조약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소련은 이미 3월 14일의 2+4회담 준비회의 시부터 이 문제를 회담 의제로 제의했으나 서방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소련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다.

이에 대해 겐서 장관은 점령기간 중에 몰수된 재산은 이미 동·서독정부의 공동성명(1990.6.15)에서 원소유주에게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이 내용이 통일 조약(제41조)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2+4조약의 의제가 되는 데 반대했다. 결국 세바르드나제 장관이 요구를 철회하고, 그 대신에 2+4조약 서명 시에 서독과 동독 외무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서한을 소련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소련군 철수 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8월 30일 겐서 외무장관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는³⁹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재래식 군축협상 회의에서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을 3~4년 안에 37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⁴⁰ 이로써 독일은 갑카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 감축 선언에 관한 사항을 이행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8월 말 예기치 않았던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 비용 문제가 터졌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겐서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련군의 철수가 비용 문제로 통일 후 3~4년이 아닌 최소한 5~7년이 걸릴 것이라는 소련 군부의 의견을 알려온 것이다. 텔릭 외교안보 보좌관이 8월 28일과 9월 5일 두 차례 주서독 소련 대사를 접촉하여 철수 비용으로 60억 마르크 지원을 제시하였으나, 소련 측이 170~175억 마르크를 요구하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2+4조약 서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콜 총리가 직접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통화로 해결했다. 9월 7일 통화에서 콜 총리가 80억 마르크를 제시했으나 결렬되었고, 9월 10일 통화에서 120억 마르크에 30억 마르크의 무이자 차관 제공에 합의하여 철수 비용 문제는 2+4조약 체

.....

³⁹ 1990년 8월 20일 동독 사민당(SPD)이 연정에서 탈퇴하여 사민당 소속이었던 메켈 외무장관이 사임했다. 통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외무장관을 임명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드 메지에르 총리가 외무장관직을 겸하게 되어 참석한 것이다.

⁴⁰ 1990년 6월 기준 독일 연방군은 49만 5,000명, 동독 인민군은 약 13만 5,000명으로 총 63만 명이였다. 독일은 이 병력을 통일 이후 3-4년 내에 37만 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 2일 전에 가까스로 타결되었다.⁴¹ 독일에게 철군 비용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했다. 통일을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힘들여 합의한 내용이 철군 비용을 아끼려다가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소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비록 추가로 철군 비용을 부담했지만 예정된 시기에 2+4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제9절 2+4조약 체결(1990.9.12, 모스크바)

1. 동독지역에서 소규모 외국군 훈련문제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비용 문제가 마무리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겨졌다. 2+4조약 체결 전날인 9월 11일 독일은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영국이었다. 영국은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 동독지역에서 1만 3,000명 미만의 소규모 외국군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2+4조약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미국과 프랑스가 동조했다. 그러나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이러한 내용은 콜과 고르바초프 간의 캅카스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2+4조약에 서명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었다. 소련으로서도 동독지역에서 외국군의 훈련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다.

겐서 장관은 9월 11일 밤늦은 시간까지 허드 영국 장관을 만나 소련군이 철수한 후에 독일영토에서의 군사 훈련 문제는 주권국인 독일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독일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 겐서 장관의 설명에 허드 장관이 양해했으나 영국 실무진의 완강한 입장으로 2+4조약 문안은 자정이 지났는데도 합의되지 못하고 있었다.

.....
⁴¹ 소련군 철수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협상 내용은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 통일의 길』, (서울: 푸른길, 2016), pp.183-184 참조.

겐서 장관은 몇 시간 후면 조약을 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베이커 미 국무장관 뿐이라고 판단했다. 새벽 1시에 겐서는 베이커의 숙소로 이동하여 지난 5월 이후 4개월 동안 협의해 온 2+4회담이 이 문제로 무산되어서는 안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4조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독일통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베이커 장관은 겐서 장관에게 소규모 외국군의 훈련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입장을 지지했었으나 원안대로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겐서 장관은 회담 결과를 기다리는 세바르드나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4조약이 원안대로 체결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렸다.

겐서 장관은 뒤마 장관의 지지도 얻었다. 9월 12일 아침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예정된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의 4개국 외무장관의 조찬 모임에 일찍 도착한 겐서 장관은 뒤마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뒤마 장관도 추가 내용 없이 조약 원안대로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독일 측 입장 지지로 돌아서자 결국 영국이 소규모 외국군의 훈련 조항 추가를 철회했다. 이로써 조약이 원안대로 서명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2+4조약을 체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외교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⁴²

2. 2+4조약 체결

제4차 회담이자 마지막 2+4회담이 예정대로 9월 12일 열렸다. 12시 45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6개국 외무장관은 ‘독일과 관련한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

.....
⁴² 겐서 장관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미 국무장관을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깨우고, 또 뒤마 장관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16년이란 오랫동안 외무장관으로 재임해 온 그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ny-2+4조약’에 서명했다. 조약 명칭을 이와 같이 한 이유는 강화조약이란 형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⁴³ 따라서 조약 서명국들은 승전국과 패전국 간의 관계가 아니며, 배상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조약에 겐서 외무장관, 드 메지에르 동독 외무장관 대행, 베이커 미 국무장관, 허드 영국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이 서명했다.

‘2+4조약’은 전문(前文)과 10개조로 되어 있다.⁴⁴ 전문에서 6개국은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유럽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인정했다. 이어 유엔 헌장과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 의정서를 언급하며, 독일민족이 자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하여 독일통일을 이루고자 함을 밝혔다. 또한 독일통일과 동시에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그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제1조는 통일된 독일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이고, 제2조에서 6조까지는 독일의 안보정책에 관한 내용들이다. 2+4조약의 핵심 내용은 독일의 주권을 규정한 제7조이다. 이 외에 조약 비준(제8조), 조약 효력 범위(제9조)와 조약 원본(제10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선과 관련하여, 통일된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과 전 베를린을 포함한다. 통일된 독일의 국경선은 현재의 동독과 서독의 외부 국경선이며, 이 조약이 발효되는 날 유효하다.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경조약을 체결한다. 통일독일은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떠한 영토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제기하지 않는다(제1조).

둘째, 서독정부와 동독정부는 독일영토에서 오로지 평화만이 깃들어야 함을 선언한다. 평화적인 공존을 파괴하고, 특히 침략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

⁴³ Karl-Rudolf Korte, 앞의 책, pp.152-153.

⁴⁴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im Jahre 1990: Eine Dokumentation*, Bonn, 1991, pp.101-104.

는 헌법에 위반되고 처벌된다는 점을 명시한다(제2조).

셋째, 서독정부와 동독정부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제조 및 보유와 사용을 포기할 것을 강조한다. 통일된 독일도 이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1968년 7월 1일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따른 권한과 의무는 통일된 독일에도 적용된다. 독일정부는 1990년 8월 31일 빈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회의에서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을 3~4년 안에 37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다(제3조).

넷째, 동독과 베를린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주둔 조건과 기간 및 철군 이행에 관한 문제들은 통일된 독일이 소련과 조약 형태로 규정할 것이다. 철군은 이 조약 제3조 2항에 언급된 서독정부와 동독정부의 의무 이행에 따라 1994년 말까지 완료될 것이다(제4조).

다섯째, 동독과 베를린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이 이 조약 제4조에 따라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이 지역에는 군사동맹체에 소속되지 않고 오로지 독일을 방위하는 독일 군대만 배치된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이 지역에 주둔시키지 않으며, 어떠한 군사 활동도 하지 않는다(제5조).

여섯째, 군사동맹체에 소속되는 모든 권한 및 의무와 관련하여 통일된 독일의 권한은 이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제6조).⁴⁵

일곱째, 이와 함께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는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종료한다. 이 결과 4개국의 합의, 결의와 실행이 종료되며, 이와 관련이 있는 4개국의 모든 시설은 해체된다. 이에 따라 통일된 독일은 내부적인 사안과 대외적인 사안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제7조).

조약 서명과 함께 쾰른 장관과 드 메지에르 외무장관 대행은 세바르드나제 장관에게 지난 8월 독·소 외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공동 서

.....
⁴⁵ 따라서 통일된 독일은 NATO에 잔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조약문에 NATO 잔류라는 문구가 언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련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한을 전달했다.⁴⁶

(1) 1945~1949년 중에 소련 점령 지역과 동베를린에서 몰수된 재산은 미 해결 재산 문제에 관한 1990년 6월 15일 선언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2) 독일 내 전쟁 기념물과 전쟁 묘지는 독일법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관리된다. (3)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헌법에 적대적인 정당이나 단체는 금지될 수 있다. (4) 동독이 체결한 국제법적인 조약은 ‘통일 조약’에 따라 신뢰 보호를 받으며, 각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동 서한 전달로 소련의 마지막 요구 사항도 해결되었다.

독일은 지난 2월 13일 2+4회담 기구를 구성한 지 7개월 만에 2+4조약의 체결을 이끌어냈다. ‘2+4조약’이 서명됨으로써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표 1-1>에 2+4회담 기구 구성에서부터 조약 서명까지의 일정을 정리했다.

2+4조약 체결 다음날인 9월 13일 모스크바에서 겐서 장관은 세바르드나 제 장관과 독·소 우호협력조약에 가서명했다. 이 조약은 독일통일로 인해 다소 불안해하는 소련을 안심시키며, 과거 두 나라 간에 있었던 불신을 털어내어 신뢰를 쌓고, 향후 독일과 소련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1주년이 된 1990년 11월 9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여 콜 총리와 함께 이 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또한 바이젤 재무장관은 1990년에만 독일이 소련에게 240억 마르크의 재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독일은 통일에 협조한 소련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
⁴⁶ Hans Georg Lehmann, *Deutschland-Chronik 1945 bis 1995*. Bonn, 1995, p.432.

표 1-1) 2+4회담 개최 현황

일자	내용	장소	주요 협의 내용
1990.2.13	회담 기구 구성	오타와	CSCE 외무장관 회담 계기에 2+4회담 기구 구성
3.14	제1차 준비 회담	본	6개국 실무 대표단의 본 회담 준비
4.30	제2차 준비 회담	동베를린	본 회담 준비
5.5	제1차 회담	본	향후 2+4회담 일정·장소 및 의제 결정
6.22	제2차 회담	동베를린	통일 이후 독일 주둔 연합군의 단계적 철수 합의
7.17	제3차 회담	파리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 합의
9.12	제4차 회담	모스크바	2+4조약에 서명

제10절 대외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

독일통일이 외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외교가 큰 역할을 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카이저(Karl Kaiser)는 전후질서의 붕괴를 가능케 한 정치적인 발전을 ‘외교가 거둔 위대한 승리의 하나’로 평가했다.⁴⁷ 그러면 독일이 2+4회담 기구가 구성된 지 불과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2+4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⁴⁸

첫째, 독일은 통일을 독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유럽의 문제라는 큰 틀에서 추진했다. 콜 총리는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에서 통일문제를 전 유럽의 통합과정에 포함시켰다. 또한 ‘통일’ 대신에 ‘분단 극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독일은 동·서 진영으로 분단된 유럽의 통합을 이루고, 유럽 내 평화질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독일통일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⁴⁷ Richard Kiessler/Frank Elbe,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p.14.

⁴⁸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 (서울: 푸른길, 2016), pp.189-199 및 pp.280-281.



또한 독일은 2+4회담 참가국 모두가 회원국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최종 의정서를 거론하며 이 의정서에 따라 자결권에 의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점도 강조하며 지지를 얻었다. 또한 2+4회담 결과를 CSCE 정상회의에 제출하여 전 유럽의 동의를 받고자 했다.

둘째, 독일이 꾸준히 추진한 ‘신뢰 외교’를 통해 주변국의 신뢰를 얻은 점이다. 독일은 1949년 9월 출범 이래 ‘친서방정책’을 추진하며 유럽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외교로 독일은 서방 측의 신뢰를 얻었다. 또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신동방정책’으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얻었다. 통일과정에서도 유럽공동체(EC)와 NATO에 대한 외교를 강화했다. EC와 NATO 회원국들에 대해 독일이 통일을 통해 유럽의 강자(强者)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평화·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신뢰 외교’를 통해 EC와 NATO 회원국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독일은 일찍부터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 통일외교를 추진한 점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사항이었던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며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통일 전 과정 내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통일외교를 추진했다. 1990년에만 콜 총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4차례의 정상회담을, 겐서 외무장관은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과 12차례의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정책을 공조하며 지지를 얻었다.⁴⁹

넷째,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회담’ 기구를 구성한 점이다. 독일은 이 기구의 참가국을 최소화하고, 전승 4개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협의한다는 목표를 관철했다.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로 가능했다. 동·서독이 전승 4개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
⁴⁹ 독일이 미국 및 소련과 가진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회담 횟수는 필자가 콜 총리와 겐서 장관의 회고록을 토대로 조사한 수치이다.

있었던 것은 대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했다.

다섯째, 독일은 2+4회담의 의제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어 사실상 독일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던 소련에 대해 외교력을 집중한 점이다. 콜 총리는 1990년에만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겐서 장관은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과 12차례의 회담을 통해 소련의 지지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콜 총리와 겐서 장관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유의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소련에게 2억 2천만 마르크 상당의 생필품, 50억 마르크의 차관과 10억 마르크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했다. 통일 이후에도 동독 주둔 소련군의 안정적인 철수를 위해 15억 5천만 마르크도 지원했다. 대소련 외교의 성공으로 대외적인 문제를 독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데 콜 총리와 겐서 외무장관 등 정치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통일 당시 콜은 8년째 총리로, 겐서는 16년째 외무장관으로 각각 재임하고 있어 2+4회담 당사국의 정상 또는 외무장관들과의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신뢰도 받고 있었다. 콜 총리와 겐서 장관의 이러한 경력은 이들과 협상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콜 총리와 겐서 외무장관은 회담 당사국의 정상 및 외무장관들을 설득하여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2+4조약을 체결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독일통일과 독일통일의 특징

제1절 내부적인 문제의 해결

서독은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승 4개국과 2+4회담을 진행하면서 동·서독 통합을 위한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갔다. 내부적인 문제는 통일 방식, 화폐·경제와 사회통합 문제, 통일된 독일의 수도 결정 등의 문제로 동·서독이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들이다.

동·서독은 1990년 5월 18일 체결한 '통화·경제와 사회동맹 조약'이 7월 1일 발효되어 정치적인 통일에 앞서 경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 경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1) 독일통일이 되돌릴 수 없게 된 점이다. (2) 동독주민들에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준 점이다. 이로 인해 서독으로 넘어오는 이주자들이 크게 줄어들어 동독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⁵⁰ (3) 소련에게 통일을 지체시킬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독일은 1990년 내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계획대로 통일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완전한 통일에 앞서 경제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처럼 장점도 있는 것이다.

⁵⁰ 1990년 1월의 이주자는 73,729명이었는데, '통화·경제와 사회동맹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인 6월에는 10,68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경제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은 7월 6일 ‘통일조약’ 협상에 나서 제1차 회담을 동베를린에서 시작했다. 7월 22일 동독 인민의회는 행정 구역(Bezirk)을 서독과 같이 주(州, Land)로 변경하는 ‘주 도입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동독의 14개 행정 구역은 통일을 기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와 튀링겐(Thüringen)의 5개 주로 바뀌게 되었다. 통일이 되면 독일은 서독지역의 11개 주를 포함하여 총 16개 주가 된다. 8월 23일 오전 2시 47분 동독 인민의회는 10월 3일 0시를 기해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통일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인민의회는 당초 가입일자를 동독지역의 주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10월 14일로 결정했었는데, 가입 일자를 앞당긴 것이다. 동독의 경제와 재정이 파산 상태인 상황에서 이미 결정된 통일을 조속히 완료하여 동독지역을 안정시키고, 10월 14일에는 주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행정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10월 3일로 정한 이유는 ‘2+4조약’이 10월 1-2일 뉴욕에서 열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외무장관 회의에 상정되어 추진될 것이므로 이 회의 다음 일로 정한 것이다.

8월 31일 동·서독은 동베를린에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서명했다.⁵¹ 통일조약의 분량은 약 1,000쪽으로 동독 주의 가입, 기본법 개정, 노동, 사회, 가족과 여성, 보건, 환경보호, 문화, 방송, 교육, 과학, 체육 등 동독의 가입에 따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조약’은 전문, 9장 45조의 본문, 일부 조항의 적용기준에 관한 의정서, 서독법 적용에 관한 특별 경과 규정(부

51 ‘통일조약’의 정식 명칭은 ‘독일통일 완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조약’이다. ‘통일조약’ 협상에 서독 측은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이, 동독 측은 귄터 크라우제 총리실 정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대표단 규모는 각각 50명이었다. 동·서독 대표단은 총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갖고 1990년 8월 31일 동베를린에서 조약안에 서명했다. ‘통일조약’ 체결에 관한 상세 내용은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 길, 2016), pp.117-129 참조.



록 I), 동독 법률의 효력 지속에 관한 특별 경과 규정(부록 II), 미해결 재산권에 관한 동·서독정부의 공동 성명(부록 III), 그리고 ‘통일조약’의 이행을 위한 동·서독정부의 합의서로 되어 있다. 동독의회는 9월 20일에, 서독 하원은 9월 20일, 상원은 9월 21일에 각각 비준했다. 이처럼 동·서독 의회는 ‘통화·경제와 사회통합 조약’에 이어 ‘통일조약’도 빠르게 비준함으로써 통일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통일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제2절 통일된 독일

‘통일조약’과 ‘2+4조약’ 체결로 통일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통일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무리 되었다. 동독은 통일 절차를 밟아 9월 24일 동독군이 바르샤바조약기구⁵²를 10월 3일자로 탈퇴한다는 의정서를 소련과 체결했다. 10월 2일 인민의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동독정부를 해산하고 동독의 소멸을 선언했다. 인민의회는 동독이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통일된 독일에서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7시 베를린 샤우스필하우스에서 열린 동독의 국가행사를 끝으로 동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⁵³

통일된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 ‘2+4조약’이 시간적으로 10월 3일 까지 비준될 수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10월 1~2일 뉴욕 CSCE 외무장

.....

⁵²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서독이 1955년 5월 재무장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자 니키타 흐루시초프의 제안으로 1955년 5월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결성된 군사동맹조약기구이다. 회원국은 소련, 체코, 헝가리, 폴란드,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알바니아 등 동유럽 8개국이었다. 1968년 9월 알바니아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체코 자유화 운동 무력진압에 항의하여 탈퇴하였으며, 1990년 9월에 동독이 탈퇴했다. 1991년에 중심 국가인 소련이 해체되어 이 기구는 유명무실해졌으며, 1991년 7월 1일 프라하에서 공식 해체되었다.

⁵³ 동독의 마지막 국가행사에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와 콜 총리가 참석했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지난 41년 동안 동독이 저질렀던 과오를 되돌아보며 통일된 독일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관 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소련 외무장관은 이들 4개국이 갖고 있는 “베를린과 전(全)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효력은 독일통일 시점부터 독일과 관련한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정지된다”라고 선언했다. 겐서 외무장관과 동독의 교육·과학장관이 4개국 외무장관의 선언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통일된 독일은 통일 시점부터 사실상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었다. 10월 3일 0시 독일은 베를린 제국의회 의사당 앞에서 통일 기념식을 갖고 통일이 되었음을 알렸다.

1990년 11월 21일 파리에서 열린 CSCE 정상회의는 독일통일에 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⁵⁴ 정상들은 독일국민이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최종 의정서의 원칙에 따라 이웃 국가들과 완전히 합의하여 한 국가로 통일을 이룩한 데 대해 환영했다. 또한 독일의 통일 달성은 안정·평화와 협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며, 장래 민주적으로 통일될 유럽의 항구적이고 정의로운 평화질서 구축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4조약 당사국들은 비준에 들어가 독일은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 5일에 비준했다. 전승 4개국 중에서 미국이 맨 먼저 10월 16일에, 영국은 11월 16일에 각각 비준했다. 프랑스는 다음해인 1991년 1월 17일에, 마지막으로 소련이 많은 내부 논란 속에 3월 4일 비준했다. 소련이 3월 15일 비준서를 독일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조약 제9조에 따라 이날 ‘2+4조약’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독일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었다.

제3절 독일정부의 독일정책

헬무트 콜 정부가 통일을 이루었지만, 콜 정부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

⁵⁴ 정상회의 결과는 Bulletin Nr. 137-90 der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Charta von Paris für eines Europa-Erklärung des Pariser KSZE-Treffens der Staats-und Regierungschefs, 24. November 1990 참조.



데에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대동독정책이 토대가 되었다. 분단 기간 중 독일정부가 추진했던 대동독정책은 ‘독일정책(die Deutschlandpolitik)’이며,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정책’에는 통일정책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데나워 총리, 브란트 총리와 콜 총리 등 역대 총리 3인의 정책을 통해 독일정부의 ‘독일정책’을 알아본다.⁵⁵ 비록 오늘날 남북한의 환경이 분단 시 독일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1.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1949~1963년 재임)

19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주권은 크게 제한되었다. ‘점령규약’(1949년 9월 21일 발효)에 의해 미국, 영국, 프랑스의 3개국 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었으며, 외교관계 수립이 제한되고, 군대 보유도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으로서는 폐허가 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 이외에도, 군대 보유 등 주권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했다.

1950년대는 분단 직후라 동·서독 관계는 물론 국제적으로 냉전체제였다. 초대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기민당 소속)는 연합국의 점령 통치에서 막 벗어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다. 아데나워 총리는 ‘통일보다는 자유를 우선하는 정책(Freiheit vor Einheit)’을 추진했다.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생국 서독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일이 더 중요했고 더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대외정책에서는 ‘친서방정책’을 추진했다. 소련이 독일통일에 동의할 리가 없었고, ‘친서방정책’만이 안보를 확고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권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⁵⁵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 길, 2016), pp.207-214을 토대로 했다.

1952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은 서방 연합국에게 공한(스탈린 노트)을 보내 독일을 중립화한 통일을 제의했다. 아데나워 총리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도 반대했다. 중립국으로서의 통일은 독일의 주권을 제한하고, 독일 주둔 연합군의 철수로 이어져 결국은 독일이 공산화되는 전 단계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아데나워 총리는 서독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며, 미국도 같은 입장이었다. 1954년 10월에 체결한 ‘독일조약’이 1955년 5월에 발효되어 서독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NATO에도 가입하는 등 주권이 강화됐다. 1963년 아데나워 총리는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독·불 관계를 개선하는 ‘엘리제조약’을 체결했다. ‘친서방정책’으로 서독은 유럽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동독과의 관계에서 아데나워 총리는 ‘힘의 우위의 정책(Politik der Stärke)’을 기반으로 서독이 전 독일을 대표한다는 ‘단독 대표권(Alleinvertretungsanspruch)’을 내세우며 동독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지 않음은 물론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ktrin). 다만 소련이 독일 분단에 책임이 있는 당사국인 점을 고려하여 1955년 9월에 예외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할슈타인 독트린’은 한동안 동독을 고립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아데나워 총리 재임 시 서독은 동독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았다.

서독이 재무장하고 NATO에도 가입하자 동독은 소련 주도로 1955년 5월에 설립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했다. 1959년에는 국기를 변경하며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독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또한 동독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계속 탈출하자 1961년 8월에 베를린 장벽을 세우며 서독과 완전히 단절하고자 했다.

아데나워 총리는 동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친서방정책’을 추진하며 신생국 서독은 주권을 신속히 회복하고 서



방 국가들과의 동등권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테나위의 이러한 정책이 통일의 토대가 되었다.

2. 빌리 브란트 총리(1969~1974년 재임)

동독을 고립시키는 서독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왔다.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한 정치인으로 빌리 브란트 총리를 빼놓을 수 없다. 서독이 동독과 관계를 개선하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한 이는 빌리 브란트(사민당 소속) 총리였다. 사민당(SPD)은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에서 기민당보다 유연한 입장이었다.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 재임 시인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동·서독이 대치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브란트는 동독을 고립시키거나, 동독과 대결하기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가 동독에 대해 추진한 주요 정책은 ‘작은 걸음의 정책(die Politik der kleinen Schritte)’과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이다.

‘작은 걸음의 정책’은 독일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이다.⁵⁶ ‘접근을 통한 변화’는 브란트의 핵심 참모인 에곤 바(Egon Bahr)가 제시한 정책으로 “공산 국가는 스스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접촉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⁵⁷ 에곤 바는 1963년 7월 15일 투칭(Tutzing)에서 열린 신교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통일문제와 동독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즉, “통일은 외교정책의 문제로 오로지 소련과 함께 추진해야만 이룰 수 있고, 동독정권을 직접 붕괴시키려는 정책은 가망이 없으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완화는 오로지 동독정권과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

⁵⁶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서울: 소나무, 2005), p.161.

⁵⁷ Egon Bahr, *Zu meiner Zeit*, Karl Blessing Verlag: München, 1996, pp.152-161/ 손선홍, 앞의 책, p.161.

1960년대 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등 국제 정세도 긴장완화 분위기로 돌아섰다. 1960년대 중반부터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할슈타인 독트린’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다. 브란트가 외무장관⁵⁸이었던 1968년 초 서독은 동독과 외교관계가 있는 유고슬라비아와 수교하며 외교정책을 수정했다.

1969년 9월 총선을 통해 총리가 된 브란트는 10월 총리 취임 연설에서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외국이 아니며, 상호 관계는 다만 특별한 성격의 관계일 수 있다”고 선언했다.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독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동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1970년 3월과 5월 브란트 총리의 제의로 두 차례의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입장 차이가 커 성과가 없었다. 서독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완화에 중점을 둔 반면에 동독은 서독이 법적인(de jure) 승인을 해야만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동독이 서독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 브란트 총리는 동독과의 대화를 일시 중단했다. 브란트는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⁵⁹을 추진하며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소련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신동방정책’은 독일의 분단 현실과 유럽 국경선의 불가침 등 현상 유지라는 두 가지 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2개의 원칙이 유지됐다. (1) 동독정권을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며, (2) 통일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⁶⁰

⁵⁸ 1966년 12월 1일 기민/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 간의 대연정 수립으로 기민당의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가 총리로, 사민당 대표이며 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외무장관이 되었다.

⁵⁹ 독일의 ‘동방정책’은 전통적으로 독일이 소련과 동유럽 국가에 대해 취해온 정책을 말한다. 브란트는 독일의 분단 현실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유럽 국가의 국경선 인정 등 유럽의 현상을 인정하며,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동독과의 관계도 개선하고자 했다. 브란트가 추진한 정책은 기존의 동방정책과 구별하여 ‘신동방정책’이라고 한다.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당은 ‘신동방정책’이 독일통일을 포기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대했었다.

⁶⁰ 서병철, 『독일통일과 외교의 역할』, 『통일의 저력』(서울: 백산문화, 1999), p.19.



브란트 총리는 1970년 8월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체결한 모스크바조약에서 오테르-나이세 강 선과 동·서독 경계선을 포함한 모든 유럽 국가 국경선의 불가침을 인정했다. 이는 서독이 지난 20년 동안 취해온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으나 서독은 소련에게 ‘독일통일에 관한 공한(Brief zur deutschen Einheit)’을 보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⁶¹ 브란트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동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데나워 총리의 친서방정책으로 서독이 서방 측 국가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독은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 관계를 개선한 뒤에 동독과 관계를 개선했다. 1972년 12월 21일 서독은 동독과 ‘동·서독 관계에 관한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 동독은 동독을 승인하지 않는 서독과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없었으나 소련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응했다. 이 조약으로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지 않고서도 동독과 공존하며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동·서독은 1973년 9월 유엔 동시 가입에 이어 1974년 5월에 상주대표부를 교환했으며 다양한 교류를 추진했다. 브란트가 마련한 상호 방문, 우편물 교환과 전화통화 재개 등의 동·서독 교류는 통일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3. 헬무트 콜 총리(1982~1998년 재임)

자신의 보좌관이 동독의 간첩으로 드러나 1974년 5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브란트의 뒤를 이어 재무장관인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SPD 소속)가 총리가 되었다. 그의 총리 재임 8년이 지난 1982년 10월 1일 헬무트 콜(CDU

⁶¹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서울: 소나무, 2005), p.177.

‘독일통일에 관한 공한’은 “... 이 조약은 독일이 유럽의 평화 상태를 지향하고, 유럽의 평화 상태에서 자유로운 자결권을 행사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목적과 위배되지 않는다”로 되어있다. Dietrich Rauschnig, *Rechtsstellung Deutschlands: Völkerrechtliche Verträge und andere rechtsgestaltende Akte*, dtv, 1985, p.123.

소속)은 선거가 아닌 슈미트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제의하여 총리가 되었다.⁶²
13년 만에 기민/기사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콜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아테나워 총리가 추진했던 ‘친서방정책’이었다. 기민당은 1970년대 브란트와 슈미트의 사민당 정부가 추진했던 동독 및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 정책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러나 콜 총리는 집권 후 사민당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보완하여, 동독 및 동유럽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동독과의 관계에서 콜 총리는 (1) 독일국민이 자결권을 통해 자유로운 통일 이룩, (2) 분단 고통의 완화와 동·서독 주민들 간의 동질성 유지, (3) 서베를린의 자유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독일문제 해결에 ‘자유로운 자결권’을 내세우며 당사자인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동독은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반대했던 기민당 소속의 헬무트 콜이 집권하자 내심 두려워했다. 이에 동독의 호네커 정권은 콜 총리 집권 초기(1982-1983년)에 서독에 대해 3대 정책을 추진했다. (1) 서독과는 일체 협력하지 않으며, (2) 제3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독의 정통성을 강화하며, (3) 동독 공산당의 권력을 강화하여 서독과 완전 차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콜 총리는 동독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동독의 이러한 정책으로 콜 집권 초기에 동·서독 관계는 긴장과 대결 양상을 띠었다. 여기에 더하여 소련이 1970년대 후반 동독에 배치한 SS-20 신형 핵무기를 철거하지 않자 콜 정부는 전임 슈미트 총리가 추진했던 ‘이중 결의(Double-Track Decision)’ 정책에 따라 1983년 11월에 퍼싱 II 핵무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했다.⁶³ 이

.....
⁶² 독일 연방 총리에 대한 불신임은 연방 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만 이루어진다. 이를 ‘건설적 불신임(konstruktives Mißtrauensvotum)’이라고 한다(독일 기본법 제67조 1항). 이 ‘건설적 불신임’ 제도는 과도한 불신임 발의를 방지하여 독일 정치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⁶³ 1970년대 후반 소련이 동독과 체코에 중거리 핵 로켓 SS-20을 배치하자 NATO는 1979년 12월



로 인해 동독과의 관계는 더욱 더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과 관계를 개선하게 되는 뜻밖의 기회가 왔다. 동독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관을 얻고자 하였으나 신용이 없어 차관을 얻을 수 없었다. 이때 콜 정부는 동독이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20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섰다.

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호네커 정권은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과 서독주민의 동독 방문 조건을 완화하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돈을 들이지 않고 보증만 썼을 뿐인데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어 동독은 서독과의 경계선에 설치한 자동 발사기를 해체하고(1984.11), 지뢰도 제거했다(1985.11). 1987년 9월에는 호네커 서기장이 서독을 공식 방문할 정도로 동·서독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다.

1989년 가을 동독주민의 개혁요구 시위가 한창일 때 콜 총리는 자유총선 실시 등 개혁조치를 하도록 동독정부를 압박했다. 동독정부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100~150억 마르크 지원 요청은 거절했다. 이와 함께 독일문제는 동독정권이 아니라 동독주민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독주민의 ‘자유로운 자결권(Freie Selbstbestimmung)’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콜 총리는 1989년 가을 동독주민의 평화혁명이란 기회를 잡아 강한 통일 의지와 외교력으로 통일을 이룩했다.

.....
12일 ‘이중 결의’를 채택했다. ‘이중 결의’란 우선 NATO가 소련과 군비축소에 관해 대화를 하여 핵무기 철거를 요청하되, 그럼에도 소련이 핵무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1983년부터 서독에 중거리 핵미사일인 퍼싱 II 108기와 크루즈 미사일 96기를, 네덜란드, 벨기에 및 이탈리아에는 크루즈 미사일 368기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소련이 핵무기를 철거하지 않자 서독은 1983년 11월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서울: 소나무, 2005), p.218, pp.227-228.

제4절 독일통일의 특징

평화통일을 이룬 독일통일의 특징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⁶⁴

첫째, 독일통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통일이라는 점이다. 독일이 20세기 내에 통일이 되리라고는 독일인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1987년 9월 호네커 서기장은 서독을 방문하여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로 성공했음을 서독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호네커의 방문을 지켜본 대부분의 서독주민들은 독일의 분단이 이렇게 굳어져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 이유는 (1) 소련이 가장 중요한 위성국가인 동독이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둘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동독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⁶⁵ (2)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문제’에 관해 전승 4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신속히 이루어진 통일이라는 점이다. 동독 정권수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2개월 후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이로부터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통일이 이처럼 신속히 이루어진 이유로 (1) 내부적인 요인과 (2) 대외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1) 내부적인 요인은 동독주민들의 서독 이주로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체제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콜 총리는 1989년 11월 28일 독일 통일 10개 방안을 발표할 때 만해도 통일을 이루기까지 최소한 3~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도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고, 동독의 재정이 파탄이 나고 지방 조직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독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했다. 동독이 붕괴되어 동독주

⁶⁴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길, 2016), pp.214-217.

⁶⁵ 독일 외교정책협회의 폰 노르데스킬트(Fritjof von Nordeskjöld) 부회장(주이탈리아, 주프랑스 대사 역임)은 2010년 4월 9일 필자에게 이점을 강조했다.



민들이 밀려들어올 경우 서독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2)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재임 중에 통일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독일통일의 열쇠를 사실상 소련이 쥐고 있었는데, 서독정부는 소련경제의 악화와 소연방 내 민족갈등 문제 등으로 고르바초프의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했다. 콜 총리는 비교적 독일통일에 호의적인 고르바초프 재임 중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신속한 통일로 급선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콜 총리와 겐서 장관은 소련 내부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고르바초프 정권의 안정을 위해 독일은 1990년 1월에 소련에게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2억 2천만 마르크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 데 이어 5월에는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신속한 통일로 전환하여 목표를 이루었다.

셋째, 독일인들이 주도한 통일이라는 점이다. 분단 시 서독은 동독과 장기간에 걸쳐 상호 방문, 우편·통신 및 상품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했다. 이러한 교류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1989년 9월 4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 약 1,200명의 시민들이 공산당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가 드레스덴 등 동독 내 여러 도시로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운 동독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켰고,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렸다. 마침내 자유선거를 이끌어내는 평화혁명을 일으켰다. 결국 동독주민들이 서독과의 통일을 원했던 것이다. 서독은 동독주민의 평화혁명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치밀한 외교활동으로 통일로 이끌었다.

넷째, 전승 4개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통일이다. 독일통일의 당사자는 서독과 동독이지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동·서독의 합의(통일조약)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승 4개국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독일은 이들 4개국과 ‘2+4회담’을 통해 통

일된 독일의 NATO 잔류 등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룩했다.

다섯째, 안정 속에 이른 평화통일이라는 점이다. 분단 시 동독에는 34만 명의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고, 17만 5천 명의 동독군이 있었다.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또한 동독주민들도 시위과정에서도 군이나 경찰들과 충돌하지 않았다. 통일이 안정 속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조약 협상에 서독 측 수석대표였던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통일과정에서 피를 흘렸더라면,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했다.⁶⁶

여섯째, 유럽의 통합과 새로운 유럽의 안보 질서를 구축한 통일이라는 점이다. 독일통일로 유럽의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군사·안보기구의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통일로 EC의 통합이 속도를 얻었으며, EC는 1993년에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며 회원국은 28개국이었다.⁶⁷ NATO는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으로 28개 회원국을 가진 기구로 발전했다. 독일통일 과정에 큰 기여를 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95년 1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OSCE)로 바뀌었고, 유럽의 민주주의 증진, 군비통제, 인권보호, 긴장완화와 분쟁방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57개 회원국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했다.

⁶⁶ Schäu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München: Knaur, 1993. p.15.

⁶⁷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요가 없는 건물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통해 매각하였다.

동독에 주재하고 있던 외국의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공관은 통일 시점에 전원 폐쇄되었다. 동독 주재 외교관들에게는 통일 이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외교 특권을 부여하여 본국으로 귀임하거나 제3국으로 부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동독의 외교관도 정리해야 했다. 통일 시점에 남아있던 동독 외교관은 2,208명이었다. 통일 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외교관이 있었는데 통일과정 중에 일부가 스스로 사임했다. 2,208명의 잔류 인원 중 468명이 재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어학 특기자 등 80여 명만 채용되었다. 동독의 재외공관 관리나 문서이관 등 업무를 위해 250여 명의 기술 및 행정 분야 담당자들이 잔류하였다.

외교관들은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보다도 더 엄격한 재임용 기준이 적용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산정권을 위해 활동하고 홍보했던 외교관들이 갑자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위해 활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임용을 받지 못한 외교관들은 타 부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6개월 평균 임금의 70%를 일정기간(50세 이하는 6개월, 50세 이상은 9개월) 받으며 전직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동독의 대외관계는 정리되었다.

제2절 조약과 협정의 처리 내용

독일통일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서독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독일통일은 두 개의 국가가 소멸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두 개 국가의 결합이 아니었다. 따라서 서독과 동독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과 협정의 효력문제는 이 점을 토대로 처리되어야 했다.

서독이 체결한 조약과 협정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일부 조약을



제외하고는 전 독일지역에 적용되었다(통일조약 제11조).⁷⁰ 이는 독일이 통일이 되었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의 동질성과 연속성(Identität und Kontinuität)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1949년 9월 이후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있었지만,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독일연방공화국만이 독일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주체로 여겼다. 따라서 서독이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의 효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독이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과 달리 동독이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통일과 함께 동독의 기구, 조직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자동적으로 해체되거나 변경되어 통일된 독일정부는 동독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통일된 독일정부가 계속 유효, 조정 및 효력 상실 여부 등을 결정 또는 확인하도록 했다.

이 작업은 신뢰보호, 관련 당사국의 이해관계, 독일연방공화국의 조약상의 의무의 관점, 자유민주 법치국가의 기본원칙 존중과 EC의 권한 존중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통일조약 제12조 1항).⁷¹ 통일된 독일은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조약 당사자들 및 EC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제2항). 서독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한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에 통일된 독일이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당사국들과 EC(EC와 관련된 경우)와 협의하기로 했다(제3항).

‘통일조약’ 제12조는 통일을 이루는 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규정이었다.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독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과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2+4회담 과정에서 동독

.....
⁷⁰ 통일조약 제11조(서독이 체결한 조약) : 오로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회원국을 규정한 조약을 포함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과 협정은 계속 유효하며, 부속서 I에 언급된 예외 조약을 제외하고는 그 권리와 의무사항이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도 적용된다. 개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일된 독일정부가 해당 조약 당사국들과 협의한다.

⁷¹ 통일조약 제12조(동독이 체결한 조약) : 동독이 체결한 조약들은 동독의 조약 당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계속 유효, 조정 또는 효력 상실 여부 등을 결정 또는 확인하기로 한다. 이 작업은 신뢰보호,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의 관점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조약상의 의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유, 민주, 법치국가적 기본원칙과 EC의 권한 존중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체결한 조약과 협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동독은 1949년 10월 정권 수립 이후 41년 동안 137개국과 총 2,582건의 조약과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⁷² 주로 소련(348건), 폴란드(184건), 체코(129 건) 및 북한(53건) 등 사회주의 국가와 체결한 조약과 협정이 대부분이었다. 미국(21건), 영국(17건) 및 프랑스(14건)와 체결한 조약도 있었다. 동독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 중에서 5-7%만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⁷³ 또한 동독 외무부가 제시한 협정 중에는 국제법적인 조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었다. 동독이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첫째, 유엔과 그 산하기구,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등 동·서독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있었던 국제기구 관련 다자 조약이나 협정⁷⁴: 독일정부가 1990년 10월 3일에 UN 사무총장, UN 산하기구 및 모든 국제기구에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되었으며, 앞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이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통고하여 해결했다.

둘째,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코메콘 등 동독은 가입했으나, 서독이 가입하지 않았으며 통일된 독일이 가입할 의사가 없는 다자 조약이나 협정: 통일과 함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했다. 이 조약에 대한 독일정부의 기본 입장은 통일과 함께 동독은 국제법 주체로서 소멸되어 동독의 회원 자격이 없어졌으며, 통일된 독일은 이 기구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부 조약은 통일 전에 해약을 통보했다.⁷⁵

셋째, 동독의 채권 및 채무 관련 조약: 채권 및 채무 관련 조약은 모

.....

⁷² 독일 외무부 자료(문서번호 : 50 A-505.27/4, 1995.2.7 기준).

⁷³ 독일 외무부에 따르면 많은 비밀 조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동독 측이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상대측 국가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동독이 체결한 정확한 조약 수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⁷⁴ 서독과 동독은 235개의 다자 조약에 동시에 가입했었다.

⁷⁵ 동독은 1990년 9월 24일 '조약의 권한에 관한 비엔나협정'(1969.5.23) 제62조 1항 a 및 b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을 이유로 10월 3일자로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한다고 통보했다.



두 인수하여 연방 재무부가 정리하도록 했다. 독일 연방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0년 3월 31일 기준 동독의 대외 채무는 약 556억 DM(주로 서유럽 국가), 채권은 363억 DM(주로 개발도상 국가)이었다.⁷⁶ 순수 채무는 193억 DM이었다.

넷째, 국경 관련 조약: 동독은 1950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괴를리츠조약’에서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폴란드와의 국경선으로 승인했는데, 이러한 국경선 관련 조약의 처리가 가장 어려웠다. 2+4조약에서 통일된 독일의 범위를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으로 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은 폴란드와 국경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선 문제를 해결했다.

협약의 시점에 등록이 안된 다른 조약이 나타나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 신뢰 보호 차원에서 동독이 체결한 일부 조약은 인수했다. 독일정부는 효력이 상실된 조약이나 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조약과 협정이 무효화되었다고 관보에 게시했다.

제3절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조약 체결

독일은 2+4조약에서 합의한 대로 폴란드와의 국경선 문제를 마무리해야 했다. 폴란드는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통일된 독일과의 국경선으로 확정하기 위해 외교 활동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그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이유로 2+4회담 당사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의 4개국 외무장관을 초청하여 국경조약 서명식을 성대하게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겐서 외무장관의 요구로 국경조약 서명식은 4개국 장관의 참석 없이 두 나라 외무장관 간에 1990년 11월 14일 바르샤바에서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독일정부는 오데르-나이세 강 선 동부 독일지역에서 추방되어 피난 온 이들이 고향을 잃게 되는 심정을 헤아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⁷⁶ Karl-Rudolf Korte,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M: Campus, 1994. p.28.

독일과 폴란드는 국경조약 전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45년이 흘렀으며, 이 전쟁으로 인해 특히 수많은 독일인들과 폴란드인들이 추방 또는 이주로 인해 고향을 상실해야 했던 참혹한 고통을 인식하고, 두 나라 국민과 국가 간에 평화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경고와 도전을 인식했다. 또한 두 나라의 우호적인 공존을 위해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독일인들과 폴란드인들 간의 지속적인 이해와 화해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1950년 7월 6일 폴란드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형성되어 존재하는 국경선을 확인했다(제1조). 현존하는 국경선이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신성불가침이며, 당사자들은 장래 어떠한 영토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제2조).

폴란드와의 국경조약은 연방하원의 비준으로 1992년 1월 16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오데르-나이세 강 선이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으로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었다. 1945년 8월의 ‘포츠담협정’으로 폴란드의 관할 아래에 들어갔던 동부 독일지역의 포어폼메른(Vorpommern)과 슐레지엔(Schlesien) 지방은 국제법적으로 폴란드의 영토가 됐다.

독일은 폴란드의 관할 아래에 들어갔던 오데르-나이세 강 선 동부 독일 지역을 되찾아 통일을 이루었으면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을 폴란드에게 넘겨주지 않고 통일을 이룰 방법은 없었다. 소련과 폴란드 이외에도 미국, 영국과 프랑스도 통일된 독일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국경선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오데르-나이세 강 선의 승인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였다. 독일통일은 독일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국경선으로 승인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독일은 통일 후에 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폴란드는 물론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제4절 독일 주둔 소련군과 서방 연합군의 철수

독일은 통일이 되어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었다. 독일이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됨으로써 지난 1945년 이래 독일에 전승국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러시아 등 4개국 군대는 철수해야 했다.

통일 당시 동독에는 소련군 약 34만 명(22개 사단 42개 여단 규모) 외에 군속과 군인가족 약 22만 명이 있었다. 소련은 이들을 독일통일 이후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 했으나 '2+4조약'(제4조)에 따라 1994년 말까지 철수시켜야 했다.

1990년 10월 9일 바이겔 재무장관은 테레초프(Wladislaw Terechow) 독일 주재 소련 대사와 소련군 주둔과 철수에 관한 이전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서 독일은 소련군 주둔 및 철수 비용으로 120억 마르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련 측이 부담해야 할 주둔 비용 30억 마르크는 5년 동안 무이자로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1994년 말까지 동독 주둔 소련군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10월 12일에는 본에서 겐서 외무장관은 테레초프 대사와 소련군의 주둔과 철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러시아⁷⁷는 독일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철군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보리스 옐친(Boris Jelzin) 대통령은 1992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콜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최종 철군 일정도 1994년 12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러시아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여 약속대로 1994년 8월 31일 옐친 대통령과 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갖고 완료했다. 서방 연합군과 함께 하는 철군 행사를 검토했으나 러시아 측이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여 이날 이루어졌다. 러시아군 철수 비용으로 독일은 5억 5천만 마르크를 추가하여 총 155억 5천만 마르크(약

.....
⁷⁷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등 12개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했다.

77억 8천만 유로 상당)를 지원했다.

독일은 처음에 철수 군인들의 주택건설 비용으로 60억 마르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2+4조약’ 서명 1주일을 앞둔 시점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70-175억 마르크를 요구하며 철군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자며 콜 총리를 압박했다. 독일은 소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독일이 지원한 155억 5천만 마르크는 철수 군인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85억 마르크, 소련군의 한시적 주둔과 철수 비용으로 30억 마르크, 철수 병력의 수송에 10억 마르크, 그리고 철수 군인들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사용되었다. 독일은 러시아군 철수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나 아무런 분쟁이나 마찰 없이 약속대로 철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러시아군 철수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방 3개국 군대도 철수했다. 분단 기간 동안 서방 3개국 군은 서독은 물론 서베를린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1948년 6월 23일 서방 연합국이 통화 개혁 조치를 서베를린까지 확대하자 소련은 서베를린과 서독지역을 오가는 모든 육로 길을 봉쇄했다(베를린 봉쇄). 서베를린은 동독의 한가운데서 고립되었으나 서방 연합군은 항공기로 생활필수품과 석탄 등 연료를 수송하며 서베를린을 지켜냈다. 결국 소련은 1949년 5월 12일 봉쇄를 해제했다.

이로부터 12년 후인 1961년 8월 13일에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세우자 미군 탱크는 찰리 검문소에서 소련군 탱크와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서 대치하며 서베를린을 보호했다. 이처럼 분단 시 서독과 서베를린의 안보에 기여했던 서방 3개국 군이 철수하게 된 것이다.

9월 8일 베를린에서 서방 3개국 군 철수 행사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존 메이저(John Major) 영국 총리와 워렌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개국 군대의 철수는 완전 철수가 아니었다. 1990년 기준 40만 2,900명이었던 독일 주둔 NATO군은 1994년 12,800



명으로 감축되었으나, NATO군의 일원으로 계속 주둔하게 되어 이번 철수는 전승국 지위의 소멸에 의의가 있다.

제5절 독일 연방군의 감축 이행

독일은 ‘2+4조약’(제3조)에 따라 군 병력을 3~4년 이내에 37만 명으로의 감축 의무를 이행했다. 1990년 6월 기준 서독 연방군은 49만 5,000명에 동독 인민군은 13만 5,000명으로 총 63만 명이었다. 동독 인민군은 10월 2일 해체되었으며 10월 3일 통일이 되던 날 약 58만 5,000명이었던 연방군을 1995년에 34만 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하여 독일은 독일 군 감축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독일은 2011년에 군 18만 5,000명과 군속 5만 6,000명을 상한선으로 정했으며, 2015년 12월 기준 약 17만 8,200명을 유지하고 있다.

군 병력을 꾸준히 감축해오던 독일은 2016년 들어 증원 계획을 밝혔다. 국내 문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3년까지 7,000명의 군과 4,400명의 군속 등 총 1만 1,4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⁷⁸ 증원 인원은 주로 사이버(Cyber), 위생 분야 이외에 특수 병력 분야에 물론 통일 시 약속했던 37만 명 이하 수준이다.

.....
⁷⁸ 독일 연방군 증원 계획을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국방장관이 2016년 5월 10일 발표했다. 독일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bmvg.de>) 참조. 열람일 2016.9.20.

제5장

독일통일의 시사점과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

제1절 독일통일로부터 얻는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통일의 배경에서부터 통일을 이룩하기까지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을 외교적 측면 위주로 살펴보았다. 즉, 호네커 서기장을 퇴진시키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1989년 가을의 평화혁명과 통일의 성사 여부가 달려있는 ‘2+4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활동을 비롯하여 통일 이후 폴란드와의 국경 조약 체결, 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내용, 독일 주둔 외국군의 철수 등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독일이 이룩한 평화통일로부터 통일한국을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어 우리의 통일 환경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단 시 동·서독 관계와 오늘날의 남북한 관계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통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⁷⁹⁾

⁷⁹⁾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서울: 푸른길, 2016), pp.258-262을 토대로 하였다.



첫째, 독일통일이 한국인들에게 준 가장 큰 메시지는 한반도도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점이다. 분단국의 평화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독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도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둘째, 무엇보다도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콜 총리는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통일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주변 강대국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의 한가운데에 그들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거대한 독일국가의 출현을 원하지 않았다. 소련은 유럽에 두 개의 독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임을 강조하며 통일에 반대했다. 스페인과 헝가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독일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통일에 대한 동·서독주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⁸⁰ 서독 정치 지도자들이 주변 강대국의 반대를 의식하여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주저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했다라면 통일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문제나 주변국들의 반대로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 통일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주변국들도 우리의 통일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통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셋째, 분단 당사자 간의 대화와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분단 시 동독은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동독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서독에 대해 무력 도발도 하지 않았

⁸⁰ 1989년 가을 동독주민들은 “독일 마르크가 오면 우리는 머무르고, 마르크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마르크에게로 간다”며 독일 마르크(DM)의 도입과 통일을 요구했다. 1990년 3월 18일에는 자유총선에서 동독주민들은 ‘독일동맹’을 지지함으로써 신속한 통일 의지를 나타냈다.

다. 서독은 이러한 동독과 상호방문, 우편·통신교류, 문화와 도시 간 자매결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할 수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 해인 1988년 한해에 약 675만 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을 방문했고, 667만 명의 서독주민들이 동독을 방문했다.⁸¹ 동독주민들은 서독 방문을 통해 서독주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윤택한 삶을 알게 되었다. 1989년 가을 동독주민들은 개혁과 개방에 부정적이었던 호네커 정권을 무너뜨리는 평화혁명을 일으켰고, 1990년 총선에서도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냈다. 서독정부가 추진했던 ‘작은 걸음의 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이 동독을 변화시켰고, 동독주민들에게 서독체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동독과의 꾸준한 교류가 통일의 굳건한 토대가 된 것이다.

넷째, 통일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은 외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외교가 거둔 가장 성공적인 승리였다. 독일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전승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해제를 비롯하여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 문제 등 대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했다. 서독은 전승 4개국을 상대로 치밀한 통일외교를 추진하여 이들 국가를 설득하여 지지를 얻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독일통일에 외교의 역할이 컸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며, 핵 능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통일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통일외교가 중요하다.

다섯째, 통일비용보다는 통일로 인해 국력 신장 등 이익(편익)이 더 크다

81 분단기간 중 동·서독주민들의 상호 방문 현황은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서울: 소나무, 2005), pp.241-243 참조.

는 점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2010년까지 20년 동안 약 2조 1,000억 유로의 통일비용을 지출하였고,⁸² 통합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통일이 됨으로써 분단 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분단 유지비용도 필요 없게 됐다. 통일 직후 독일의 인구는 7,975만 명으로 늘어났고, 경제력도 커졌다. 특히 통일 이후 유럽연합(EU)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⁸³ 결국 통일로 인한 편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통일에도 적지 않은 통일비용이 소요되고 어려움도 따를 것이나 통일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 한국의 GDP는 미국을 제외한 G7 회원국들과 유사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⁸⁴ 국립외교원도 2040년의 통일한국은 인구 8,000만 명에 세계 경제 7대 강국으로 유라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핵심 허브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⁸⁵

독일통일은 또한 통일비용 준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우리는 그동안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통일비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독일통일을 계기로 비로소 통일비용을 생각하게 되어 다행이다.

여섯째, 통일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콜 총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일의 기회로 판단하고 독일통일 10개항을 전격 발표하며 통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동독의 정치·경제 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신속한 통일로 선회하여 통

⁸² 독일 통일비용과 우리의 통일비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손선홍,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외교』 제 115호 (2015.10) 참조.

⁸³ 그 하나의 예가 2015년 독일이 참여했던 이란 핵문제의 해결이었다. 독일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함께 이란 핵문제 협상에 참여하여 이란의 핵 포기를 이끌어냈다.

⁸⁴ Goohoon Kwon, “A Unifi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Goldman Sachs, 21 September 2009).

⁸⁵ 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 글로벌 리더 통일한국’, 2014.

일을 이루었다.

콜 총리가 야당인 사민당(SPD)의 주장처럼 기본법 제146조⁸⁶에 의해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했다라면 통일을 제때에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새로운 헌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 정당 간에, 또 동·서독 간에 합의를 이루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의 국내 사정으로 2+4조약 체결도 장담하기 어려웠다.⁸⁷

콜 총리는 통일 전까지만 해도 아데나워, 브란트와 슈미트 총리 등 전임 총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통일의 기회를 제때에 잡아 특유의 독심과 순발력으로 통일이란 큰 업적을 이루어 ‘독일통일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있다. 국가 지도자가 통일의 기회를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성공으로 이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제2절 한반도의 통일 환경: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

독일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의 해제를 비롯한 ‘대외적인 문제’ 해결에 4개국의 동기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분단 원인은 독일과는 달라 우리의 통일에는 주변국의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의 통일 환경이 독일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고려하면, 남북한이 합의로 통일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 질서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밀

.....

⁸⁶ 제146조에 의한 통일은 동·서독이 총선을 실시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제헌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방안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⁸⁷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으로 나누어졌고, 독일통일에 호의적이었던 고르바초프도 퇴진했다. 이로 인해 ‘통일조약’ 협상을 담당했던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통일을 망설였거나 주저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통일의 기회를 놓쳤을 것”이라고 했다. Wolfgang Schäuble,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München: Knauer, 1993, p.286.



한 통일외교 추진이 요구된다.

우리가 통일외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통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1) 북한 핵문제 (2)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3) 중국의 힘의 부상을 들 수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주요 정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⁸⁸

첫째, 북한의 핵문제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핵능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⁸⁹ 북한은 2016년 기준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⁹⁰ 2020년에는 수십 개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실험을 하며 핵공격 능력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6자회담 등을 통해 노력해 왔으나 북한은 이처럼 핵능력 고도화와 함께 핵무기 수를 늘려왔다. 중국의 한반도 주요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자세는 한반도의 비핵화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다.

.....

⁸⁸ 손선홍, “통일외교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한일협력』(한일협력위원회, 2016 여름호).

⁸⁹ 북한은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후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핵탄두들을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고 핵무기 병기화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2016.9.10).

⁹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과 관련, (1) 지그프리드 해커 미 스탠포드대 교수는 “북한이 2015년에 핵폭탄 12개 이상을 2016년에는 20개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The Wall Street Journal』(April 23, 2015). (2)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016 세계 군사균형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2016.2.19자). 또한 (3)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6.6.14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8개월 간 보유 핵무기를 3-5개 늘려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2016.6.16자).

김정은은 2016년 5월 6-9일 열린 조선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며, ‘핵·경제 병진노선이 전략노선’임을 강조했다. 이 내용을 헌법에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포함시켰다.⁹¹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분명히 한 것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북한 김정은 정권은 3대 세습에 탄압과 공포 정치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재정권으로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된 폐쇄사회이다. 1989년 가을 동독주민들은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에리히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을 몰아내고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 평화혁명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로 정보개방이나 주민들이 단체로 행동할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평화혁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셋째,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통일의 사례가 보여주듯 분단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는 통일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폐쇄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한반도 정세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강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4강대국의 이해와 안보 문제가 교차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되는 곳이다.

중국은 통일된 한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게 되어 한반도통일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통일이 평화적, 자주적 비핵화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가

⁹¹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는 2016년 5월 6-9일 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북한은 이미 2012년 4월에 개정된 개정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는데,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당규약에도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누구도 이를 변경하기 어렵게 했다.



치가 높아지고 있어 완충지역으로 북한이 계속 존재하는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도광양희(韜光養晦,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힘을 기른다)의 외교정책에서 2003년 들어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일어선다)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중화 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⁹²의 신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부상하면서 팽창정책을 추진하자 동아시아지역이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떠올랐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Pivot to Asia)하는 재균형(Rebalancing)정책⁹³을 추진하며 중국의 팽창정책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재균형정책은 팽창하는 중국에 맞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해양패권을 유지하는 문제이다.⁹⁴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보다는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다. 두 나라는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⁹⁵.

일본은 한편으로는 보통국가화를 내세우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항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주요 국가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⁹²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전략이다. 즉,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⁹³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지역이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외교·안보정책의 초점을 이 지역으로 전환했다. 둘째, 미국의 긴축재정에 따라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수형,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한반도 시사점', 『KINU 통일』(2015년 여름).

⁹⁴ 김정섭, 『외교 상상력』(서울: MID, 2016), p.244.

⁹⁵ 한국과 미국은 2016년 7월 8일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다섯째, 한반도 주변이나 동아시아에는 이 지역의 통합을 주도해 나가고, 장래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 줄 강한 연대를 가진 다자 경제기구나 안보기구가 없다는 점이다.⁹⁶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는 유럽의 경제발전과 통합을, NATO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대립관계에 있던 유럽 내 동·서 진영 간에 대화의 장을 제공하면서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기여했다. EC와 NATO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통일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는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유지하며 한반도통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줄 다자 경제나 안보협의체는 아직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통일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통일 외교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⁹⁷

첫째,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가져야 하며 통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전과 함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있어야 통일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통일도 이룰 수가 있다.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 구축도 중요한 요소다. 역량이 부족하면 설령 통일의 기회가 와도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여론을 한데 모아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때 잡으며, 주변국

⁹⁶ 동아시아에는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의 기구가 있으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안 중심이며 EC와 NATO와 비교하여 기능면이나 결속력이 크게 떨어진다.

⁹⁷ 손선홍, “통일외교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한일협력』(한일협력위원회, 2016년 여름호).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는 능력이 요구된다.

둘째, 좀 더 큰 틀의 ‘통일 청사진’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치·안보 질서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특히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의 동북 3성, 극동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발전은 물론⁹⁸ 동아시아 전 지역의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가져올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통일 청사진에 담아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며 지지를 얻어야 한다.

셋째,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통일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빌리 브란트의 핵심 참모였던 에곤 바는 “공산정권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라며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해 동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공포와 탄압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내 장마당 수(2015년 406개)가 늘어나고⁹⁹ 휴대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가 바라는 수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에도 5차 핵실험을 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완전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외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고, 자유세계의 소식과 드라마와 노래 등이 담긴 USB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무

.....
⁹⁸ 한반도통일로 동북 3성의 GDP는 최소 1조 위안이 증가하며(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일본은 246억 달러 증가와 새 일자리 21만 개 창출(교지 후카오 히토쓰바시대 교수), 러시아는 유라시아 철도와 천연가스 송유관이 한반도와 연결되면 연간 50억 달러의 이익(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센터연구원)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 편익비용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2014.

⁹⁹ 미국 존스 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커티스 멜번 연구원은 북한의 장마당 수가 2010년 200여 개에서 2015년 406개로 늘어났다고 했다. 『조선일보』(2016.9.21.자).

기 구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또한 2016년 9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을 통해서도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여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 구축 노력도 필요하다.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두어 북한과의 교류가 재개 되면, 우선은 유아와 산모 지원, 이산가족의 상봉 등 인도적인 분야를 비롯하여 환경 분야와 산림지원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어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의 문제이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고려할 때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지난 1953년 이래 한·미 동맹을 유지해오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해 오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의식해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우리 혼자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자칫 통일을 그르칠 우려도 있다. 독일이 주변 강대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과 정책을 공조하며 긴밀히 협의한 결과다.

다섯째, 통일된 한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할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외교활동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대한반도 3대 정책은 (1) 한반도의 비핵화, (2)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3) 남북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아직은 남북이 공존하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중점



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을 완충지역으로 삼아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서도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대중국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남·북한과 개별적으로 교류하는 것보다 통일된 한국과의 교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국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공포와 탄압 정치로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가까운 시일에 중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적지만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경제, 관광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중국과 지금보다 더 폭넓은 협력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북한주민들의 중국으로의 탈출에 대비한 이주민 대책도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통일로 인해 중국은 안보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의 주둔 범위 등 중국이 우려하는 내용에 관해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러시아 외교도 중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며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통일에 대해 중국보다는 유연한 입장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통일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기 쉽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 측의 이의 제기로 며칠 늦어진 사례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¹⁰⁰

.....
¹⁰⁰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유엔안보리 전체회의가 2016년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측의 요구로 4일 늦어진 3월 2일 채택되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러시아를 소홀히 한 반발로 여겨진다.

여섯째, 통일과정에서 한반도가 안정을 유지하며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는 외교도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동독군이 소련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무력 충돌 없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1백만 명이 넘는 군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은 다르다. 통일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할 만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일곱째, 국제사회가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협의·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직전에 비밀리에 미국에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⁰¹ 중국도 소위 ‘왕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다.¹⁰²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는 자체를 막기 어렵지만 한국의 참여 없이 한반도에 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한국이 반드시 참가하여 함께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독일이 추진한 통일외교에 대해 서방 측은 물론 동유럽 국가들도 적극 지지했다. 독일이 1949년 이래 추진해 온 ‘친서방정책’과 ‘신동방정책’¹⁰³을 통해 신뢰를 얻었고, 통일 이후 독일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에 대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통일한국이 미국에 가깝고, 중

¹⁰¹ 《The Wall Street Journal》(February 21, 2016)지가 보도했다.

¹⁰²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16년 2월 17일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조선일보』(2016.2.18.)자.

¹⁰³ 서독은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1949-1963년 재임)가 추진한 ‘친서방정책’으로 서방 측의 신뢰를 얻었고, 빌리 브란트 총리(1969-1974년 재임)의 ‘신동방정책’으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며 신뢰를 얻었다.



국에 적대적이며, 일본에 위협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시켜, 이들 국가와 협력하며 공존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이 국제평화 유지, 환경보호와 재난구조 등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믿음도 주어야 한다.

아홉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가급적 많이 길러야 한다. 독일통일에 콜 총리와 겐서 외무장관의 외교력이 큰 기여를 했다. 아무리 좋은 통일외교정책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통일을 이루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인재는 단시일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제4절 맺는 말

한반도의 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북·중 유대관계,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부재,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등의 상황에서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여건은 좋지 않았다. 동독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소련은 동독이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소련,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에 반대했고, 대외적인 문제의 해결 또한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평화혁명을 통일의 계기로 삼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치밀한 통일외교로 주변 강대국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통일을 이루는 것을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통일 환경이 어렵지만 통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야 통일외교를 추진할 수 있으며, 또 주변국들의 반대를 극복

하여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이들 국가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 한반도통일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들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변국들이 통일에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6·25전쟁의 폐허와 분단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었다. 또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하여 국제평화 유지와 대외원조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나라가 되었다. 통일한국은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를 확고히 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국제평화 유지, 환경보호, 재난구조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과제 해결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부록〉 독일통일 주요 일지

1989년

- 5.7 동독 지방 선거에서 투표율 98.77%에 투표자의 98.85%가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독주민들은 선거 조작을 제기하며 항의 시위를 함.
- 6.27 헝가리는 1989년 5월 2일부터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에 설치한 감시초소와 철조망 철거 작업을 시작하여 6월 27일 호른 외무장관은 오스트리아의 목 외무장관과 함께 국경선 철조망 절단 행사를 가짐.
- 7~9월 동독주민들은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주재 서독대사관에 몰려들며 간헐적으로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함.
- 8.25 헬무트 콜 총리는 헝가리 네메트 총리와 호른 외무장관을 독일 본으로 초청하여 헝가리에 체류 중인 동독 이탈주민들의 송환문제를 협의함. 헝가리 측은 동독 이탈주민들이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함.
- 9.4 동독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 약 1,200명의 시민들이 모여 기도 모임을 가진 후 국외여행 자유화 등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가두시위를 함. 이후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됨.
- 9.10 헝가리정부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함.
- 9.27~28 겐서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동독, 소련, 폴란드 및 체코 외무장관들을 접촉하여 체코와 폴란드 주재 서독대사관 내 동독 이탈주민의 송환문제를 협의.

- 9.30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에게 체코와 폴란드 주재 서독대사관 내 주민들을 서독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통고함. 겐서 외무장관과 자이터스 총리실 장관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을 방문하여 이곳에 머물고 있던 약 5,500명의 동독 이탈주민들에게 서독으로 갈수 있게 되었다고 알림. 이들은 동독을 경유하여 10.1 서독에 도착함. 이어 대사관에 다시 진입한 수천 명의 동독 이탈주민들도 서독으로 넘어감.
- 10.7 동독 수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열림. 이 행사에 참석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나, 호네커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 이날 동독 내 여러 도시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40주년 기념일은 퇴색됨.
- 10.9 라이프치히의 월요 시위에 최대 인원인 약 7만 5,000명이 참가하여 개혁을 촉구함.
- 10.18 계속되는 개혁 요구 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호네커 서기장이 퇴진하고, 후임으로 당 정치국원인 에곤 크렌츠가 선출됨.
- 10.24 크렌츠 서기장은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
- 11.4 야당 인사와 예술인들이 주도한 동베를린 집회에 동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70만 명이 참여하여 조속한 개혁을 촉구.
- 11.7 동독주민들의 계속되는 시위로 빌리 슈토프 내각이 총 사퇴함.
- 11.8 드레스덴시 공산당 제1서기인 한스 모르로우가 총리로 취임함.
- 11.9 동독정부, 국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전격 발표함. 이 조치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게 됨.
- 11.18 베를린 장벽 붕괴 후의 유럽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EC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됨(파리).
- 11.28 콜 총리, 연방 하원에서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을 발표함.



- 12.1 동독 인민의회는 헌법 제1조의 ‘노동계급과 마르크스-레닌당의 지도 아래’라는 공산당 권력 독점 문구를 삭제함.
- 12.3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의 해체를 결정함. 크렌츠는 서기장직에서 사퇴함.
- 12.3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함(몰타).
- 12.7 동독에서 첫 원탁회의(Runder Tisch)가 열림. 원탁회의는 국가안전부 해체와 첫 자유총선 실시 등에 기여함.
- 12.19~20 콜 총리는 모르로우 총리와 드레스덴에서 정상회담을 함.
- 12.22 콜 총리와 모르로우 총리는 브란덴부르크 문 개방 행사를 가짐.

1990년

- 1.30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모르로우 동독 총리와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독일통일 가능성을 언급함.
- 2.1 모르로우 총리, 동·서독이 군사 동맹기구에서 각각 탈퇴하여 중립화된 연방국으로 통일하자라는 4단계 통일 방안을 제의함. 콜 총리는 이 제의를 거부함.
- 2.7 서독 각의, 동독과 통화와 경제를 통합하기로 의결하고, 동독에 이와 관련한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함. 또한 ‘독일통일 각료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설치함.
- 2.10 콜 총리,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정상회담.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 문제는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모스크바).
- 2.13~14 콜 총리와 동독 모르로우 총리는 통화와 경제 통합 준비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설치에 합의함(본).

- 2.13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계기에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협의할 2+4회담 기구가 구성됨(캐나다 오타와).
- 2.24~25 콜 총리,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부시 대통령은 독일통일 지지를 재차 확인함(캠프 데이비드).
- 3.18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투표율 93.38%)에서 동독 기민당이 주축이 된 ‘독일동맹’이 48.05%의 지지를 얻어 승리함. 이로써 독일통일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
- 4.12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기민당 대표가 총리로 선출됨.
- 4.19 드 메지에르 총리, 총리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 추진과 통일된 독일은 NATO에 잔류해야 한다는 요지의 통일 방안을 발표함.
- 4.24 콜 총리와 드 메지에르 총리는 통화·경제 동맹 조약을 체결하여 7월 1일자로 출범하기로 합의함(본).
- 4.25 동·서독, 통화와 경제 동맹 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회담 개최함.
- 5.5 제1차 2+4회담 개최(본).
- 5.17 콜 총리,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워싱턴).
- 5.18 바이겔 재무장관과 롬베르크 동독 재무장관은 통화·경제와 사회 동맹 조약에 서명함(본).
- 5.30~6.3 NATO 외무장관 회담(턴베리)
- 6.15 동·서독정부, 동독 내 미해결 재산 처리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6.22 제2차 2+4회담 개최(동베를린).
- 7.1 통화·경제와 사회동맹 조약이 발효되어 독일 마르크화(DM)가 전 독일에 단일 통화로 통용됨.
- 7.5~6 NATO 특별 정상회담(런던).
- 7.6 동·서독, 제1차 통일조약 협상을 시작함(동베를린).



- 7.15~16 콜 총리,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통일에 따른 외교·안보 및 군사 문제 타결(모스크바와 캡카스)
- 7.17 제3차 2+4회담 개최(파리). 오데르-나이세 강 선을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으로 합의함.
- 8.16~17 독·소 외무장관 회담(모스크바)
- 8.23 동독 인민의회, 10월 3일을 기해 서독에 가입하기로 의결함.
- 8.31 쇼이블레 내무장관과 크라우제 동독 정무차관, 통일조약에 서명함 (동베를린).
- 9.12 6개국 외무장관, 2+4조약에 서명함(모스크바).
- 10.3 0시를 기해 독일은 통일됨.
- 10.4 통일 이후 첫 연방 하원 회의가 개최됨.
- 11.9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대통령, 독·소 선린우호협력 조약에 서명함(본).
- 11.14 겐서 외무장관, 폴란드 외무장관과 독·폴 국경조약에 서명함(바르샤바).
- 11.19~21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의 개최(파리)
- 12.2 통일 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 독일연방 하원 총선에서 기민/기사당이 승리함.
- 12.20 제12대 연방 하원이 구성됨.

1991년

- 1.17 헬무트 콜, 연방 총리로 선출됨(네 번째).
- 3.4 소련, 2+4조약 및 독·소 선린 우호협력조약을 비준함.
- 3.15 소련, 2+4조약 비준서를 독일정부에 기탁하여 2+4조약이 정식 발효됨.
- 6.17 콜 총리와 비레키 폴란드 총리, 독·폴 선린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함(본).
- 6.20 연방 하원, 베를린을 의회와 연방 정부의 소재지로 결정함.

참고 문헌

<국내 문헌>

(단행본)

-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통일부, 2009).
- 김영희, 『베를린 장벽의 서사: 독일통일을 다시 본다』 (서울: 창비, 2016).
- 김정섭, 『외교 상상력』 (서울: MID, 2016).
-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이종길·양은미 옮김), 『두 개의 한국』 (서울: 길산, 2014).
- 서병철, 『독일통일과 외교의 역할』 『통일의 저력』 (서울: 백산문화, 1999).
-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 독일통일에서 찾는 한반도통일의 길』 (서울: 푸른 길, 2016).
-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5).
- 이태환·정진영·김태환·이면우, 『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 (세종연구소, 2016).
- 임혁백·이은정, 『한반도는 통일독일이 될 수 있을까?』 (서울: 송정문화사, 2010).
- 정성장·양운철·백학순·박종철·오양열, 『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 (세종연구소, 2016).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독일통일을 함께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 (서울: 늘품플러스, 2014).
- 필립 젤리코·콘돌리자 라이스(김태현·유복근 옮김),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치국경세술 연구』 (서울: 서울모음박스, 2008).

(논문)

- 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 글로벌 리더 통일한국', 2014.
- 손선홍, '독일통일에 따른 대외관계 처리 내용: 피난민 송환교섭, 2+4회담 및 조약 처리', 1995.
- 손선홍, '호네커의 퇴진과 베를린 장벽 개방' 『외교』 제12호(한국외교협회, 1989.12)
- 손선홍,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외교』 제115호 (한국외교협회, 2015.10).
- 손선홍, '통일외교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한일협력』 (한일협력위원회, 2016년 여름호).

<외국 문헌>

(조약·협정집)

- Munch, Ingo von(Hrsg.),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land*, Stuttgart: Kromer, 1976.
-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im Jahre 1990: Eine Dokumentation*, Bonn,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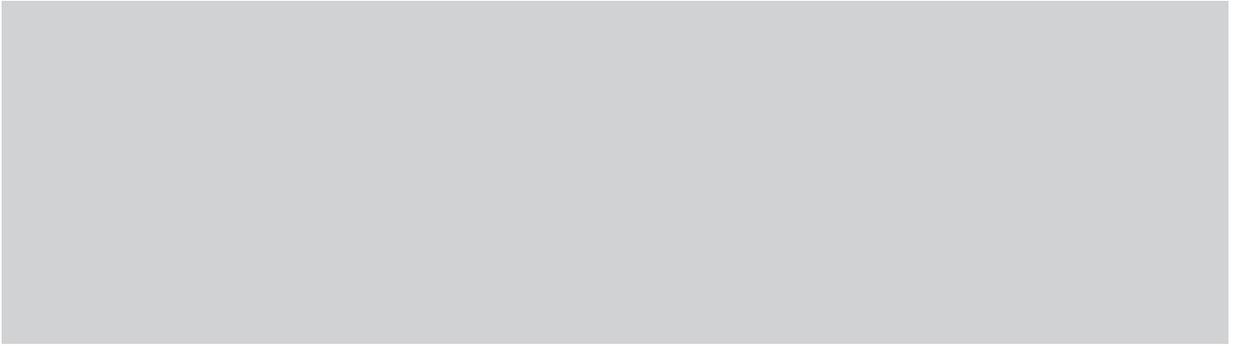
(단행본)

- Bahr, Egon, *Zu meiner Zeit*, Karl Blessing Verlag: München, 1996.
- Brandt, Willy, *Erinnerungen*, Frankfurt am Main: Propyläen, 1989.
- Genscher, Hans-Dietrich, *Erinnerungen*, Berlin: Siedler, 1995.
- Kiessler, Richard/Elbe, Frank,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 Kohl, Helmut, *Ich wollte Deutsche Einheit*, Berlin: Propyläen, 1996.
- Kohl, Helmut, *Erinnerungen 1982-1990*, München, Droemer, 2005.
- Kohl, Helmut, *Erinnerungen 1990-1994*, München, Droemer, 2007.
- Korte, Karl-Rudolf,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M: Campus, 1994.
- Lehmann, Hans Georg, *Deutschland-Chronik 1945 bis 1995*, Bonn, 1995.
- Schäu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München: Knauer, 1993.
- Telt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Siedler, 1991.
- Waigel, Theo /Schell, Manfred,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München: Ed. ferenczy bei Bruckmann, 1994.

〈신문 및 주간지〉

- 『국민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The Wall Street Journal』
- 『DER SPIEGEL』

외교 분야Ⅱ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2+4회담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1989년 11월 9일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적 혁명으로 인해 독일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다시 긴급하게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 후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정은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된 독일이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는 아주 특수한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2+4 회담이 결과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고 통일된 독일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다.

1989-1990년 당시 급속히 변하는 국제정치의 환경이 독일문제의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일 당시 국제정치적 조건이 2016년의 상황과 유사했다면 독일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냉전이 종료된 후에 그 여파로 인해 국제정치의 환경이 여러모로 변했으므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1990년의 국제정치적 환경은 1989년 가을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적 시민혁명이 독일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독일에게 우호적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는 헬무트 콜 수상이 이끄는 서독의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만일 1990년에 부시 행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콜 수상이 이끄는 서독 연방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그만큼 협상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독에서 시민혁명을 통한 변화가 시작된 후 독일 내부에서 통일문제가 가시화되었을 때부터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서방 동맹에 속한 통일독일을 구상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반면에 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다.

독일이 이웃국가들과 동맹 파트너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질 통일된 독일, 즉 독일연방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서구 세계의 동맹국으로 남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유럽공동체의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었다. 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진행된 회담이 바로 2+4회담이었다. 이 회담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표 2-1) 2+4회담의 일정과 논의 주제

회차	일자	장소	주요 논의 주제
예비	1990년 2월 14일	오타와	회담개최 합의, 유럽안보협력기구 정상회담을 최후에 개최
1차	1990년 5월 5일	본	회담일정, 폴란드의 참여 문제, 현 국경선 인정 원칙
2차	1990년 6월 22일	동베를린	외국군 철수 문제, 독일의 양 동맹 가입 문제
3차	1990년 7월 17일	파리	국경선 확정,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확정
4차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	소련군 철수 비용, 최종 합의서 채택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정책적인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1990년 2월 2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간의 회담을 통해서였다. 물론 고르바초프가 처음으로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언급했을 때에는 2+4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4대 승전연합국들 간의 회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2월 초 두 주 동안 미국이 외교를 통해, 특히 베이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고 먼저 4대 승전연합국을 서독이 설득하여 독일문제를 2+4의 틀에서 논의하

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 후에 미국은 1990년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개혁정부를 이 회담에 참가시키고자 하였다.¹ 그 이후 동독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다. 2+4회담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미국이 회담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논의의 중심을 잡으면서 서독의 입장을 분명히 지원했다는 것이 정책문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 과정에서, 적어도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독의 절대적인 우방이었던 미국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소련이 그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미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이 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문서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특히 서독정부는 당시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을 미끼로 이 회담에서 서독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실 독일통일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1989년 11월과 12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변화를 기대하는 동독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열망이 사회변혁의 역동성을 결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서독의 정치와 국제정치가 동독의 정치체제의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의 상황을 통일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었다. 특히 2+4회담 과정에서 서독 연방정부는 무역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성향과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하면서 국제정치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통일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2+4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서독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이 완전

.....
¹ 미국의 '4+2' 협상에 대한 고려사항들-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보고(문서번호 11).

히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콜 수상과 쟈셔 외무장관의 외교정치적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4회담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회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회고록이 이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외무부의 관료들이 작성한 정책문서들은 외교의 큰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시기별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서독 내의 평가와 대처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의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2+4회담을 정리하는 작업은 회고록들을 근거로 2+4회담을 분석·정리한 연구들과 접근하는 방식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이 회담의 진행과정에 대한 연대기적 접근은 이미 앞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990년 5월 이후 서독과 동독의 외무부가 작성한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2+4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각국의 독일통일을 보는 시각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와 국경문제에 관한 논의 그리고 통일독일의 주권 회복 시기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 그리고 협상의 기술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다.²

.....

² 2+4회담의 진행과정과 회담의 협상에 대한 연대기적 분석은 1장을 참조.

통일로 가는 외교적 협상의 길목에서

동서독 간의 통일 논의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동독에서 시민들이 평화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을 때부터 서독의 정부는 이미 이웃 국가들이 독일의 통일과 관련하여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1989년 11월 11일, 즉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들이 지난 후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당시 서독 연방정부의 수상청장이었던 루돌프 자이터스가 헬무트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간에도 독일통일에 대한 입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 그는 이 문서에서 미국이 가장 명확한 태도로 독일통일을 지지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였다. 소련의 경우는 독일통일이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한다고 자이터스 청장은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통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모든 문제를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서독의 외교가 거둔 성과였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물론 콜 수상과 겐서 외무장관이었다. 그러나 2+4회담의 실무적인 협상은 외무부 국장들에 의해

³ 독일문제 및 동독 내 상황 전개에 대한 3개 서방 전승국과 소련의 입장(문서번호 9).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협상능력이 통일독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정책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제1절 독일문제를 둘러싼 외교 협상의 방향 설정

독일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1990년 2월 초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4대 승전연합국들이 독일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을 언급한 이후 그런 회의를 위한 외교적 틀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당시 서독은 독일통일의 국제정치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틀로 헬싱키협정과 유럽안보협력기구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1990년 2월 9일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루푸스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이미 4대 승전연합국과 2개의 독일국가가 참가하는 4+2 형식의 협상을 통해 국제정치적인 틀에서 독일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이야기하는 4대 승전국만이 참가하여 독일문제를 논의하려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협상이었으며, 미국은 나아가 독일통일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비공산주의적인 정권을 동독의 대표로 이 협상에 참가시키기 위해 협상 자체를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될 동독의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⁴ 서독정부가 여전히 독일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거부하고, 독일문제를 헬싱키협정의 틀에서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유럽안보협력기구를 통

.....

⁴ 당시 동독의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우가 통일된 독일이 중립국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의견이 소련에 의해, 특히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한스 모드로우가 이끄는 동독정부를 협상에 참여시킨다면 소련 쪽의 의견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독 내에서 자유총선거를 실시할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동독 내에서 화폐통합을 선언한 헬무트 콜 수상的人气가 아주 높았던 상황에서 미국이 한스 모드로우 정부보다는 헬무트 콜의 영향력이 강화될 새로운 정부를 협상에 참여시키고자 한 것은 외교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해서 독일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이 기구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루푸스 대사는 미국의 이런 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유럽에서 미국의 존재감과 역할 때문에 4+2협상 형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⁵

미국은 이미 1989년 12월 베이커 국무장관이 서베를린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독일통일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를 위해 독일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의 틀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독일과 승전연합국 간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루푸스 대사의 전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이미 1990년 2월에 독일 문제에 대한 외교 협상은 최종적으로 독일통일에 동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화폐통합과 같은 독일의 국내적인 사안은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정부 내에서 독일문제에 관한 이런 입장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의 경우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유럽의 새로운 질서에 소련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미국 외무부의 실무자 차원에서는 통일된 독일이 일단 나토에서 탈퇴하고 독일영토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되었다고 한다.⁶ 그러나 베

.....

⁵ 1990년 2월에만 해도 '4+2' 형식이 언급되었던 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2+4' 형식으로 전환되었는지 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서독 외무부의 겐서 외무장관과 장관실의 엘베 국장은 이 시기에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두 개의 독일이 4대 승전연합국보다 앞서 언급되어야만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다고 하지만 루푸스 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무부는 여전히 '4+2' 형식의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4+2' 협상에 대한 고려사항들-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보고 참고(문서번호 11).

⁶ 미국 외무부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이러한 방안이 베이커 국무장관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다. Zelikow, Philip D./Condoleezza Rice(1995).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Harvard University Press.), p.166.

이커 장관을 중심으로 독일을 포함하는 전승 4개국 간의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의 기본입장이 정해졌다.

베이커 장관은 1990년 2월 8일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로 출발하기 전에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한 서독의 지지를 구하려고 하였다. 그를 위해 베이커 장관은 서독과 일종의 거래를 구상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신속한 독일통일을 동의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서독이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다는 것이었다.⁷ 1990년 2월 2일 겐서 서독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이미 미국과 서독 외무부의 실무자 차원에서, 특히 서독 외무부 장관실의 프랑크 엘베 국장과 미국 외무부의 로버트 조엘릭 차관보와 데니스 로스 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에 도착한 겐서 장관이 즉시 미국의 제안을 동의할 수 있었다고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다.⁸ 위에 언급한 루푸스 대사가 1990년 2월 9일에 본부로 보낸 보고서에서 여전히 서독정부가 헬싱키협상의 틀에서 독일문제를 다루기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 서독 외무부 내에서도 모든 정보가 공유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통일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서독 간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지만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안보·군사 정책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독의 겐서 장관은 이 지역에 연방군이나 나토군의 주둔을 고집하는 것이 소련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래 유럽의 군사안보 문제가 소련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독일의 병력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문제까지 논의할 의사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미국도 독일문제에

⁷ Zelikow, Philip D./Condoleezza Rice(1995).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Harvard University Press.), p.173.

⁸ Genscher, Hans-Dietrich: *Erinnerungen*. Berlin(Siedler Verlag) 1995, pp.716-717.



대한 국제적인 협상과정에서 소련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단 동독지역의 군사안보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990년 2월 초에 미국과 서독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2월 10일에 베이커가 헬무트 콜에게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간에 열린 모스크바 회담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⁹ 베이커는 정상회담에서 독일문제가 중요한 논제였다고 전하면서, 유럽이 불안해지고 국경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독일이 유럽 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추구할 위험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관망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현재 소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베이커는 소련의 이러한 입장과 상관없이 독일이 자신의 길을 정해야 하며 통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독일의 내적 문제는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작업은 동독의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소련이 생각하는 것처럼 4대 승전연합국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2+4회담의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하였으며, 고르바초프가 이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려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콜 수상과 겐서 외무장관은 1990년 2월 10일과 11일 양일 간의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고르바초프가 더 이상 원칙적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회담에서 1990년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릴 공동회담에서 독일통일의 대외적인 측면만을 다루게 될 2+4회담에 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¹⁰ 원래 오타와에서는 나

⁹ 외교 분야 I, 문서번호 155.

¹⁰ 외교 분야 I, 문서번호 156.

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군축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회의에서 “서독과 동독의 외무장관들이 프랑스, 영국, 소련 그리고 미국의 외무장관들과 만나 우방국가와의 안보관계를 포함하여 독일통일의 대외적인 측면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¹¹

결과적으로 볼 때 1990년 2월 초에 미국과 서독정부는 밀접한 공동보조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일통일을 위한 대외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후에 이미 독일통일은 그것의 실현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통일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던 것이다.

제2절 회담을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준비회의

1990년 2월 13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2+4회담을 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1990년 5월 5일 서독의 수도 본에서 제1차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협상에 참가할 당사자들이 협상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새로 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미국과 서독은 가능한 한 회담의 시작을 늦추려고 한 반면에, 동독의 한스 모드로우 총리와 소련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오타와회담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시작되기를 원하였다. 미국과 서독은 동독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정부가 구성된 후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시작 시기를 늦추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콜 수상이 지원하던 ‘독일을 위한 연대’가 승리하고 기민당 소속 로타 드 메지에르가 새로운 정부의

.....
¹¹ 연방 외무부장관 겐셔와 3개국 서방 측 외무장관들 및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오타와 공동회담(외교 분야 I, 문서번호 159), 오타와에서 열린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 회의-6차 성명(외교 분야 I, 문서번호 160).



수상이 된 이후 독일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미 동독과 서독정부는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아주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었다. 동독의 정부기관과 각 정당에도 이미 서독으로부터 자문관이 파견되어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2+4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동독은 독자적인 국가로 존재하기를 단계적으로 포기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동독을 더 이상 주체적인 협상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고 직접 서독과 협상하려고 하였다. 그런 상황을 오래 끄는 것은 불가능했다.

2+4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외무부 정치국장급 회의를 통해 준비회담을 진행했었다. 1990년 2월 28일에 런던에서 열린 4개국 외무부 국장급 회의에서 2+4회담의 일정이 조율되고 논의될 주제를 정하였다.¹² 3월 14일에는 2+4회담의 제1차 국장급회의가 본에서 개최되었고, 4월 30일에는 동베를린에서 2차 국장급회의가 열렸다. 이 기간 동안 서독과 동독의 외무부장관과 국장급 관료들은 지속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파트너들과 의견을 조율한 것을 외교I의 문서들을 통해 볼 수 있다.¹³

이런 회의의 목적은 주로 2+4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서독은 2+4회담에서는 통일된 독일에게 완전한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만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 소련은 가능하면 광범위한 문제가 이 회담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보았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독일통일이 헬무트 콜 수상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해진 이후부터는 미국과 서독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여러 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치면서 2+4회담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다. 그것은 국경문제, 독일통일 이후 유럽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¹² Zelikow, Philip D./Condoleezza Rice(1995).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Harvard University Press.), pp.223-224.

¹³ 외교 분야 I, 문서번호 155-217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된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들, 베를린문제, 독일에 대한 4대 승전연합국의 권한, 국제법적 규정의 해지 등 4개 분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 주제들은 1990년 5월 5일 서독의 수도 본에서 2+4회담의 1차 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위한 주제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위의 네 가지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문서번호 1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독 외무부는 소련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노역을 강제당한 사람들을 위한 배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미해결된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 문제도 2+4회담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¹⁴

제3절 급변하는 소련의 내적 상황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대응

2+4회담을 시작하기로 2월에 오타와에서 합의한 후 5월 초 본에서 1차 회의가 열릴 때까지 서독과 동독 외무부에서 작성된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급변하던 소련 내부의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서방국가들의 입장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전제된다. 2+4회담이 사실상 6자 간의 회담이 아니라 서독과 미국이 한 편에 서 있고 소련이 다른 한 편에 서 있는 3자 간의 회담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독과 소련 간의 협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사실은 1990년 2월 10일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헬무트 콜에게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준 이후 소련 내부에서 발생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소련의 직접적인 협상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

.....
¹⁴ 소련 측의 강제노역자 전후배상요구(문서번호 18).



고 개별적인 공화국들의 분리운동이 가시화되면서 공산당 내부의 계파갈등도 첨예화되었다. 그 결과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최대 위기에 빠졌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의 총서기와 국가수반으로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혁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1990년 초,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에서 지켜온 헤게모니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동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이미 서방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며 바르샤바조약기구는 더 이상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발틱해 연안지역에서 시작된 분리주의 움직임이었다. 1990년 3월 11일에 발틱 연안의 리투아니아가 민족독립을 선언하고 소련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자 소련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제재를 통해 이를 막고자 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될 수 있는 위기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국가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된 3월 15일에 연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방협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실질적인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소련의 위상이 많이 손실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가 소련 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군부 보수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외교·안보·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타협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한편 소련의 위기에 대처한 방식을 두고 서방 국가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서독, 특히 겐서 외무장관은 고르바초프의 도움이 없이는 독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소련을 도와주어서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다시 강화할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그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서독의 콜 수상과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의 사

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1990년 4월 26일에 리투아니아의 란스베르기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독립선언을 포기하기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구 유럽의 국가들이 고르바초프를 돕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데 반해 미국 행정부는 고르바초프 지도부가 없어도 독일통일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소련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회담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시 행정부는 협상 파트너로서 가능한 한 고르바초프가 건재하기를 바라면서도 그를 위해 안보정책에서 양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소련에 대한 양국의 입장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미국과 서독은 독일통일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4회담의 초기에는 그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서독 외교문서를 통해 보는 2+4회담의 주요 논제

이 장에서는 서독과 동독 외무부가 작성한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 서독과 동독 내부에서 2+4회담을 준비한 것을 살펴볼 것이다.¹⁵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 4월 말에 2+4회담의 주요 의제가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나 회담의 진행과정에서 협상파트너의 입장에 관한 분석은 지속되었고 그것이 다시 협상전략에 반영되었다.

제1절 회담 전기 소련의 입장과 관련된 서독 외무부의 분석과 판단

서독의 관점에서 보면 2+4회담에서 소련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 1990년 5월까지도 소련은 여전히 통일독일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중립국가로서 동시에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의 회원이 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동서독 간에 체결될 경제, 화폐 및 사회공동체 창설을 위한 조약의 실무안을 먼저 받아 본 소련이 1990년 4월 28일 문서에서는 이 조약이 전승국의 권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하면서 동서독이 체결한 조약이 전승국이 취했던 조치에

¹⁵ 2+4회담의 진행과정과 회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 책의 I장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활동과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을 참조.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다.¹⁶

그러나 통일독일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소련의 입장에 대한 동독과 서독 정부 내부의 평가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 4월 30일에는 새로운 동독정부의 드 메지에르 총리가 소련의 통신사 타스와 인터뷰를 통해 독일을 중립국으로 만들려는 소련의 정책이 새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진영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반면에 그의 동료인 외무장관 마쿠스 메켈은 서독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에 통합된 통일독일의 연방군을 그냥 쉽게 창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소련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동독 개혁정부의 군축국방장관이었던 에펠만은 통일독일이 동시에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제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서독 외무부에서 나토문제를 담당하던 201과에서는 분석하였다.¹⁷

1990년 5월 5일 서독 본(Bonn)에서 개최된 2+4회담의 1차 회의에서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독일문제는 독일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소련이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에 반대한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독일통일의 내적, 외적 절차가 일치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¹⁸ 동시에 그는 통일된 독일의 의회구성을 위해서 그리고 독일영토에 주둔한 외국군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정한 과도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만일 소련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소련이 압력을 받게 될 경우

.....

¹⁶ 경제·화폐·사회 공동체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실무안에 대한 소련의 입장 표명-동독의 비공식 문건(문서번호 13). 이 결정은 특히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에 동독지역에서 토지 소유권이 박탈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내려진 소유권에 대한 선반환 후보상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었다.

¹⁷ 독일의 안전보장정책적 상황에 대한 동독정부의 발언-서독 외무부 201과 현황보고(문서번호 17).

¹⁸ 1990년 5월 5일 본에서 열린 2+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연설(문서번호 22).



그것은 소련의 정치적 융통성에 많은 제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협박 섞인 연설을 하였다. 세바르드나제의 의견, 특히 독일통일의 내적 외적 측면을 분리해서 진행하자는 의견은 서독 내에서도 상이한 평가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헬무트 콜 수상과 겐서 외무장관도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랐다.¹⁹ 결과적으로 2+4회담의 1차 회의에서는 회담의 차후 일정과 7월에 파리에서 열릴 3차 회의에는 폴란드를 참여시키는 것과, 통일독일의 완전한 자결권 인정, 오테르-나이세 국경인정 원칙 등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지만, 통일독일의 동맹소속 문제는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5월 초에 본에서 열린 서독과 소련 외무장관 간의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는 문서에서 서독 외무부의 회익(Höynck) 실장은 당시 주변 동맹국들에 의한 국제조약적인 차원에서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조약 이후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23조 2항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소련 측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식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답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소련의 군사적 잠재력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²⁰

그러나 1990년 5월 5일에 2+4회담의 1차 외무장관회의가 열린 이후에도 소련 내에서 통일독일 문제를 보는 입장이 여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서독 외무부 소련담당 과장 노이베르트는 분석하고 있다.²¹ 5월 23일에 작

¹⁹ 세바르드나제는 이미 5월 4일에 콜 수장과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만나서 소련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었다.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회담-외무부 21 분실의 보고(문서번호 21)에서 저녁 만찬 중에 열린 소련과 서독 외무장관 간의 대화를 읽을 수 있다. 이 대화에서 세바르드나제는 소련정부가 독일이 신속하게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단지 국제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문제들을 그만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²⁰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회담-외무부 21 분실의 보고(문서번호 21).

²¹ 통일된 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에 대한 소련 측 입장-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견해(문서번호 41).

성된 문서에서 그는 특히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 내에 일부에서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이 약화되거나 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화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특히 고르바초프의 자문인 팔린과 군사전문가 바테닌이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소련의 언론이 최근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문제를 비교적 온건하게 다룰뿐만 아니라 통일독일의 중립국화 문제도 거부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산당의 이런 공식노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내의 보수 강경파인 리가초프를 비롯한 군 수뇌부를 상대로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는 데 부분적으로는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발언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노이베르트 과장의 분석이었다. 반면에 군 수뇌부는 여전히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는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2+4회담에서 소련이 최종적으로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고르바초프 정부가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총괄적인 해결책을 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총괄적인 해결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련을 위한 재정지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제2차 2+4회담 기간에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간의 단독회담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다.²² 이 회담에서 겐서는 서독이 소련에 제공할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2+4회담에서

²²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제네바에서의 대화-통역 기록(문서번호 44).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추가로 차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대해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서독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소련을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 회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와 유사한 논의는 1990년 6월 10일 브레스트에서 열린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이 회담에 배석한 통역이 정리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서독이 소련에 제공하기로 한 무담보차관을 위한 전문가급 또는 외무장관급 회의를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하자, 겐서 장관이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서독이 소련과의 관계에서 돈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해야만 했다고 말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세바르드나제 또한 소련 내에서 그런 상황을 자주 겪는다고 답하였고, 두 사람 모두 서독과 소련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 보인다.²³ 외무장관들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2+4 회담 기간 중에 양국 간의 관계에서 서독이 소련에 제공하기로 한 차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5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의 호스트 텔칙 외교안보담당 국장이 5월 25일 동독의 메켈 외무장관을 만나서 소련에 대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한 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²⁴ 그는 소련이 경제 및 재정위기에 부딪혀서 지불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콜 수상이 소련에 약 50억 마르크 상당의 단기 여신과 200-500억 마르크 상당의 장기은행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소련

²³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브레스트에서의 회담-외무부 105 분과 통역 기록(문서번호 65).

²⁴ 동독 외무부에서의 메켈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국 텔칙 국장과 의 대화(문서번호 47).

에 전달하면서, 소련이 2+4회담에서 서독에 최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서독이 소련에 막대한 금액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소련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변경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1990년 6월 15일에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이 동독 외무부에 전달한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입장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소련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동시에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준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3년에서 15년 정도의 과도기를 두고 국제법적으로 2+4협상의 결과들이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⁵ 그것은 6월 12일에 고르바초프가 독일통일 이후 서독지역은 나토에 동독지역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각각 잔류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소련대사관이 동독 외무부에 소련의 입장을 전달한 6월 15일에 서독의 외무부 정책기획팀은 소련의 핵심목표는 소련이 새로이 구축될 유럽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잡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련이 고립될 가능성이 적다고 여길수록, 소련 지도부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를 포함하여 독일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²⁶ 같은 날 서독 외무부 경제국에서는 당시 소련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서방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구상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고르바초프 하에서 소련의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이로 인해 소련 내부에 분리주의 움직임을 비롯하여 정치적 불안이 증가하였고,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경제적 성과가 악화되면서 자금의 유동성 문제

²⁵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과 동독 외무부 간의 대화-소련 측의 입장(문서번호 69).

²⁶ 소련 측의 전체 유럽 지형에서 본 독일통일 방안(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의 발언 내용)-서독 외무부 배경분석 보고(문서번호 70).



가 발생할 위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소련 경제체제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소련 상품에 시장을 개방하여 소련경제를 세계경제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외무부 법무국에서는 2+4회담의 틀에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²⁷ 이 팀은 서독 외무부의 2+4회담 파견단 단장이었던 마틴 나이가 6월 7일에 작성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에 관한 문서에서²⁸ 지적된 포츠담협정이 형식적으로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련의 입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외무부 법무국이 검토한 것은 포츠담협정의 어느 부분이 현재 사안의 소멸로 인해 불필요해졌는지 그리고 2+4회담의 일환으로 소련 측이 요구하는 소련의 안전보장 틀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론은 포츠담협정의 대부분의 사안이 이미 소멸되었으며 몇 개의 목표와 합의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구축’과 ‘영토문제의 최종적인 규정’ 그리고 ‘오데르 나이세 강 국경’에 관한 규정들이었다. 그중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구축과 같은 조항은 2+4회담 조약의 전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국경과 영토문제는 회담의 틀에서 아니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차원에서 혹은 당사국 간의 양자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1990년 6월 22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제2차 2+4회담에서 소련은 여전히 2+4회담 이후 5년 간의 과도기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통일독일이 동시에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제출하였

²⁷ 포츠담 선언-2+4회담의 틀 속에서 안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고려·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문서번호 74).

²⁸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문서번호 58).

다.²⁹ 서독 외무부 2+4회담 실무단은 1990년 7월 3일에 작성한 2+4회담의 2차 회의 결과에 관한 문서에서 소련 대표단이 이런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³⁰ 이 분석에서는 먼저 소련이 이런 제안을 제출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며 이미 장관급 회의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소련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그들이 제안한 것을 협상전략이며 동시에 소련 국내용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7월에 열린 소련 공산당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소련의 제안을 항목별로 분석하면서 서독 측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독일의 통일 이후 3년 이내에 병력을 최대 20-25만 명으로 축소해야만 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병력과 관련된 문제는 비엔나에서 열린 군축협상에서 다루어질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서독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독일을 차별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만들게 될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승국이 독일을 점령·통치하던 시기에 내린 모든 법과 규정이 통일독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련의 제안은 통일된 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일 이후 몇 년 동안의 과도기에 통일독일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헬싱키협정의 조약에 따라 회원국 모두 스스로 어떤 동맹에 가입할지 또는 탈퇴할지 선택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이 규정은 통일독일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답하였다. 동독정부와 서독정부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독일영

²⁹ 본에서 열린 5차 2+4 실무자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문서번호 79).

³⁰ 2+4회담 현황 보고-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문서번호 89).

토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일정한 과도기를 두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통일된 독일이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둔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동독영토에 소련군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남아 있는 것에 관해서 또는 독일에 대한 4대 전승국들의 권리의 해지와 관련하여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련의 제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련이 지금까지 독일에 대해 구축해 온 권력구조를 완전히 포기하는 데 정치적, 심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실무단은 평가하였다. 그러나 6월 22일의 2+4회담 2차 회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서방 4개국의 공동보조가 분명해졌고, 2+4회담이 11월에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 때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2+4회담의 틀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와 다른 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서독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성과라고 분석하였다.

이 문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2+4회담 전반기 서독의 외무부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약속으로 소련을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동시에 포츠담협정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처럼 소련의 요구의 법률적 근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등 시간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자국이 원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문제에 접근한 것을 볼 수 있다. 서독의 외교관들이 대소련 외교에서 한편으로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련이 입장을 선화해 준다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하는 방식도 눈에 드러나지 않게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³¹ 그러나 회담을 통해 또는 외부로 발표되는 문서가 아닌 부처 내의

³¹ 예를 들어 소련에 대한 경제적·재정적 지원(문서번호 8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소련에게 서독은 동독이 소련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고 소련이 민주화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통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아주 구체적이고 냉정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제2절 국경문제

2+4회담의 의제로 결정된 4개 사안 중에서 소련의 제안 중에 통일독일의 군사동맹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문제들은 비교적 큰 갈등 없이 원활하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데르-나이세 강으로 만들어진 폴란드와의 국경선을 통일독일의 공식적인 국경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2+4회담의 틀 내에서는 비교적 갈등 없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1990년 6월 21일에 동서독의 의회가 오데르-나이세 강 국경선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통일 이후에 폴란드와의 국경조약을 통해 이를 국제법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절대 다수의 찬성을 통해 채택하였고, 이 결의가 7월 17일 폴란드의 외무장관이 참석한 2+4회담 3차 파리회의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서독 국내로 눈을 돌리면 이 문제가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한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서독의 연방의회가 1989년 11월 8일에 이미 의원의 절대적인 다수의 찬성을 통해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공식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콜 수상을 비롯한 기민당의 일부 보수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발언을 통해 폴란드의 서부국경 문제가 마치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인상을 주었다. 오데르-나이세 강의 동쪽지역에 살다가 2차

.....

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받아들이며, 군축 및 군비 통제 그리고 헬싱키협정의 제도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서독과 서방의 다른 국가들의 공동의 관심사이며, 소련 측의 장기적 지불능력(Bonität)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서독 연방정부가 소련의 채무이행의무를 보증함으로써 독일은행들 컨소시엄으로부터 금융 차관을 받게 해 달라는 소련 측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은 서독이 소련의 개혁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서독 연방정부 재무장관의 연설에 포함된 내용이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로 이주해야만 했던 소위 말하는 실향민들에게 이 지역은 ‘잃어버린 영토’였고, 그들은 여전히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독일영토의 1/4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반 세기가 채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의 영토가 폴란드에 귀속된 것이 히틀러가 일으킨 비인도적인 전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독의 일부 보수진영이 포츠담협정의 결과를 완전히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포츠담회담에서 폴란드 서부의 오데르 강-나이세 강에 이르는 땅을 영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츠담협정은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이 평화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조인될 때까지 임시로 오데르-나이세 강을 국경선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서독의 보수파가 이 국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기도 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정부가 폴란드와 바르샤바조약을 통해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초 독일통일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폴란드의 민주정부의 마조비에스키 총리가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 오데르-나이세 강 국경선을 협정을 통해 인정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 협정은 동독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될 새로운 정부와 서독의 연방정부의 의회가 함께 승인하고 폴란드와 동독, 서독의 정부가 동시에 서명함으로써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폴란드정부의 입장이었다. 마조비에스키 총리는 나아가 2+4회담에서 주변국가의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논의되는 한 폴란드가 참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를 요구하는 마조비에스키 정부의 요구는 4대 전승국, 특히 프랑스와 영국 및 소련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폴란드가 2+4회담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2+4회담 중에 국경문제와 관련된 논의에만 폴란드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폴란드의 참가로 인해 2+4회담 과정을 불필요하게 복

잡하게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던 것이다.

폴란드의 서부국경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서독 간에도 미묘한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다른 전승국들과 마찬가지로 오데르-나이세 강을 기준으로 정해진 국경선을 독일-폴란드 간의 공식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0년 12월에 있을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던 헬무트 콜 수상은 보수파의 표를 극우파에 잃지 않기 위해 실향민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소수그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콜 수상은 동독과 서독의 절대적인 다수의 시민들이 현존하는 폴란드-독일 간의 국경선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을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자 했던 것이다. 반면에 외무장관 겐서를 비롯한 기민당 내의 온건한 정치인들은 폴란드와의 국경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로 인해 1990년 초에 서독 연립정부는 폴란드 국경문제로 인해 내적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다. 3월에 서독의 국내정치적인 갈등이 해결된 후, 콜 수상은 통일독일이 오데르-나이세 강이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것임을 미국 연방의회의 연설에서도 언급하였다.³² 그러나 1990년 서독 외무부의 외교문서를 보면 1990년 3월에 이미 2+4회담에 폴란드를 초대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경문제에 대한 실무급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어서 조율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 5월 23일에 열린 2+4회담을 위한 3차 실무자급 회의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보고를 보면 동독과 서독 의회가 먼저 오데르-나이세 강을 국경선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동시에 결의하고 통일된 독일의 의회를 통해 국경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자는 서독의 제안을 폴란드가 거부한 것

.....
³²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연방 외무장관 겐서, 연방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의 워싱턴 국회의원사당 방문-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문서번호 37).



을 볼 수 있다.³³

폴란드 외무장관은 1990년 6월 21일에 동독과 서독의 의회가 동시에 폴란드 국경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독일통일 직후에 곧바로 국경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동독 대사에게 전달한 것을 문서에서 볼 수 있다.³⁴ 폴란드정부는 국경조약의 체결을 2+4회담의 협정문과 시기적으로 연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서독과 폴란드 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 쪽에서 이런 결의를 임시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6월 22일에 열린 2+4회담의 실무자회의에서 서독 외무부의 카스트롭 국장이 폴란드가 제시한 국경조약 안에 국경문제 외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동독의 최고인민회의와 서독의 연방의회의 결의를 통해 오데르-나이세 강을 공식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한 것으로 폴란드가 이미 충분한 보장을 얻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결의안을 근거로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가 국경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⁵

7월 17일에 파리에서 열린 3차 회의에 폴란드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독의 겐서 외무장관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조약의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폴란드의 스쿠비셰프 스키 외무장관도 전승 4개국의 공동성명이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성명을 통해 2+4회담의 틀 속에서 국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³⁶ 이 회의에

.....

³³ 본에서 열린 2+4회담(3차 실무자급 회담)(문서번호 43).
³⁴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관한 1990년 6월 21일자 최고인민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폴란드 측 보고(문서번호 88).
³⁵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과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의 본에서의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서(문서번호 77). 이와 관련하여 본에서 열린 2+4회담(5차 실무자급 회담)(문서번호 76), 본에서 열린 5차 2+4 실무자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문서 번호 79), 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2차 외무장관급 회담)(문서번호 80) 참조.
³⁶ 파리에서 열린 3차 외무장관급 2+4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보고(문서번호 101).

서 서독과 폴란드는 경제문제에 관한 별도의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³⁷

제3절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 문제

동독과 서독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4대 전승국들이 패전국인 독일을 분할점령하기로 한 얄타협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독일영토에 건설된 두 국가는 전승 4개국의 승인 없이 독일영토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질서의 변화도 결정할 수 없는 반주권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물론 그로 인해 전후 세계의 냉전체제 속에서 동독과 서독이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두 국가가 정치적 제약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이 가시화되었을 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전승 4개국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했다. 그와 함께 통일된 독일이 주권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전승 4개국이 갖고 있는 독일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4회담을 통해 독일문제를 해결하기로 전승 4개국과 두 개의 독일이 합의하였다는 것은 이미 통일된 독일의 국제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회담의 진행과정에 소련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일정한 과도기를 두고 전승 4개국의 독일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월 23일 제네바에서 겐서 외무장관과 가진 두 차례의 단독회의에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독일에 대한 전승 4국의 권한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독일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1차 2+4 회담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³⁸ 독일통일의 내적 진행과정과 대외적 절차를

³⁷ 파리에서 열린 2+4회담(3차 외무장관급 회담)(문서번호 102).

³⁸ 1990년 5월 5일 본에서 열린 2+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연설(문서



분리하여 먼저 독일에 통일된 하나의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고 21개월이 지난 후에 1+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결정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³⁹ 그는 이 회의에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폐지가 2+4회담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력 감축 문제 및 그 경제적 측면 등을 포함한 점령군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시간을 요하며, 소유권의 사회화 조치 등과 같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점령군에 의해 내려진 조치의 합법성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의 이런 제안에 대해 겐서 외무장관은 독일은 새로운 유럽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에 함께 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일을 특수한 사례로 취급하는 것은 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헬싱키협정 최종합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군대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과도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대화에서 서독의 겐서 장관이 통일 이후 독일문제의 처리를 위해 일정한 과도기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소련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들릴 수 있다. 더욱이 그는 1990년 초부터 소련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2+4회담이 개시될 때에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보유한 겐서 장관이 이미 콜 수상과 보조를 맞추어서 과도기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소련의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 결과 통일과 함께 독일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독의 기본원칙이 되었고 전승 4개국의 권한 또한 통일과 동시에 소멸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규정한다는 것이 서독의 전략이

번호 22).

³⁹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제네바회담-외무부 21국의 보고(문서번호 45).

되었다.⁴⁰ 겐서가 5월 23일에 세바르드나제에게 언급한 일정한 과도기라는 것은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독과 서독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겐서 서독 외무장관이 1990년 6월 1일 동독을 방문하였을 때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는 마쿠스 메켈 동독 외무장관과 만나서 2+4회담 이후에 통일독일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문제가 남겨져서는 안되며 과도기적 조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에 어떤 제약도 남겨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⁴¹ 서독과 동독은 2+4회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통일된 독일의 주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안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⁴² 거기에는 독일통일 이전에 동독과 서독이 전승 4개국인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4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하던 시기에 내린 모든 조치와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2+4회담의 최종 협정서에 포함시키자는 소련의 제안도 포함되었다.

6월 22일 2차 2+4회담에서 소련의 제안에는 “통일된 독일은 전승 4개국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점령지역에서 탈나치화, 탈군사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취한 모든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재산과 토지문제와 관련된 결정의 적법성은 독일 법원 또는 다른 독일 국가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장을 협정서에 포함시킨다면 독일에 대한 점령국의 권한을 영구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통일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다는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외무부 2+4회

.....

⁴⁰ 2+4회담과 베를린문제-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의 보고(문서번호 51).

⁴¹ 동·서독 외무장관 간 협의위원회 구성-메켈 외무장관과 겐서 외무장관의 동베를린 회의(문서번호 52).

⁴² 본에서 열린 5차 2+4 실무자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문서번호 79), 동베를린에서 열린 2차 국장급 2+4 자문회의-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문서번호 83), 2+4회담 현황 보고-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문서번호 89).

담 실무단의 단장 마틴 나이는 분석하였다.⁴³ 이런 조항은 통일된 독일이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입법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 포함된 조항들은 전승 4개국에 갖는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는 독일 국내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그것은 나아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하였다.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한이 해지된 후에는 점령법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이 독일법 체제에 통합되는데 그 규정 중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계약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특정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그것은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2+4회담의 협정문에 포함시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실무단 대표는 강조하였다.

서독정부는 나아가 2+4회담에서 처음부터 전승 4개국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동등한 파트너의 역할은 단순히 협상테이블에서 구석에 앉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회담의 결과를 찾는 과정에도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독은 그것을 2+4회담이 구상될 때부터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서독과 다른 전승국들 간의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서독이 생각한 것은 오히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국가공동체를 통한 독일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였었다.⁴⁴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통일독

⁴³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 인정 여부 문제(문서번호 95).

⁴⁴ 서독이 평화조약의 체결을 거부했던 중요한 이유는 서독이 나치독일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나아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보면 전쟁보상 문제 등과 같이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통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유고슬라비아 또는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새롭게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지를 애초에 막아야 한다는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서독정부가 보여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소련을 포함한 전승 4개국이 이미 1950년대에 독일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였다는 것이었다. 소련 측의 강제노역자 전후배상요구(문서번호 18) 참조.

일에게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반대하였다.⁴⁵

서독정부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1990년 6월 18일에 서독의 북부 도시 뮌스터에서 다시 만난 겐서 서독 외무장관에게 다시 한번 소련 측의 과도기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과도기는 전승 4개국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합의에서 시작되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권한도 소멸된다는 것이었다. 과도기 중에 2+4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둔군과 군사동맹의 문제 그리고 베를린의 지위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겐서 장관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통일된 독일에 미해결 문제라는 부담을 안겨 주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소련이 말하는 과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⁴⁶ 6월 20일에 열린 2+4회담의 5차 실무자회의에서도 소련 측 대표 본다렌코와 서독 측 대표 카스트롭 국장이 통일독일의 주권회복 문제 때문에 참여하게 대립하였었다.⁴⁷ 6월 22일에 개최된 2+4회담의 2차 회의에서도 서독은 소련 측의 제안이 독일의 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⁴⁸ 서독 외무부 2+4 실무단은 7월 10일 내부회의에서 2차 회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2+4회담에 임하는 서독의 목표는 회담에 참가한 6개국 모두가 동의하는 ‘국

.....

⁴⁵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제네바회담-외무부 21국의 보고(문서번호 45),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와 미국 2+4협상 담당 참사관 조엘릭의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의 소련 방문에 대한 대화-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의 보고(문서번호 46),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코펜하겐에서의 회의(문서번호 59), 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2차 외무장관급 회담)(문서번호 80).

⁴⁶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뮌스터에서의 회담-외무부 정치국의 보고(문서번호 75).

⁴⁷ 본에서 열린 5차 2+4 실무자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문서번호 79).

⁴⁸ 2+4회담 현황 보고-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문서번호 89), 1990년 6월 22일자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소련 측 안-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평가(문서번호 93) 참조.



제법적인 최종 규정', 즉 최종 협정서의 핵심내용이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모든 권한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⁴⁹ 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독 외무부의 입장이었다. 미해결 문제가 남아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후시기를 종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독과 소련의 대치되는 입장이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모스크바와 캅카스에서 고르바초프와 헬무트 콜 간의 독일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4회담이 협상의 장이 아니라 신속하게 최종 협정문을 만들기 위해 협의의 장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제4절 군사력과 군사동맹의 문제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이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통일독일이 나토 회원국의 지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나토군의 배치 그리고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안보협력체계의 구축 문제를 포괄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것은 통일된 독일의 동부지역, 즉 동독영토에 나토군이 주둔할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련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였고, 나토의 조직 자체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한 동서 세력균형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독정부는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이미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대신 동독지역에 나토군이 주둔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서독의 수도 본에서 1990년 5월 5일에 열린 2+4회담 제1차 외무장관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회의 참가자들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대한 타협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와 새

⁴⁹ '국제법적 최종 규정'-서독 외무부의 2+4회담을 위한 논의안(문서번호 96).

로운 유럽의 협력질서 속에 소련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 즉 소련과 서구진영이 모두 유연성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소련은 이미 1차 회담에서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안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독과 서독 간의 통일작업의 속도에 비해 유럽 전체를 위한 새로운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분리해서 진행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⁵⁰ 만일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갖게 될 경우, 소련에는 강하게 반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 단순히 협상 파트너를 협박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이미 1990년 5월 1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벌써 “정권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다는 설명을 부연했다.⁵¹ 그것은 한편으로는 만일 소련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독일통일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였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 정치적 문제라고 이해될 수도 있었다. 그럴 경우 이러한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면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었다.

서독이 소련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

.....

⁵⁰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회담-외무부 21 분실의 보고(문서번호 21), 1990년 5월 5일 본에서 열린 2+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연설(문서번호 22).

⁵¹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회담-외무부 21 분실의 보고(문서번호 21).

이라고 할 수 있다. 서독정부는 2+4회담의 1차 회의 직후인 5월 13일에 호스트 텔칙 국장을 포함한 사절단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세바르드나제와 리시코프 총리, 경제관료들과 경제지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다.⁵² 이어서 고르바초프와 만난 텔칙 국장이 콜 수상이 고르바초프의 고향에서 만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고르바초프가 7월 초에 있을 공산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⁵³ 7월에 열리게 될 고르바초프의 고향인 캅카스에서의 회담이 독일 통일의 대외적 측면에서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서독의 사절단이 소련이 단순히 재정적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며 독일과 소련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것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에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

실제로 소련은 5월 5일의 1차 2+4회담 이후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를 두고 전면적인 거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전혀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여러 차례 시사하였다.⁵⁴ 5월 중순에는 고르바초프가 통일독일의 군비 감축 문제도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5월 30일에서 6월 3일 사이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그는 통일독일이 자율적으로 동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하여 참가자들을 놀라게 하였다.⁵⁵ 6월 6일과 7일 이틀 간

⁵² 동독 외무부에서의 메켈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정보장정책국 텔칙 국장과의 대화(문서번호 47).

⁵³ Juli Alexandrowitsch Kwizinski(1993), Vor dem Sturm. Erinnerungen eines Diplomaten. Berlin(Siedler Verlag), p.31.

⁵⁴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제네바에서의 대화-통역 기록(문서번호 44), 동독 외무부에서의 메켈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정보장정책국 텔칙 국장과의 대화(문서번호 47),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브레스트에서의 회담-서독 외무부 정치국의 보고(문서번호 66).

⁵⁵ 런던에서 열린 서방 정치국장들의 자문-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문서번호 56) 참조. 모스크바를 방문한 서독 외무부의 카스트롭 국장과의 회의에서 소련의 크위진스키 외무차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바르드나제는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존의 나토 형태여서는 안되며, 소련으로 하여금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포츠담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였다.⁵⁶ 6월 22일에 열린 2+4회담 2차 회의에서 소련 대표는 통일 이후 독일영토에서 외국군대가 완전히 철수하고 새로운 유럽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⁵⁷ 소련이 이렇게 여러 제안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보다 당시 복잡한 소련의 국내정치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7월 초에 있을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파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던 고르바초프가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서독과 미국이 소련의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두 국가는 소련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모색하였다. 거기에는 특히 통일독일의 연방군 병력의 제한, 나토 전략의 수정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 CSCE의 새로운 역할 규정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통일독일의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서독정부 내에서도 콜 수상과 겐서 외무장관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7월 14일 고르바초프와 만나기 위해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이 37만 명으로 통일독일의 연방군 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겐서와 텔칙은 회고하였다.⁵⁸

.....

도 이런 내용의 소련의 입장을 서독에게 전달하였다.

⁵⁶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코펜하겐에서의 회의(문서번호 59). 세바르드나제의 이런 발언 이후 서독의 외무부에서는 포츠담협정의 유효성을 실제로 검토하였다. 포츠담 선언-2+4회담의 틀 속에서 안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고려·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문서번호 74).

⁵⁷ 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2차 외무장관급 회담)(문서번호 80).

⁵⁸ Horst Teltschik(1991),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pp.317-318; Dietrich Genscher(1995), Erinnerungen, Berlin, p.831.



1990년 7월 15일과 16일 모스크바와 캡카스에서 열린 독일·소련의 정상회담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서에는 특히 독일이 통일과 더불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독일에 대해 전승 4개국이 보유한 모든 권한은 독일통일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것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는 사실과 함께 1990년 현재 동독영토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소련군이 두 국가 간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동독지역에 계속 남아 있기로 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물론 소련이 통일독일이 어느 동맹에 속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그것은 물론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회담에서 소련이 분명히 하기를 요구한 것은 소련군이 동독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토 조직이 이 지역까지 확장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소련군이 철수하고 난 후 독일의 거취문제는 완전한 주권국가, 즉 정상국가가 된 독일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확인하였다.⁵⁹ 이 회담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6월 초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언급했던 사안들이 구체화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에서 캡카스회담이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고르바초프가 통일과 동시에 독일이 정상국가로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캡카스에서의 회담을 통해 독일통일 과정에서 외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열린 대부분의 회의들은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2+4협정문을 조율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 17일에 파리에서 열린 제3차 2+4회담에서는 9월 12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종회의까지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최종

.....
⁵⁹ 소련 아르키스/스타브로폴 크라이에서 열린 관계자 확대회의에서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수상 간의 대담(문서번호 99).

조약의 초안을 만들기로 합의되었다.⁶⁰ 8월 7일에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간의 전화회담에서 9월 12일의 회의에서 협정서를 조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누면서, 통일된 독일의 연방군의 규모에 대해 8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⁶¹

.....
⁶⁰ 1990년 7월 17일 파리 개최 3차 외무장관급 2+4회담 및 1990년 7월 19일 본 개최 실무자급 회담 이후의 2+4회담 현황-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문서번호 114).

⁶¹ 서독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전화통화-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문서번호 116). 통일독일의 연방군의 규모에 관한 결정이 비교적 늦게 내려졌기 때문에 동독 인민군의 군인들은 오랫동안 불확실한 장래문제로 인해 불안해 하였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1권 참조.

외교협상의 기술 혹은 예술

독일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2+4회담에서 ‘독일에 관한 최종규정에 관한 협정’, 즉 ‘2+4협정’이 조약의 형식으로 조인되면서 일단락되었다. 2+4협정을 통해 독일통일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쟁점들이 정리되었다. 먼저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리는 통일과 함께 독일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소멸되었고, 통일독일은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회담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보고서에는 이 협상의 참가국들이 모두 그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통합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반응하였다고 한다.⁶² 동시에 겐서 외무장관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가 전승 4개국 대표들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점령법에 기초해서 시행되었던 재산 몰수 조치는 더 이상 원상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소련과 동독은 점령군이 시행한 조치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서독정부가 그런 입장을 이해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서독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의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 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달

⁶² 모스크바에서 열린 2+4회담(4차 외무장관급 회담)(문서번호 137).

하였다. 이 서신은 1970년대에 동독과 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둘러 싸고 발생한 논쟁과 관련하여 발터 쉘 서독 외무장관이 소련정부에 보낸 서신과 에곤 바가 동독정부에 보낸 서신의 내용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⁶³

2+4회담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0월 3일 독일통일까지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서독정부가 분단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실험해 온 정책을 기초로 그것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더 발전시켰을 때 서독의 외교정책이 특별히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통합 그리고 특히 동방정책과 CSCE, 즉 유럽안보협력기구 등과 관련된 서독의 외교정책이 모두 포함된다. 그것의 특징은 물론 동서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양면정책이었다. 1950년대에 서방 세계와의 동맹체제를 강화한 후 1970년대 초에 동서진영의 긴장완화와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 동구권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한 결과 건국 후 40년이 지났을 때 서독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국가로 설 수 있었다. 이러한 신뢰가 1990년에 국제사회에서 서독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외교정책이 신뢰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서독 외무부의 문서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전후 배상 요구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법을 미리 강구한다거나⁶⁴, 서독정부가 2+4회담의 틀에서 일방적으로 독일통일 성명을 발표할 경우 그것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검토하고⁶⁵, 포츠담협정의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그것은 당시 서독 외무부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에

⁶³ 1970년 8월 12일 체결된 독소조약에 관한 외무장관 발터 쉘의 서신(문서번호 4),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에 관한 에곤 바의 서신(문서번호 5).

⁶⁴ 소련 측의 강제노역자 전후배상요구(문서번호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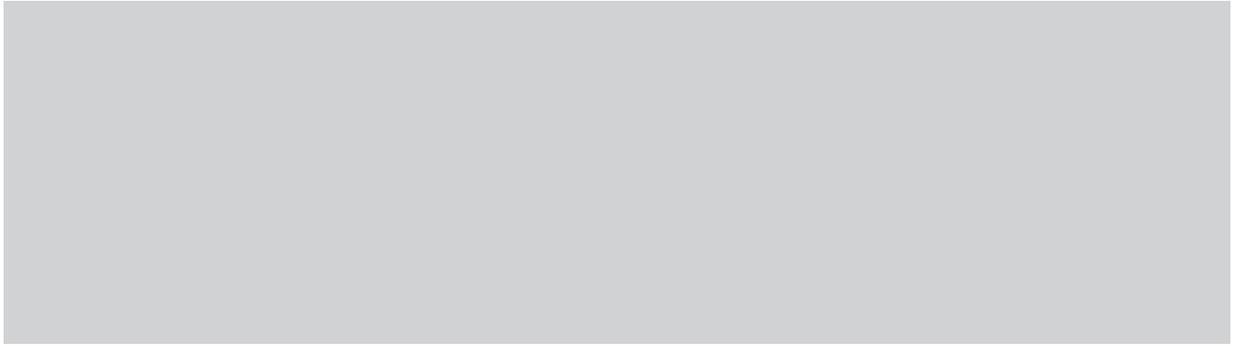
⁶⁵ 서독정부가 2+4회담의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통일을 선언할 경우 그것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에 대해(문서번호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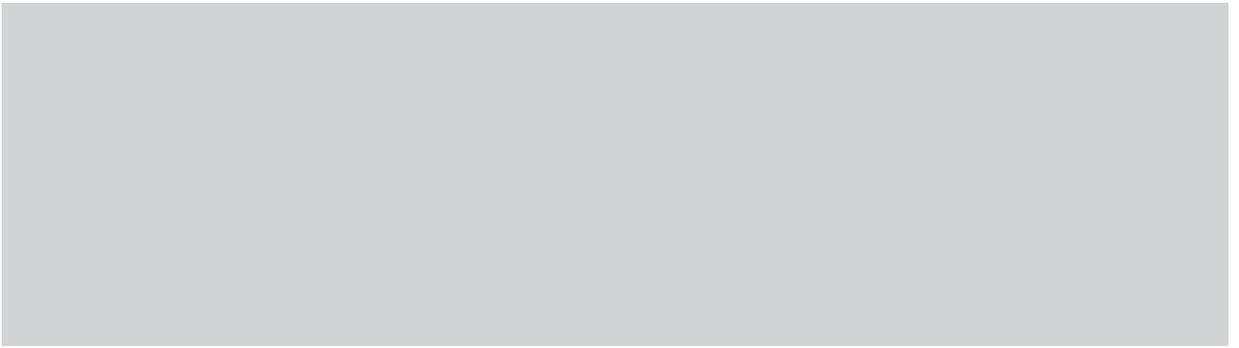
서 국제정치를 접근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교에서 당연히 필요한 현실주의적 접근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서독 연방정부 내에서 콜 수상과 겐서 외무 장관이 외교정책에서 서로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때로는 두 사람의 관점이 갈등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로 인해 미국과 소련의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헬무트 콜 수상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신뢰를 얻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겐서 외무장관이 소련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소련정부의 신뢰를 얻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1950년대와 1970년대에 서독정부의 외교정책 경험이 1990년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에서 헬무트 콜 수상과 겐서 외무 장관은 실제로 환상적인 조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폴란드와의 국경문제 또는 소련이 제시한 통일독일의 중립국화 그리고 통일의 독일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을 분리하자는 제안에 대해 겐서 장관이 진지하게 받아들 이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콜 수상과 갈등을 빚은 것이 독일통일 과정에 걸림 돌이 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서독정부가 자신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헬무트 콜 수상의 확고한 친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서독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신속한 통일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장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교정책에서 이견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견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외교무대에서 의외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독일통일과 관련된 2+4회담의 협상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다.

외교 분야Ⅱ
관련 정책문서



외교 분야 II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1	독일연방공화국과 3개 승전국 간의 재무협정	1952년 5월 26일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총리(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데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외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135-153
2	런던 9개국 회담 최종문서	1954년 10월 3일	벨기에 외무장관 스팍;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데나워; 프랑스 총리 망데스-프랑스; 이탈리아 외무장관 마르티노; 캐나다 외무장관 피어슨; 룩셈부르크 정부 의장 베히; 네덜란드 외무장관 바이엔;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외무장관 덜스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188, 06.10.1954
3	유럽 경제공동체 설립 조약-양독 간 무역에 대한 의정서	1957년 3월 25일	벨기에 외무장관 파울-앙리 스팍; 벨기에 경제부 총서기장 장-샤를 스노이 에 되뤼에; 서독 연방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외무부차관 발터 할 슈타인; 프랑스 외무부차관 크리스티앙 피노; 프랑스 외무부차관 모리스 포레; 이탈리아 총리 안토니오 세그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가에타노 마르티노; 룩셈부르크 정부 의장 요제프 베히; 벨기에 주재 룩셈부르크 대사 란베르트 사우스; 네덜란드 외무장관 요제프 룬스; 네덜란드 경제부 국장 요하네스 린토스트 훅만	http://www.ena.lu/vertrag_grundung_protokoll_uber_innderdeutschen_handel_demit_zusammenhangenden_fragen_marz_1957-030302331.html
4	1970년 8월 12일 체결된 독소조약에 관한 외무장관 발터 쉐의 서신	1970년 8월 12일	외무부차관 발터 쉐	Diemer, Gebhard / Kührt, Eberhart,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 Olzog Verlag, München, 1991, S. 216/217
5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에 관한 에곤 바의 서신	1972년 12월 21일	연방특임장관 에곤 바; 동독 내각회의 차관 콜	Diemer, Gebhard / Kührt, Eberhart,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 Olzog Verlag, München, 1991, S. 22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	독일-폴란드 관계-김니치 성에서 열린 서독 총리 콜과 헝가리의 총리 네메트 및 외무장관 호른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연방수상총; 겐서 외무장관;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총리;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U1 Un 25 Band 1
7	김니치 성에서 열린 서독 총리 콜과 헝가리의 총리 네메트 및 외무장관 호른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연방수상총; 겐서 외무장관;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총리;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Bundesarchiv, BArch/BK 21-30100 (56) Ge 28 (VS) Band 78, Bl. 296/1-296/5
8	동구권의 개혁추진 국기들과 유럽공동체	1989년 10월 30일	유럽위원회 의장 자코 들로르;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이탈리아 외무장관 에밀리오 콜롬보; 자코 들로르 의장 내각수반 파스칼 라미;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Der Spiegel vom 30.10.1989, Nr. 44, 43. Jahrgang, S. 184-186.
9	독일문제 및 동독 내 상황 전개에 대한 3개 서방 전승국과 소련의 입장	1989년 11월 11일	수상총;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30915, 211-68000 Gi 46, Anlage B(212-35400 De 29 Band 1)
10	동독과 유럽공동체 간 관계에 대한 동독의 비공식 문서	1990년 12월 16일	동독; 유럽공동체	Auswärtiges Amt, 1990, Umbruch in Europa. Die Ereignisse im 2. Halbjahr 1989. Eine Dokumentation, Bonn, S. 94-96.
11	미국의 '4+2' 협상에 대한 고려사항들-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보고	1990년 2월 9일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위르겐 루푸스; 미국 국무부 기획실 등 · 서유럽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9,532 E
12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을 위한 보고서	1990년 2월 27일	수상총; 수상청 (연방수상 공보 담당) 521과 과장 메르테스; 연방 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P 4 Po 30 Band 7
13	경제 · 화폐 · 사회 공동체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실무안에 대한 소련의 입장 표명-동독의 비공식 문건	1990년 4월 28일	소련 외무부; 동독 외무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4	본에서 열린 2+4회담(제2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4월 30일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롭; 프랑스, 미국, 영국 및 소련 대표단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5	독일통일 과정 중 소련에 대한 경제·정치적 보장 관련 고려사항들-서독 외무부 기획실	1990년 4월 30일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룬, 뮌켈만; 연방 외무장관 겐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8 E
16	소련과의 군비 통제 정책에 관한 자문 협의-서독 외무부 (국제적 군축 및 군축 통제 특히 제네바 미-소 군축 협상 담당) 220과 보고	1990년 4월 30일	외무부 2A 분과 (군축 및 군축 통제 담당 연방관) 분과장 홀릭 대사; 소련 외무장관 대리 카르포프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17	독일의 안전보장정책적 상황에 대한 동독정부의 발언-서독 외무부 201과 현황보고	1990년 4월 30일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18	소련 측의 강제노역자 전후배상요구	1990년 4월 30일 추정	서독 외무부 법무국 (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 자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연방 외무장관 겐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6 E
19	독일문제 논의를 위한 나토 외무장관급 회담-서독정부 브뤼셀 상주 나토 대표의 보고	1990년 5월 3일	나토 소속국 각 외무장관;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로츠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20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연방 수상 헬무트 콜을 위한 회담 의제 준비-1990년 5월 4일자 외무부 회람/1990년 5월 5일 외무부 통지문 (Drahterlass)	1990년 5월 4일	서독 수상장장 자이티스;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등; 연방 경제부; 연방 재무부; 연방 연구·기술부; 연방 환경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21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회담-외무부 21 분실의 보고	1990년 5월 4일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21 분실 실장 회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	1990년 5월 5일 본에서 열린 2+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연설	1990년 5월 5일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서독 외무장관 겐서; 동독 외무장관 메켈;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23	본에서 열린 2+4회담(최초의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5월 6일	겐서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메켈;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24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경제적 측면-외무부 421과 의 정리	1990년 5월 7일	외무부 경제국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 무역국가, 유고슬라비아 담당) 421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25	나토 자문단(NAC)의 2+4회담에 대한 보고-나토 서독정부 브뤼셀 상주 대표의 보고	1990년 5월 7일	나토 서독정부 브뤼셀 상주 대표 호르스트 베히만; 나토 자문단(NAC); 외무부 정치국 카스트롬 국장;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웨스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26	유럽공동체와 소련 간 관계-외무부 411과의 회담 논의 준비	1990년 5월 8일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당) 411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27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1990년 5월 10일 부서별 회의를 위한 외무부의 발제	1990년 5월 9일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28	서독 외무부 기획실과 소련 외무부 기획실 간의 대화-서독 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5월 10일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타라센코;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29	폴란드-독일 간 국경 확정-동독 외무부의 폴란드 측 조약 초안에 대한 반응	1990년 5월 11일	동독 외무부 법무 · 조약국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30	2+4조약-동독 외무부의 조약문 초안	1990년 5월 11일	동독 외무부 법무 · 조약국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1	동독 군축 · 국방부차관 비초렉의 나토 방위 · 국방국방정책위원회 컨퍼런스에서의 연설(발췌)	1990년 5월 11일	동독 군축 · 국방부차관 비초렉; 나토 방위 · 국방정책위원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32	2+4회담 협상 개시에 있어 소련 측의 입장 (및 그에 대한 독일 측 대응안)-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의 보고	1990년 5월 14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33	소련 내 상황 변화-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타라첸코의 설명-서독 외무부 기획실 보고	1990년 5월 14일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타라첸코;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연방 외무장관 겐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34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영국 외무장관 허드의 회담-외무부 연방장관실의 보고	1990년 5월 15일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영국 외무장관 더글라스 허드; 외무부 외무장관실 실장 대리 뢰펠부르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054 E
35	2+4회담에 대한 소련 측 입장-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5월 16일	소련 외무부 국장 대리 엘리자르쵸프;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36	2+4회담-유럽 내 안전보장체제와 관련된 정치 · 군사적 문제-서독 외무부 201과의 설명	1990년 5월 17일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37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연방 외무장관 겐서, 연방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5월 17일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라인하르트 쉬베페;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연방 외무장관 겐서; 연방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 미국 하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38	모스크바에서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와 소련 외무차관 크원즈스키 간의 회담(1990년 5월 17일)	1990년 5월 18일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 소련 외무차관 크원즈스키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39	포츠담협정-2+4회담의 틀 속에서 소련 측의 안전보장 이익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하여	1990년 5월 21일	외무부 법무국 신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0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0	서독정부가 2+4회담의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통일을 선언할 경우 그것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에 대해	1990년 5월 21일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0E
41	통일된 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에 대한 소련 측 입장-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견해	1990년 5월 21일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42	모스크바에서 열린 서독 외무부차관 라우텐술라기와 소련 외무장관 대라기와 소련 외무장관 대리 오브민스키 간의 (경제 및 무역 문제에 관한) 2차 자문회의-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5월 22일	서독 외무부차관 라우텐술라기; 소련 외무장관 대리 오브민스키;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연방 경제부; 연방 재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43	본에서 열린 2+4회담(3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5월 23일	동독 외무부 외무장관 대리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롬; 미국 참사관 조엘릭;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등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44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제네바에서의 대화-통역 기록	1990년 5월 23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소속 통역자 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45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제네바회담-외무부 21국의 보고	1990년 5월 23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양국 대표단; 서독 외무부 21 분과 과장 회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46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와 미국 2+4협상 담당 참사관 조엘릭의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의 소련 방문에 대한 대화-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의 보고	1990년 5월 23일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연방 외무장관 겐셔;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로버트 B. 조엘릭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47	동독 외무부에서의 메켈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국 헬치 국장과의 대화	1990년 5월 25일	메켈 동독 외무장관; 서독 수상청 (외교 및 내륙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헬치 국장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48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소련 방문-동독 외무 장관에 대한 주 소련 동독 대사의 보고	1990년 5월 25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고르 바초프 소련 대통령;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49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외무 장관 베이커의 회담-서독 외무장관실의 보고	1990년 5월 25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미국 외무장관 제임스 A. 베이커;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 베; 서독 외무부 공보담당 013과 호르보크;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로버트 B. 조엘릭; 미국 외무부 유럽 및 캐나다 정책 담당 국장 세이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50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역 스킴우크로프트의 회담-외무부 연방장관실의 보고	1990년 5월 25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역 스킴우크로프트; 미국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유럽 및 소련 문제 담당 실장 블레이크 윌;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51	2+4회담과 베를린문제-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의 보고	1990년 5월 31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2+4회담 실무그룹 올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52	동·서독 외무장관 간 협의위원회 구성-매켈 외무장관과 겐셔 외무장관의 동베를린 회의	1990년 6월 1일	매켈 동독 외무장관; 겐셔 서독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40
53	1990년 6월 9일 개최 실무자급 2+4회담의 논의 주제안	1990년 6월 1일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비취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54	통일된 유럽 내의 통일독일-콜 수상이 미국의 독립위원회에서 행한 연설	1990년 6월 5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동독;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나토; 남·중·동유럽 국가들; 유럽공동체; 헬싱키회의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13.06.1990, Nr. 74, S. 638-64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5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간에 개최된 미-소 워싱턴 정상회담의 평가-서독 외무부 (미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소	1990년 6월 5일	서독 외무부; 외무부 (미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 과장 폰 볼트케;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56	런던에서 열린 서방 정치국장들의 자문-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	1990년 6월 5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무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츠;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로버트 B. 조엘릭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3 E
57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의 회담-서독 외무부 21 분과의 보고서	1990년 6월 5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미국 외무장관 존 제임스 A. 베이커; 서독 외무부 21 분과 과장 회익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58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	1990년 6월 7일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2E
59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코펜하겐에서의 회의	1990년 6월 7일	서독 겐셔 외무장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서독 외무부 국장 회익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8 E
60	(스톡홀랜드) 토틀리로부터의 소식: 1990년 6월 7-8일에 열린 나토 자문단(NAC) 외무장관급 회의의 코뮈니케	1990년 6월 8일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들; 연방정부 언론공보처	Presse-und Informationsdienst der Bundesregierung, Bulletin Nr. 75 (13.6.1990), S. 645f. aus: http://www.nato.diplo.de/contentblob/1927156/Daten/185443/1990_06_MinTag_Download.pdf (Stand: 04.12.2015)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61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차 영국 총리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회담-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관의 보고	1990년 6월 8일	영국 총리 미가렛 대처;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62	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4차 실무지급 회담)	1990년 6월 9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롬;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국무부차관 세이츠; 미국 국장 리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비츨 등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63	2+4회담의 틀 속에서 동 베를린에서 열린 4차 실무지급 회담-서독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6월 9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롬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츠;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0 E
64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6월 11일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양국 대표단;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 미국 국무부 차관보 도빈스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65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브레스트에서의 회담-외무부 105 분과 통역 기록	1990년 6월 1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외무부 (언어 담당) 105부 통역관 헬;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66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브레스트에서의 회담-서독 외무부 정치국의 보고	1990년 6월 1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2국(정치국) 대리 회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67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브레스트에서의 2차 회담-외무부 105 분과 통역 기록	1990년 6월 11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외무부 105부(언어 담당부); 통역관 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8	독일 연방의회 및 독일 연방회의 내 베를린시 대표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유보적 자세를 재고 하였다는 내용의 3대 전승국의 서신	1990년 6월 12일	프랑스 대사 부이드보; 영국 대사 폴러비; 미국 대사 웰터스; 연방 수상 콜; 내무부장관 쇼이블레; 서독 연방의회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27, 20.06.1990, S. 1068
69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과 동독 외무부 간의 대화-소련 측의 입장	1990년 6월 15일	동독 외무부;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 그리니;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대사 비서 그리고르체프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70	소련 측의 전체 유럽 지형에서 본 독일통일 방안(고르비초프와 셰바르드나제의 발언 내용)-서독 외무부 배경분석 보고	1990년 6월 15일	고르비초프 소련 대통령;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 외무부 기획실 바이스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5 E
71	소련의 상황 및 경제 개혁-서방의 지원 가능성-외무부 경제국 421과의 분석	1990년 6월 15일	외무부 경제국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 무역국가; 유고슬라비아; 담당) 421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5 E
72	소련 측의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평화 규정' 안-독일의 완전한 주권 및 개별 취급 방지를 위한 서독 외무부의 회담 준비안	1990년 6월 15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3 E
73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독-독 간 조약에 대한 폴란드정부의 비망록	1990년 6월 16일	동독 외무부; 메켈 동독 외무장관; 스크비체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74	포츠담선언-2+4회담의 틀 속에서 안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고려 ·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1990년 6월 18일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 외무부 법무국 국제법 분과 아이텔 국장; 외무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빗첼;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6313E
75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뮌스터에서의 회담-외무부 정치국의 보고	1990년 6월 18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양국 대표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데리 회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6	본에서 열린 2+4 회담(5차 실무지급 회담)	1990년 6월 20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름;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르;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참사관 조엘릭;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비취 등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77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름 국장과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르의 본에서 의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서	1990년 6월 20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름 국장;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르;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7 E
78	본에서 열린 국장급 1+3자문회의-외무부 2+4 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	1990년 6월 20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름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르;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츠;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로버트 B. 조엘릭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7 E
79	본에서 열린 5차 2+4 실무지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6월 20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름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르;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츠;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7 E
80	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2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6월 22일	겐서 외무장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장관 메켈;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 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81	본에서 1990년 6월 19일에 열린 서방 측 법률전문가 (1+3: 서독+영국, 미국, 프랑스) 회의	1990년 6월 22일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할겐베르크 500과 과장(독일 측, 회의 의장); 도시프랑스 측; 마이클 우드(영국 측); 마이클 영(미국 측); 서독 외무부 정치국 소속 인사; 그 외 여러 법률전문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6313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2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있어 베를린의 포함 문제	1990년 6월 22일	서독 연방 내무부; 외무부 정치국 210과(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외무부 법무국 510과(헌법 및 행정법 담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2E
83	동베를린에서 열린 2차 국장급 2+4 자문회의-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	1990년 6월 22일	메켈 동독 외무장관(회의주재 의장);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니체 소련 외무장관; 베이커 미 외무장관; 허드 영국 외무장관;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7 E
84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소련측 안-1990년 6월 22일 2+4 외무장관급 회담을 위한 준비자료	1990년 6월 22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2 E
85	소련에 대한 경제적 · 재정적 지원	1990년 6월 27일	수상청	Bundesarchiv, BArch/BK, 01 (212)-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86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과 관련한 동독 측의 '쟁점 검토 리스트'	1990년 7월 1일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알브레히트; 서독 외무부차관 카스트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3E
87	통일 이후 조약 체결 전까지 남은 법적 만기들 개관	1990년 7월 2일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48E
88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관한 1990년 6월 21일자 최고인민회의의 의결 사항에 대한 폴란드 측 보고	1990년 7월 3일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주 폴란드 동독 대사; 메켈 동독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89	2+4회담 현황 보고-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대화 보고	1990년 7월 3일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3 E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90	2+4 회담의 틀 속에서 1990년 7월 3-4일 간 동베를린에서 열린 6차 실무자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7월 3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롬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츠;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 켈비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4 E
91	본에서 열린 2+4회담(6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7월 4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롬; 프랑스 정치 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국무부차관, 세이츠;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 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차관 미 켈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비츨; 폴란드 유럽 정책국 국장 솔렉 등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92	2+4회담의 틀 속에서 1990년 7월 4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6차 실무자급 회담 중 폴란드 정치국장이 참석한 회의-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7월 4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롬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츠;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 켈비츠; 폴란드 유럽정책국 국장 솔렉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4 E
93	1990년 6월 22일자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소련 측 안-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평가	1990년 7월 5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서독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및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2+4회담 실무그룹 울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3 E
94	본에서 열린 독-독 간 유엔 실무단 2차 회의-서독 외무부 보고 전문	1990년 7월 5일	독-독 간 유엔 실무단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95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 인정 여부 문제	1990년 7월 6일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3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6	'국제법적 최종 규정'-서독 외무부의 2+4회담을 위한 논의안	1990년 7월 10일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48E
97	독일통일에 따른 소련 측의 경제적·재정적 문제에 대한 관찰권 논의-서독 외무부 411, 421, 423과의 보고	1990년 7월 10일	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역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당) 411과;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무역국가, 유고 슬라비아 담당) 421과; (국제 교통정책, 국제 우정·통신 분야, 라디오 및 티비업무문기책; WTO 포함 국제 관광정책 담당) 235과; 서독 연방 재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 법무부; 연방 노동부; 연방 국방부; 연방 연구·기술부; 연방 환경부; 연방 교통부; 서독 수상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8 E
98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대한 폴란드 측 입장-바르샤바 주재 동독 외무 장관의 전화 통화 내용	1990년 7월 14일	동독 외무부; 메켈 동독 외무장관; 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 판 초볼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99	소련 아르키스/스타브로폴 크라이에서 열린 관계자 확대회의에서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수상 간의 대담	1990년 7월 16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한스 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부장관, 세바르드나 제 소련 외무부장관	Küsters, Hanns Jürgen/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90. München: Oldenbourg Verlag. S. 1355-1367.
100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에 줄 영향에 관한 유럽 의회 결의	1990년 7월 17일	유럽 의회; 유럽공동체; 더블린 유럽이사회; 동독; 중·동유럽 국가들; 소련; 동독 최고인민회의; 연방정부; 유럽 경제공동체; 헬싱키회의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7.09.1990, Nr. C 231, S. 154-163.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101	파리에서 열린 3차 외무장관급 2+4+B100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보고	1990년 7월 17일	메켈 동독 외무장관(회의주재 의장);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튀아 프랑스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무장관; 베이커 미 외무장관; 허드 영국 외무장관; 스퀴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4 E
102	파리에서 열린 2+4회담(3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7월 18일	겐셔 외무장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장관 메켈;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체; 프랑스 외무장관 튀아; 스퀴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03	동독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그리고 경제·학문·기술 분야 다자간 국제법적 협정들에서의 회원 지위	1990년 7월 18일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경제상호원조회의 동독 대표 하리 뢰러; 외무부 경제국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무역국가, 유고슬라비아 담당) 421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1668E
104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회담에 대한 보고-외무부 정치국의 회담	1990년 7월 18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105	본에서 열린 2+4회담(7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7월 19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06	본에서 열린 7차 2+4 실무자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7월 19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를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츠;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 젤비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8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7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해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	1990년 7월 20일	서독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48E
108	동독의 제3국들과의 국제법적 조약체결 현황	1990년 7월 20일	외무부 법무국 511과 베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1668E
109	2차 국가조약의 내용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의 제안	1990년 7월 2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1
110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 관련 협상-동·서독 간의 협의 및 독일의 의무에 대한 설명-서독 외무부 2A 분과의 보고	1990년 7월 26일	외무부 2A 분과 (군축 및 군축 통제 담당 연방관) 분과장 홀릭 대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signatur ZA 198.464 E
111	독-소 간 조약-외무부 내 관할권에 대한 논 의-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7월 27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롬 국장; 외무부 2A 분과 (군축 및 군축 통제 담당 연방관) 분과장 홀릭;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 및 그 외 외무부 소속 분과들;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히르트만; (동-서 관계, 동 유럽 국가들: 소련 및 미국의 양자 관계 및 군 축과 군비 통제 특히 헬싱키협정 관련 담당) 외무부 212과 과장 대리 니켈; 연방 재무부 소속 자유펜; 연방 국방부 소속 대령 올디스 및 플렉; 연방 경제부 국제경제국 국장 쇼메루스, 동-서 경제적 관계 담당 국장 하이트란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signatur ZA 140.713 E
112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롬 국장과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의 향후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대한 대화-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7월 31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롬 국장;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signatur ZA 198.465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3	메켈 동독 외무장관에 대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입장 전달	1990년 7월경 추정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메켈 동독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47
114	1990년 7월 17일 파리 개최 3차 외무장관급 2+4회담 및 1990년 7월 19일 본 개최 실무자급 회담 이후의 2+4회담 현황-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8월 1일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5 E
115	기본법 23조 2항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그 국제법적 영향	1990년 8월 6일	서독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힐겐베르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5E
116	서독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전화통화-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	1990년 8월 7일	서독 외무장관 겐셔;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서독 외무부 장관실 실장 대리 뢰켈부르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17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 서부군단의 물자 보급에 대한 명령	1990년 8월 8일	동독 내각회의; 동독 경제부; 소련 주 동독 서방군; 동독 내무부	Gesetzblatt der DDR Nr. 1990 I/53
118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회담	1990년 8월 17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19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및 양국 파견단 간의 모스크바 회담	1990년 8월 17일	연방 외무장관 겐셔;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소련정부 대표단 [소련 외무부차관 카르포프, 기획실장 타라첸코, 특임대사 볼다렌코 등]; 서독정부 대표단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롬 국장,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의, 외무부 연방 장관실 실장 엘베,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등]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0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	1990년 8월 21일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유럽 의회; 동독; 경제 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독일연방공화국; 유럽 경제공동체; 중·동유럽 국가들	Amt für amtliche Veröffentlichung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KOM(90) 400/III endg. Dokumente DE 10 01. Katalognummer: CB-CO-90-423-DE-C. ISBN 92-77-63783-8. ISSN 0254-1467.
121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에 대한 연방정부 보고	1990년 9월 3일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유럽 의회; 동독; 경제 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독일연방공화국; 유럽 경제공동체; 중·동유럽 국가들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70
122	2+4조약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 성명 초안	1990년 9월 3일	동독 외무부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23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의 연방 외무장관 겐셔 방문 중 대화	1990년 9월 3일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 겐셔 외무장관;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9 E
124	본에서 열린 2+4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 회의 1 일차)	1990년 9월 4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25	본에서 열린 2+4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 회의 2일차)	1990년 9월 5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26	본에서 열린 2+4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 회의 3일차)	1990년 9월 6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7	소련과의 전환협정-수상청 회의 결과	1990년 9월 6일	수상청; 수상청 (경쟁, 구조, 산업, 에너지, 기업, 수공업 및 무역, 마셜플랜 재정, 국제경제, 내각 경제위원회 정책 담당) 421과 과장 베스티호프; 수상청장 자이타스	Bundesarchiv, BArch/B 136/26869, 441-84010 Wo 107 Band 2
128	독일문제에 대한 규정 논의에 대한 발트해 연안국가들의 참여 요구-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9월 6일	리투아니아 국회의장 란드베르그스;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하이켄 박사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7 E
129	본에서 열린 2+4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 회의 4일차)	1990년 9월 7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30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간의 전화통화	1990년 9월 7일	수상청;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S 25 Üb 5 Band 2
131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과 소련 간 조약들의 처리 문제-1차 자문회의	1990년 9월 10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 파견단 단장 겸 동독이 체결했던 국제법적 조약의 전환협상 전권 대사 크로넬; 소련정부 파견단 단장 겸 동독과의 국제법적 조약의 전환협상 전권 대사 샤프코프;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제 조약 담당) 501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40713E
132	1990-1991년도 동독지역에서 소련 측에 제출된 식료 및 기호품-그 협상과정에서 대한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9월 10일	소련 국제경제관계부; (서독) 연방 식량·농림부 차관 키텔 박사;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슈미트-폴크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133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무장관의 회담-외무부 213분과의 보고	1990년 9월 1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무장관; 소련 외무장관 대리 유리 크위진스키;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클라우스 노이베르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34	독일 관련 최종 규정에 관한 조약	1990년 9월 12일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부장관, 로타 드 메지에르, 롤랑 뒤마, 더글라스 허드,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체, 제임스 베이커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1990, Verträge zur politischen Einheit, Bonn.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5	1990년 9월 12일의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대한 조약-2+4조약	1990년 9월 12일	겐서 외무장관;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MIJLT-781
136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모스크바 회담	1990년 9월 12일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37	모스크바에서 열린 2+4회담(4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9월 13일	겐서 외무장관;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38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점령범의 폐지	1990년 9월 13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울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연방 법무부; 연방 경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8E
139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회담	1990년 9월 13일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40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 해지에 대한 성명	1990년 9월 18일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8E
141	소련의 2+4 최종 문서 서명-국제위원회와 소관 사항-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9월 18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신하 '국제위원회';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8 E
142	독일조약의 폐지, 전환협정(1952-1954년)의 부분적 폐지 및 베를린에서의 법적 전환 문제에 대한 합의	1990년 9월 20일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 서독 외무부 법무국 (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98468E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143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에 따른 독일과 관련된 규정들의 무효화 및 파리강화조약 및 핀란드-소련 간 조약에 의거했던 핀란드 주권 제약의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핀란드정부의 결정	1990년 9월 21일	핀란드정부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144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군대의 바르샤바조약 기구 연합군 탈퇴에 관한 의정서	1990년 9월 24일	독일민주공화국 군축국방부장관, 바르샤바조약기구 최고사령관	Ehler, Hans (Hrsg.).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S. 511-512.
145	유럽 속의 독일	1990년 10월 3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Gazzo, Emanuele. Germany in Europe. Increased responsibilities. In: Europe. 03.10.1990. Nr. 5341. S. 1.
146	전 세계 정부들에 보내는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서신	1990년 10월 3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독일연방공화국; 폴란드 공화국; 동독; 유럽공동체; 미국; 소련; 유엔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05.10.1990. Nr. 188. S. 1227-1228.
147	통일이 유럽공동체의 운영 방식에 주는 영향	1990년 10월 3일	동독; 독일연방공화국; 유럽공동체; 연방 수상 헬무트 콜	François-Poncet, Jean: Les deux unités. In: Le Figaro. 03.10.1990. Nr. 14 340. S. 1. Übersetzung vom Centre Virtuel de la Connaissance sur l'Europe.
148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의 독일통일 공표	1990년 10월 3일	유엔총회; 유엔사무총장; 연방 외무장관 겐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9 E
149	통일에 대한 영국 및 프랑스정부의 유보적 자세	1990년 10월 4일	마기렛 대처 영국 총리; 연방정부; 소련; 미국	Wallace, William: Joy leaves heartache in London and Paris. In: The Guardian, 04.10.1990. S. 1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0	독일통일의 국제적 성격	1990년 10월 4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헬싱키회의; 나토; 서유럽 연합;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폴란드 총리 타데우시 마조비 에츠키; 남·중·동유럽 국가들	Kohl, Helmut. 1991. Vereinigung Deutschlands im Jahre 1990. Verträge und Erklärungen. Bon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S. 280-287.
151	구동독지역에 대한 소련 원유 공급의 축소-독일 외부의 모스크바대사관에 대한 통지문	1990년 10월 19일	독일 연방 외무부 (국제 에너지 정책, 비핵 에너지 정책 등 부문) 405과 소속 보빙어; 모스크바 주재 독일대사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152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과 소련 간 조약들의 처리 문제-2차 지문회의	1990년 10월 15일	독일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1668E
153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법적 지위 존속 문제(동유럽 해양 채굴산업 국제해양금속 컨소시엄)	1990년 10월 24일	외무부, 법무부 (남국회의 및 해상법, 항공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 등 국제법적 특수부분 담당) 504과; 연방 재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1668E
154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기민당/기사당 연합, 시민당 및 지민당 원내교섭단체의 발의	1990년 10월 30일	독일 연방의회;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교섭단체; 시민당 원내교섭단체; 지민당 원내교섭단체; 신연방주들; 유럽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공동체 이사회(Ministerrat)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391
155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과 소련 간 조약들의 처리 문제-3차 지문회의	1990년 11월 16일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정부 파견단 단장 겸 동독이 체결했던 국제법적 조약의 전환협상 전권 대사 크로넨; 소련정부 파견단 단장 겸 동독과의 국제 법적 조약의 전환협상 전권 대사 샤프코프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1668E
156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과 관련한 유럽위원회 의 법령 권고	1990년 12월 1일	유럽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공동체 이사회; 동독; 독일연방공화국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0, Heft 9, S. 352.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157	동독의 유럽 경제공동체 내 통합과정 중의 조 치를 일람	1990년 12월 4일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공동체 이사회; 동독지역; 유럽위원회; 독일연방공화국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1991. Mesures transitoires nécessaires à l'intégration de l'ex-RDA dans la CEE. In: Documents d'actualité internationale, 01.03.1991, Nr. 5, S. 238.
158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폐지에 대한 공식적 확인	1990년 12월 11일	구동독 기체결 국제법적 조약의 진화협상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 전권 대사 크로닉; 독일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 ZA 151668E
159	소련과의 경제적 관계-소련과 구동독 간의 조약들, 천연가스 공급, 독일 수출, 미미한 지불금 등의 문제에 대해-모스크바 주재 독일대사관의 소련 경제부와의 협의 내용	1990년 12월 20일	소련 총리 대리 스테판 시타르잔; 소련 국제경제 관계부장관 콘스탄틴 키투셰프; 소련 국제경제은행장 유리 모스크코프스키; 모스크바 주재 독일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160	독일통일과 국제법	1991년 1월 3일	프란스 폰 더 덴크(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 페터 H. 코이만(레이덴대학교)	Faculty Publications, Paper 7,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 Spring 1991, S. 510-557
161	구동독 영토 및 폴란드 주둔 소련군의 철수 및 폴란드 측의 동독 인민군 물자 인수 의향-독일 외무부 정치국 216과	1991년 8월 9일	독일 외무부 정치국 216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162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 국가 파트너들의 유보적 자세	1996년 8월 1일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공동체;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Kohli, Helmut, 1996.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Dargestellt von Kai Diekmann und Ralf Georg Reuth. Berlin: Propyläen-Verlag, S. 196-19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63	유럽연합 기맹국들의 영토 변경	1999년 10월 14일	유럽연합; 유럽공동체;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정부	Vedder, Christoph; Folz, Hans-Peter; Grabitz, Eberhard; Hilf, Meinhard. 2009. Das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zum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Artikel 48. Randnummern 10 bis 12. http://www.beck-online.beck.de
164	폴스바겐/작센주와 유럽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1999년 12월 15일	유럽 사법재판소; 유럽위원회; 독일연방공화국; 작센 연방주; 폴스바겐주식회사; 폴스바겐 작센 유한회사	Europäischer Gerichtshof. Abteilung Presse und Information. Pressemitteilung Nr. 97/99. Rechtssachen T-132/96 und T-143/96.
165	독일연방공화국과 유럽위원회 간의 폴스바겐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2003년 9월 30일	유럽 사법재판소; 유럽위원회; 독일연방공화국; 작센주 경제·노동부; 영국; 폴스바겐주식회사; 폴스바겐 작센 유한회사	Europäischer Gerichtshof. Rechtssache C-301/96.
166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독일 연방회의 및 연방 의회 위원회	2004년 11월 24일	연방국가적 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독일 연방회의 및 연방의회 위원회; 토마스 드 메지에르 작센주 내부부장관; 동독지역 연방주들	Kommission von Bundestag und Bundesrat zur Modernisierung der bundesstaatlichen Ordnung. Arbeitsunterlage 0099.
167	유럽위원회의 통일 협상 참여	2010년 10월 1일	동독; 유럽위원회 사무총장 대리 카를로 트로이 안; 유럽공동체;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부 장관; 유럽위원회 의장 자크 들로르; 유럽 의회; 네덜란드 총리 루트 웨버르스; 벨기에 총리 빌프리트 마르티스;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Besondere Sitzung des Europäischen Rates, in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pril 1990, Nr. 4, S. 8.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167)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총리(1949-1963년 재임) 겸 연방 외무장관(1951-1955년 재임) 아테나워,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외무장관 애치슨,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내용

서독은 3개 전승국 군대의 연방 내 연간 주둔 비용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그 기여액은 (1949년 4월 4일 출범한) 나토 회원국의 지출에 준해 정해져야 한다. 서독의 월간 기여액은 평균 8억 5천만 도이치 마르크에 달한다. 이 서독의 기여액에는 유럽방위공동체 기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3개 전승국 각각은 재원의 용처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기관들 및 서비스들은 3개 전승국에 무료로 제공된다: 독일 공공 서비스 기관의 행정 서비스 및 행정적 도움; 보도, 도로 및 교량; 항해가 가능한 수역;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찰, 공공 보건의료 및 소방 서비스; 기상학 및 도지학 관련 기관들; 민간 공항. 독일연방공화국과 3개 전승국의 대표자들로서 상설 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유럽방위공동체 위원회의 대표자들은 유럽방위공동체의 이해가 결부되는 경우 위 상설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135-153

문서
번호 2

런던 9개국 회담 최종문서
1954년 10월 3일

담당자 / 기관 벨기에 외무장관 스팍; 연방 수상 겸 연방 외무장관 아데나워; 프랑스 총리 망데스-프랑스; 이탈리아 외무장관 마르티노; 캐나다 외무장관 피어슨; 룩셈부르크 정부 의장 베히; 네덜란드 외무장관 바이엔; 영국 외무장관 이든; 미국 외무장관 딜스

내용

이 런던 문서에 의해 서독의 나토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독일의 3개 서방 점령구역에 대한 1949년 초의 점령규약이 해제되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 전역을 대변한다는 점도 인정되게 되었다. 서독은 스스로 유엔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한 서독은 통일이나 국경변경 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했다. 서독은 앞으로 총 50만 명의 전력을 재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서독은 원자력 및 생화학 무기를 독일영토에서 생산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그런데 그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영국, 미국 및 캐나다는 서독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을 확약하였다. 이들은 독일 전역에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경주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평화협정의 체결 전까지 독일 국경의 최종적인 획정은 보류되어야 한다. 베를린의 안전보장은 3개 전승국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당시 야당이던 사민당은 이 조약 및 특히 그에 따른 서독의 (재)무장을 크게 비판하였다.

출처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188, 06.10.1954

담당자 / 기관 벨기에 외무장관 파울-앙리 스팍; 벨기에 경제부 총서기장 장-샤를 스노이에 되튀에; 서독 연방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외무부차관 발터 할슈타인; 프랑스 외무부장관 크리스티앙 피노; 프랑스 외무부차관 모리스 포레; 이탈리아 총리 안토니오 세그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가에타노 마르티노; 룩셈부르크 정부 의장 요제프 베히; 벨기에 주재 룩셈부르크 대사 란베르트 샤우스; 네덜란드 외무장관 요제프 룬스; 네덜란드 경제부 국장 요하네스 린토스트 호만

내용

본 양독 간 무역에 대한 의정서에 의거하여 서독은 유럽 경제공동체 설립 조약과 무관하게 동독을 앞으로 계속 경제적으로 국내 지역인 것과 같이 취급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 사이에서 관세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모든 회원국들은 동독과 자국 간 무역에 대해 (유럽 경제공동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그 무역거래는 유럽 경제공동체나 그 다른 회원국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출처 http://www.ena.lu/vertrag_grundung_protokoll_uber_innerdeutschen_handel_damit_zusammenhangenden_fragen_marz_1957-030302331.html



문서 번호 4 1970년 8월 12일 체결된 독소조약에 관한 외무장관 발터 쉘의 서신
1970년 8월 12일

담당자 / 기관 외무부장관 발터 쉘

내용

서독의 외무부장관 발터 쉘은 1970년 8월 12일에 체결된 독소조약의 틀에서 소련 외무상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이 서신을 전달하였다. 이 조약에는 폴란드의 서쪽 국경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약은 서독이 추구하던 관계정상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동서독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련과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조약의 3조에서 서독과 소련은 유럽 모든 국가들의 영토를 존중하고 동서독 국경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이 조항은 사실상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달성은 서독의 기본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장기적인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발터 쉘 외무부장관은 이 서신을 통해 기본법의 해당문장을 인용하면서 서독정부의 입장에서는 독소간에 체결된 조약이 기본법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출처 Diemer, Gebhard / Kuhrt, Eberhart.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 Olzog Verlag, München. 1991, S. 216/217

담당자 / 기관_ 연방특임장관 에곤 바; 동독 내각회의 차관 콜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간 기본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서독 연방정부의 연방특임장관 에곤 바가 동독 내각회의 차관 콜에게 전달한 서신이다.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에는 양국의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민족문제’에 관한 입장과 같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양국 간의 국경을 존중할뿐만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과 내적, 외적 자주성을 인정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동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약을 통해 서독이 동독을 독자적인 국가로, 즉 외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서독이 이러한 해석을 공유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곤 바는 서독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평화를 실현하여 그 속에서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작성된 발터 쉘의 서신과 에곤 바의 서신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서신에 대한 상대방의 답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본조약과 관련된 서독 연방정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당시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조약이 기본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출처_ Diemer, Gebhard / Kuhrt, Eberhart.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 Olzog Verlag, München. 1991, S. 220

독일-폴란드 관계-김니치 성에서 열린 서독 총리 콜과 헝가리의 총리 네메트 및
외무장관 호른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 연방수상청; 겐서 외무장관;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총리;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1989년 8월 25일에 열린 헬무트 콜 서독 총리와 네메트 헝가리 총리 간의 실무 회담 중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에 관해 논의된 사항에 포커스를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월 25일 오찬을 겸한 실무회담에서 네메트 헝가리 총리는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네메트 총리는 소련과 폴란드 지도부의 전화통화를 통해 폴란드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탈퇴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폴란드의 상황이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콜 수상은 폴란드에서 발생한 일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유노조가 정당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파로 갈라진 상황이다.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유럽의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서독은 유럽에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체코 그리고 동독의 발전이 아주 중요한데 동독의 경우 어떠한 개혁이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호네커가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언제 개혁을 실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리아는 소련연방의 일부가 되도록 해달라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네메트 총리가 전하였다. 헬무트 콜 수상은 독일이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와 같이 유럽의 일원으로 간주하며 양국 간의 관계가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U1 Un 25 Band 1

감니치 성에서 열린 서독 총리 콜과 헝가리의 총리 네메트 및 외무장관 호른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 연방수상창: 겐서 외무장관; 콜 수상; 네메트 헝가리 총리;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1989년 8월 25일에 열린 헬무트 콜 서독 총리와 네메트 헝가리 총리 간의 실무 회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네메트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의 경제위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현재 헝가리가 고르바초프나 코메콘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방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헬무트 콜 수상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이야기하여 헝가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겐서 외무장관이 확인해 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헝가리가 독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네메트 총리는 1992년까지 헝가리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해 달라고 고르바초프에게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호른 외무장관은 소련과 미국이 군축에 관해 정치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헝가리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독을 제외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독의 외무장관 겐서는 그것이 군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이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m 21-30100 (56) Ge 28 (VS) Band 78, Bl. 296/1-296/5



문서
번호 8

동구권의 개혁추진 국가들과 유럽공동체

1989년 10월 30일

담당자 / 기관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한스-디트리히 젠서 연방 외무장관; 이탈리아 외무장관 에밀리오 콜롬보; 자끄 들로르 의장 내각수반 파스칼 라미;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내용

슈피겔지의 한 기사에서 동유럽 국가들 내 개혁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영향이 해설되었다. 들로르 의장을 포함한 유럽공동체의 일부 대표들은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통일된 독일이 유럽공동체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뒷받침할 것인지 아니면 그 때문에 유럽공동체가 그보다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가능한 해결책으로 단계적 통합모델이 논의되었다.

출처 Der Spiegel vom 30.10.1989, Nr. 44, 43. Jahrgang, S. 184-186.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루돌프 자이터스는 콜 수상에게 1989년 11월 18일의 파리 유럽공동체 국가 및 정부수반 회담 및 외무장관 특별 회담의 준비를 위해, 독일문제 및 동독 내 상황 전개에 대한 3개 서방 전승국과 소련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개 서방 전승국의 재통일에 대한 입장들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는 재통일과정이 완전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민주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그중 가장 명확한 태도로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통일에 관한 미국의 논의에도 전승국 4개국이 독일에 대해 갖는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입장은 이보다 유보적이다. 그들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렵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영국은 프랑스보다도 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처 영국 수상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외무장관 허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그것이 독일인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통일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만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을 뿐이다.

서방의 모든 국가들은 동독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환영하며 서독 연방정부의 대처하는 방식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독일통일은 현재의 시점에서 논의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군사조약이 해소된 이후에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Absorbierung)'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동독의 개혁과정을 지원하여, 그것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30915, 211-68000 Gi 46, Anlage B(212-35400 De 29 Band 1)



문서
번호 10

동독과 유럽공동체 간 관계에 대한 동독의 비공식 문서
1990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유럽공동체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급속한 변혁이 시작된 동독의 정부가 1989년 11월 18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공동체 국가정상회의에 제출한 문건으로 동독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와 유럽공동체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체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헬싱키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이 도입된 여행의 자유는 일시적인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동독은 유럽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며, 동독의 사회질서가 부정되지 않는 선에서 유럽의 분단이 극복되는 것을 지지한다. 현존하는 국경의 틀에서 각자의 동맹에 속할 수 있는 두 개의 독일국가의 존재는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동독은 적극적으로 유럽공동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무역 협정도 가능한 한 빨리 체결되기를 희망한다.

출처_ Auswärtiges Amt. 1990. Umbruch in Europa. Die Ereignisse im 2. Halbjahr 1989. Eine Dokumentation. Bonn. S. 94-96.



문서
번호 12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을 위한 보고서
1990년 2월 27일

담당자 / 기관 수상청: 수상청 (연방수상 공보 담당) 521과 과장 메르테스;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

이 문서는 서독의 외무부가 헬무트 콜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로 폴란드와의 국경과 관련하여 민감한 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의 서부국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그것이 미래 통일된 독일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수상의 국내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상이 먼저 1. 헌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2. 통일된 독일이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폴란드 측이 전후 배상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친선협력조약을 폴란드와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서에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가 정리되어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P 4 Po 30 Band 7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외무부; 동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화폐·사회 공동체 창설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해 작성된 실무안을 전달받은 서독 주재 소련 대사가 이에 대한 소련 외무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실무안은 독일문제의 평화적 해결까지 4개 전승국의 권한이 지속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동독과 서독이 이미 체결한 국제조약과 양자 간 조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유럽공동체의 조약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유럽공동체의 회원이 아닌 국가를 차별하는 것이다.
2.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 조약의 초안이 추후 2+4회담에서 결정될 국제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미리 규정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특히 동 초안에 포함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3조에 따른 단일국가 형성'에 대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조약 초안이 이전의 4개 전승국들의 (특히 재산 및 농지문제와 관련한) 조치 및 결의들에 위배되는 내용이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4. (독일연방 각 부처 및 연방은행 등의) 독일연방공화국 기관들의 동독 내 활동은 동독 내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공동 독일 통화의 도입에 있어 소련 및 다른 국가들, 그리고 동 국가들의 법인 및 자연인들의 금전적 이익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6. 소련은 조약 초안 중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 대한 동독의 의무에 관한 12조 2항에의 더 정확한 정의를 요구한다.
7. 동독에 주둔 중인 소련 군대의 거취에 관한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8. 화폐조약이 독-소 비스무트 주식회사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도 안된다(이 회사는 분단 당시 세계 4위의 우라늄 채굴량을 자랑하였으며, 1991년 12월에 소련에서 독일에 그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
9. 소련과 동독 간의 협력을 규정한 조약을 통해 정해진 사회보장조항이 이 조약을 통해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
10. 이상 언급된 모든 사항들은 2+4회담의 국제적 측면에 해당한다. 이 문제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통일의 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번호 14 본에서 열린 2+4회담(제2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미국, 영국 및 소련 대표단

내용

2+4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제2차 실무자급 회의에서 1차 외무장관급 회담(1990년 5월 6일)이 준비되었다.

참가국들은 독일과의 평화조약 대신에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최종적 규율 및 해소'라는 표현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서독과 동독이 2+4회담 바깥에서 통일된 독일과 관련한 일지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폴란드의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1990년 5월 5일의 본 개최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결정한다(다음 문서 참고).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뵘켈만; 연방 외무장관 겐서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기획실이 연방 외무장관 겐서를 위해 작성한 보고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만큼 독일통일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 때문에 통일독일이 유럽 내에서 경제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소련의 이익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소련이 동독보다 통일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 그로써 소련을 통일의 '방해국이 아니라 지지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이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서 탈퇴한다면 이는 소련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기에는 2000년도까지의 광범위한 경제적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의 산업 수입의 41%는 동독에서 온다. 그 외에 공학적 지식 이전의 상당부분이 동독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반면 동독은 천연가스, 원철 및 납의 100 퍼센트, 그리고 석유의 90 퍼센트를 소련에서 가져온다.

소련은 경제적이지 기술적인 고립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에,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앞서의 소련에 대한 통일독일의 장점을 설명하는 한편, 소련의 (IMF, GATT, OECD,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경제기구로의 편입을 도울 필요가 있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그 밖의 독-소 간 경제적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8 E

문서
번호 16

소련과의 군비 통제 정책에 관한 자문 협약-서독 외무부 (국제적 군축 및 군축 통제 특히 제네바 마소 군축 협상 담당) 220과 보고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 외무부 2A 분과 (군축 및 군축 통제 담당 연방관) 분과장 홀릭 대사; 소련 외무장관 대리 카르포프

내용

이 문서는 군축 및 군축 통제 연방담당관인 홀릭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소련 외무장관 대리 카르포프 및 소련 대표단과 함께 진행한 군비 통제 정책에 관한 자문회의의 내용을 서독 외무부 담당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의 주요 논제는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이었다. 소련 외무장관 대리 카르포프는 소련이 동 조약이 1990년 중 체결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비엔나 군축협상을 포함한 관련 주제에 대해 소련 외무장관 대리 카르포프는 독일통일 및 유럽 내 새로운 안전보장 체제로의 이행에 있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의] 두 동맹 체제의 협력 및 상호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소련은 소련경제가 유럽 체제에 통합되는 것과 더불어서 독-소 간의 경제적 관계도 재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소련군 전력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서방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화학무기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금지협약, 유엔의 군비 통제, 오타와 "Open-Skies" 협상 및 스타트(START, 전략무기 감축 조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 문서에는 그 외 협상 상세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의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이 작성한 것으로 독일의 안전보장정책에 대한 동독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990년 3월 18일 선거 후 구성된 동독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안, 드 메지에르 총리, 외무장관 메켈 그리고 군축국방부장관 에펠만의 개별적 언급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월 18일의 자유총선거 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1990년 4월 12일에 열린 협상에서는 독일 통일이 '전 유럽에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협력의 질서'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나아가 헬싱키협정이 추가적인 구속력을 부여 받아야 하며, 새로운 헬싱키협정 관련 기관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에 있어 "통일된 독일은 전 유럽적 안전보장 체제가 성립될 때까지 그 과도기 동안 군사적 기능에 변화가 있게 될 나토의 회원국으로 될" 것임이 전제되었다. 독일군 전력의 최대 규모 제한에 대한 내용은 비엔나 군축협상에 포함되었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소련의 통신사 타스(TASS)에게 "중립국 독일이라는 이미지는 새 시대 정신에 부응한다기 보다는 과거 진영적 사고에 사로잡힌 이미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서독 Z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에 통합된' 통일 독일군을 그냥 쉽게 창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소련의 안전보장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 국방부장관 에펠만은 '통일된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의 동시 회원국 지위 유지라는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제안을 논외로 해도 좋을 것인지 숙고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의 두 동맹이 존재하는 한 동독 인민군은 현재 동독지역에 계속 존재할 것이다. 서독영토에 나토군이 주둔하는 한, 동독영토에도 소련군은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문서
번호 18

소련 측의 강제노역자 전후배상요구

1990년 4월 30일 추정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법무국 (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연방 외무장관 겐서

내용

(1990년 5월 5일 본 개최 2+4 외무장관급 회담의 준비로 추정되는) 본 문서에서는 소련 측의 강제노역자 관련 전후배상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독 외무부 법무국 (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해 보고하였다. 그에 있어 조약을 통한 구속적 약속을 하지 않으며 미해결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그 협상의 목표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 측의 강제노역자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와 관련해서 전후배상이라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요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문제가 2+4협상 혹은 독-소 간의 광범위한 조약의 협상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소련은 1953년 8월 22일에 몰로토프 소련 외무장관의 (동독에 대한) 성명을 통해 그 이후의 모든 전후배상금의 지급을 포기한 바 있다. (그 성명 이전까지) 지급된 총 배상금은 약 43억 달러에 달했는데, 서방 측 전문가들은 이를 280에서 310억 달러로 추산하기도 한다.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이 폴란드에게 배상규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일은 현재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일 소련이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한 강제노역자 전후배상요구를 제기할 경우, 거의 50년 이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선례가 없다는 점과 독일이 이미 약 2천억 마르크의 배상액 지불 및 상당한 보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6 E

1990년 5월 3일

담당자 / 기관 나토 소속국 각 외무장관; 서독정부 나토 상주 대표 플뢰츠 박사

내용

이 문서는 브뤼셀에 있는 나토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토 회원국들의 분위기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뤼셀에서 열린 1990년 5월 3일의 나토 외무장관급 회담은 독일통일의 안보문제에 대한 자문의 필요하다는 일부 나토 회원국의 의견이 있었기에 개최되었다. 독일문제와 관련해 종전에 나토 회원국 간에 흥분된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는 이제 전반적인 여유있는 자세로 바뀌었다.

모든 회원국들은 2+4회담과 관련해서 나토 자문단(NAC)의 자문이 진행된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는 ‘보고’라는 표현과 ‘자문’이라는 표현 모두를 사용했는데, 후자의 자문은 ‘모든 결정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를 의미했다. 베이커 장관에 따르면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는 2+4회담이 아니라 ‘여기 나토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

모든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들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갖는 데 찬성하였다. 통일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의 동시 회원국 지위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편, 구동독지역에 동독의 군대가 주둔해서는 안된다. 그 과도기 동안 동독영토에 소련군이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0**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연방 수상 헬무트 콜을 위한 회담 의제 준비-1990년 5월 4일자 외무부 회람/1990년 5월 5일 외무부 통지문(Drahterlass)

1990년 5월 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수상청장 자이티스;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등; 연방 경제부; 연방 재무부; 연방 연구·기술부; 연방 환경부

내용

서독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은 1990년 5월 21일까지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준비를 위한 회의가 1990년 5월 2일 외무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다음 주제들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조약에 의한, 또는 정치적으로 혹은 각종 성명에 의거해 기초된 서독-소련-동독 간 각종 관계들의 전환 혹은 지속여부 문제. 독-소 간 양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문제. 동독의 그리고 유럽공동체 내에서 독일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1990년 5월 7일 외무부 통지문(Drahterlass)을 통해 다수의 연방 장관들에게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외무부에서의 논의를 위한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논의되는 의제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21 분실 실장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5월 4일 저녁에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겐셔 서독 외무장관이 만난 회동 중에 나는 대화 내용을 서독 외무부에서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독일통일에 대한 2+4회담이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에 대한 논의의 틀과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이미 동독 수뇌부에게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만일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의 비군사화에 합의할 경우 이 점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그리고 정확히 언제 군축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라고 한다.

그에 대해 겐셔 외무장관은 '아주 이른 시기에'라고 답변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2+4회담이 유럽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1990년도 가을에 예정된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결과를 낼 수 있기 위해 수차례의 외무장관급 2+4회담이 연달아 개최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두 동맹기구의 존재는 이제까지 동·서 간의 힘의 균형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하였다.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갖게 될 경우, 소련에는 강하게 반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 5월 1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는 벌써 "정권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다. 소련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모든 종래의 권한과 네트워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새로운 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수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독일의) 내적 통일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는 못할 것이다.

그에 이어 독일의 통일이 기본법 23조 2항에 따라 (무엇보다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와 같은) 통일의 외적 측면들에 대한 결정과 무관하게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소련 대표단은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 조약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련 측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군사적인 잠재력을 고려할 때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990년 5월 5일 본에서 열린 2+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연설

1990년 5월 5일

담당자 / 기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서독 외무장관 겐서; 동독 외무장관 메켈;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내용

이 문서는 본에서 열린 2+4회담에서 소련 외무장관이 행한 연설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 모두는 함께 ‘미래에 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대도 견딜 수 있을’, ‘정치적·법적이지 실질적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이 더욱 옳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파트너들과 논의해야 한다. 6자회담의 논의 결과는 ‘모든 측면이 고려된’ 문서로 나와야 한다. 즉, 독일의 국경, 독일의 전력, 정치·군사적 지위, 의무 사항들, 과도기 및 연합국 군대의 주둔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이 독일을 둘러싼 유럽의 최종적 평화에 대한 규정을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 규정인 것으로 축소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소련은 이 회담을 통해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나토는 소련에 맞서는 군사 블록이다. 만일 독일 전체가 나토에 속하게 되면, 이러한 적대 진영의 존재가 법적으로 영구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보다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집’을 만들어서 이를 위한 안전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4회담에 동반하여 헬싱키협정 전문가 그룹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헬싱키협정에 기초한 첫 번째 기관으로서 군사적 위협 방지 센터가 설립되어, 전 독일영토에서의 모든 군사적 활동을 통제하고 검사 및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2+4회담은 예를 들어 비엔나 군축협상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

소련은 독일통일의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의회의 구성을 위해서나, 또 안정을 담당할 외국 군대의 주둔과 관련해서나 과도기가 필요하다. 소련이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받는 위치에 몰릴 경우, 그의 정치적 융통성에도 큰 제한이 생기게 될 것이다. 소련국민들은 과거 문제의 종결이 소련의 자공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문서
번호 23

본에서 열린 2+4회담(최초의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5월 6일

담당자 / 기관 겐서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메켈;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내용

이 문서는 본에서 열린 제1차 2+4 외무장관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담 참가국들은 회의상의 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국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폴란드 서부 국경은 1950년의 독-폴 간 쾰리츠조약 및 1970년의 독-폴 간 바르샤바조약에 상응하여 오테르-나이세 강 경계로 하고, 통일된 독일의 영토는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폴란드는 파리에서 열릴 1990년 7월 17일의 3차 외무장관급 회담에 초청되며, 두 독일국가는 지체없이 폴란드와 접촉하여, 파리회담에서 3개국 간에 협의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폴란드 외무부 정치국장은 앞의 회담 중 실무자급 회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 해결책은 전 유럽적 구조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 소련은 절충적 제안에 열린 태도를 보일 것이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24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경제적 측면-의
무부 421과의 정리

1990년 5월 7일

담당자 / 기관 외무부 경제국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무역국가, 유고슬라비아 담당) 421과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경제국에서 통일 이후 소련과의 관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78년 12월 27일의 독-소 간 '경제 및 산업 분야의 장기 협력의 발전과 심화를 위한 협정'을 유지
2. '소련에 조절된 형태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려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프로그램 및 (유동성 위기, 공급 부족, 산업생산 감소와 같은) 소련의 경제적 위기 상황 징후에 대비한 재정적인 지원
3. (동·서독 간)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WWSU)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동독의 소련에 대한 기존 경제적 의무사항을 계속 수행함을 통한 신뢰 구축
4. 독일이 주창한 24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화 및 재정정책적 지원 프로그램(24er-Aktion)에 소련을 포함시키는 안
5. 휴스턴에서 개최될 G7 회의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강조
6. 대(對)공산권수출규제위원회(CoCom)의 규제 완화에 있어 소련이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7.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에서 헬싱키협정의 제도화에 연방정부가 지지를 보내는 것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1990년 5월 7일

담당자 / 기관 나토 서독정부 브뤼셀 상주 대표 호르스트 베히만; 나토 자문단(NAC); 외무부 정치국 카스트롭 국장;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웨스턴

내용

이 문서는 나토 서독정부 브뤼셀 상주 대표 베히만이 1990년 5월 5일 본에서 개최된 2+4 외무장관급 회담에 관한 나토 자문단(NAC)의 보고 내용을 서독 외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당시 나토 자문단에 대한 보고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카스트롭 국장과 영국 외무부 정치국 웨스턴 국장이 담당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토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자문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계속되는 데 동의했다. 카스트롭 국장이 본에서 열린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회담의 논제는 국경문제, 정치·군사적인 문제 및 안전보장문제 그리고 베를린문제 및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 등이었고, 이 회의에서 외무장관들은 독일통일 과정 내 대외적(국제적) 측면에 대한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중 특별히 언급할 것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통일독일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문제와 관해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련의 내부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는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이 동시에 실현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헬싱키협정의 틀을 확충하는 것이 유럽과 독일의 통일에 중요하다고 하였다고 카스트롭 국장은 보고하였다.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웨스턴은 나토 동맹이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해서 ‘매우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하지만 이때 소련을 너무 ‘구석으로 몰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26

유럽공동체와 소련 간 관계-외무부 411과의 회담 논의 준비
1990년 5월 8일

담당자 / 기관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당) 411과

내용

이 문서는 2+4회담을 앞두고 서독 외무부에서 유럽공동체와 소련의 관계가 갖는 의미에 관해 정리·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공동체와 소련 간 관계는 개혁이 추진 중인 중·동유럽 국가들이 유럽공동체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1989년도 말에 서명된 유럽공동체와 소련 간 무역 및 협력협정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중 소련 내 매장된 자원과 관련한 에너지 정책적인 양자의 협력은 특히 중요하며, (소련 자원의 유럽공동체 내) 수입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도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유럽공동체가 소련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련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개혁 조치는 결국 중·동유럽 국가의 개혁 추진에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련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문서
번호 27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1990년 5월 10일
부서별 회의를 위한 외무부의 발제

1990년 5월 9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내용_

헬무트 콜 수상은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중 개최될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마-소 정상회담 이전에 외교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 소련 및 서방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해 서독정부가 고려한 내용들을 전달하였다. 외무부의 소련 담당 213과는 1990년 5월 10일의 부처 간 회의를 위한 쟁점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1990년 5월 21일에 수상청에도 이를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는 부처 간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 조약에 의한, 또는 정치적으로 혹은 각종 성명에 의거해 기초된 독-소 간 각종 관계들의 지속 여부 문제: 양국 간의 '공동 성명'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소련 간의 모든 조약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여기에서 통일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동일한 국가를 의미한다. 동독의 소련에 대한 기존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뢰원칙에 따라 계속 그 준수가 보장될 것이다. 양자 간 협정은 특히 그에 시간적 제한이 있었던 경우 연장이 검토되었다(이하 문서에서는 검토의 대상이 된 경제 협력, 학술 및 기술 협력, 환경 및 핵원자로 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협정들이 열거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담당자 / 기관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타라센코;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이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겸 소련 외무장관 자문역인 타라센코와의 대화 내용을 연방 외무장관 겐셔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타라센코는 1990년 5월 5일의 본 개최 2+4 외무장관급 회담의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를 고려한 정치·군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2개 문제는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베이커 미 외무장관의 나토의 정치적 변화 및 헬싱키협정의 확충에 대한 발언을 소련에 전달하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유럽 내 통제 되지 않는 안전보장 정책적 변화를 방지할 공식적인 안전망으로서 '전쟁 위험 방지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 내적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아마도 그가 발틱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치트론 국장은 추측하였다. 이 회의에 우선 '2+4' 당사국만이 참여하고, 나중에는 헬싱키협정의 35개국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타라센코는 강조하였다.

헬싱키협정 안전보장체제와 관련해서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각 참가국에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유럽에 있어 '미니유엔체제'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스타트, 오타와 오픈 스카이 회담,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 등의) 군축협상에서의 지연 때문에 소련 군부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베이커 미 외무장관 간의 모스크바 합의를 (소련 군부는)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미-소 간의 관계는 신뢰에 기반한 상태이며, 부시-고르바초프 간의 정상회담 후에는 군축협상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리투아니아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지만', 중앙정부의 체면을 고려해서 인내를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문서
번호 29

폴란드-독일 간 국경 확정-동독 외무부의 폴란드 측 조약 초안에 대한 반응
1990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법무·조약국

내용_

동독 외무부 법무·조약국은 폴란드-독일 간 국경에 대한 폴란드 측 조약 초안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중요한 것은 폴란드 서부 국경을 오데르-나이세 강 경계로 확정하는 것이다. 폴란드 측 조약 초안에서는, 먼저 전문에서 그에 선행하는 1945년 포츠담선언, 1950년의 동독-폴란드 간 쾰리츠조약, 1951년 동독-폴란드 간 프랑크푸르트 문서, 1970년의 동독-폴란드 간 바르샤바조약 및 1989년 동독-폴란드 간 오더부흐트조약을 언급한 후, 1조에서 오데르-나이세 강 경계를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선으로 정하고 있다. 동독은 이에 동의하면서 국경의 명확한 경계를 조약 내에 포함해 국경의 확정을 이루자고 제안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30 2+4조약-동독 외무부의 조약문 초안
1990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부 법무·조약국

내용

동독 외무부 법무·조약국은 독일의 지위와 관련해 2+4조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였다.

(1) 독일의 평화의무(Friedensgarantie) (2) 국경 확정 (3) 국제법적 기본원칙의 강화 (4) 미래 독일국가의 정치·군사적 지위가 그것이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 독일은 자유롭고 법치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모든 독일 전투병력은 감축되어야 하며, 독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이 점은 동일하다. 국경문제에 대해 세 가지 상이한 표현이 제안되었다. 전 유럽적 안전보장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독일은 과도기 중에 자유로운 동맹결성권을 갖지만, 구동독지역에 나토의 군대가 주둔해서는 안된다. 이 과도기 중 독일 군대가 지역방위를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 이 군대는 독일 연방군이나 나토에 속해서는 안된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990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군축·국방부차관 비초랙; 나토 방위·국방정책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군축·국방부차관 비초랙이 국방부장관 에펠만을 대신해서 동독의 대표로 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독일통일 과정을 통해 본 유럽 내 군사 및 안전보장 정책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의 원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새로운 개혁정부는 자유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및 독-독 간의 통일 그리고 독일통일이 전 유럽적 통합과정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동독은 소련과 '인근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의 안전보장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그 때문에 나토 영역이 동독에 확대되거나 혹은 나토군이 동독영토에 주둔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서독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동독 인민군은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의 두 동맹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속할 것이다. 동독영토에 군사적 진공상태가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동독 인민군의 신속한 해체를 통해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화 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력과 장비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동·서독 군대는 상호 간 선입견과 적대적 이미지를 서서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 군대는 두 군사동맹 간에 가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양측의 정보 및 자문 네트워크는 상호 이용이 가능해져야 한다. 동독 국방부장관 에펠만은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에 대해 확실히 정해지기 전에는 기본법 23조에 따른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서독영토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동독영토에도 소련군은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문서 번호 32 2+4회담 협상 개시에 있어 소련 측의 입장 (및 그에 대한 독일 측 대응안)-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의 보고

1990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

내용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과장 람바흐는 본 보고에서, 소련이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에서 1990년도 가을로 예상된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을 다룰 것인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소련은 진영 체제의 전환이 완성될 때까지 안전 보장을 담당할 공식적인 안전망으로서 '전쟁 위험 방지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람바흐 과장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에 대한 소련 측 입장은 협상 가능하다고 보았다.

소련은 독일의 통일이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며 통일의 지연이 소련의 이익에 상치하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2+4회담에 있어 서독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협상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야 할 것이다. 4개 전승국의 독일 전체 및 베를린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의 소멸 그리고 특히 국경 및 베를린의 지위에 대한 문제 해결; 독일통일과 유럽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서로 관련짓기; 비엔나 군축협상을 통해 주둔 군대 문제를 완화시킴;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1990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타라센코;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 연방 외
무장관 겐서

내용

서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치트론은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겸 소련 외무장관 자문역인
타라센코와의 대화 내용을 연방 외무장관 겐서에게 보고하였다(1990년 5월 10일의 대화
를 참조).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타라센코는 발트해지역의 소련 내 분리주의 문제가 소
련의 핵심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날이 갈수록
비현실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도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경제적 상
황이다. 시장경제의 도입에 대한 노력이 결국 새로운 독재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에 귀
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급격한 경제개혁을 하는 것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소련 외무부 기획실 실장 타라센코는 1990년 5월 15일
의 소련 공산당 창건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여기에서
러시아 공산당이 설립됨을 통해 소련 공산당 및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인 자신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제 외교적 측면에서도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다. 고르바초프 총
서기장은 국제 외교적 측면에서 헬싱키협정 내 분쟁방지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성공을
거두어야만 한다. 그러한 성공이 가능할 때에야 소련은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영국 외무장관 허드의 회담-외무부 연방장관
실의 보고

1990년 5월 15일

담당자 / 기관 _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영국 외무장관 더글라스 허드; 외무부 외
무장관실 실장 대리 뢰펠부르크

내용 _

영국 외무장관 허드는 다음의 2+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4번째 의제인 '4개 전승국의 권
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한 영국 외무장관 허드의 질의에 대해, 겐셔 외무장관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
멸과 관련한) 과도기가 소련군뿐만 아니라 베를린에 주둔 중인 미, 영, 프랑스군에도 적용
된다고 답변하였다. 자유로운 동맹 선택권의 원칙은 주권적 문제이며 헬싱키협정에도 그렇
게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토
론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어떻게 소련의 안전보장 이익을 고려해 줄 수 있을지를 다루면
될 것이다.

겐셔 외무장관은 소련의 헬싱키협정에서의 이해 관계를 비엔나 군축협상을 위해 이용할 것
을 제안하였다. 그는 소련 측이 제안한 분쟁 및 충돌에 대한 미연의 방지 그리고 그 중재
를 위한 센터는 독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향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폴란드와의 국경문제 논의에 있어 동독 내에는 드 메지에르 총리와 메켈 동독 외무
장관 간에 큰 의견차가 존재한다. 이는 주로 국경인정 문제와 관련된다. 겐셔 외무장관은
국가조약 체결 이후 메켈 동독 외무장관과 함께 바르샤바로 갈 용의가 있다.

리투아니아가 독립선언 발표를 유예한다고 한 것에 대해 유럽공동체와 미국은 환영을 표
시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그에 따라 리투아니아 총리 프룬스키네를 초청하고 경
제 봉쇄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루마니아, 나토 정상회담 및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논의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출처 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054 E

담당자 / 기관_ 소련 외무부 국장 대리 옐리자르쥬프;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내용_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는 자신과 소련 측에서 첫 2+4 외무장관급 회담에 참가 하였던 소련 외무부 국장 대리 옐리자르쥬프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 서독 외무부에 보고 하였다. 소련 외무부 국장 대리 옐리자르쥬프는 독일통일의 양상에 대해 소련의 일반인들 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소련의 국내 정치적으로 상황을 중시할 필요 가 있다. 소련의 외무장관이 교체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련 외무장관은 4개 전 승국의 독일 전체 및 베를린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의 소멸과 관련하여 과도기를 제한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해 소련 외무부 국장 대리 옐리자르쥬프는 명확한 내용의 언급을 피했다. 여기에는 분명 심리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는 해석하였 다. 그 외에도 군축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 외무부 국장 대리 옐리자르쥬프는 (나토 영역의 동구권 확대를 부인한) ‘겐서 계획’ 이 독일 국내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지지받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모스크 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는 동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소 련 외무부의 제3 유럽분과는 (통일독일의) 나토의 가맹국 지위 인정에 대해 더 이상 근본 적인 거부 입장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소련 자체의 안전보장 이익을 어 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혹은 이 점과 관련해 소련 내 일반에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소련 외무부 국장 대리 옐리자르쥬프는 폴란드 서부 국경문제는 국경문제의 일부분에 불 과하다고 발언했지만, 그가 다른 국경문제라는 표현으로 의미한 바는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한 국제적 규율이 요구된다고 발언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문서
번호 36

2+4회담-유럽 내 안전보장체제와 관련된 정치·군사적 문제-서독 외무부 201과의
설명

1990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내용

서독 외무부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은 유럽 내 적합한 안전보장체제에 관련한 이제까지의 2+4협상 중의 입장들을 2개 보고문을 통해 정리하였다.

2+4회담의 틀 안에서 안전보장문제는 언급될 수 있지만, 이들은 (비엔나 군축협상, 헬싱키협정, 양자 간 협상과 같은) 각각에 적절한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련 외무부장관의 제안처럼, 정치·군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2+4회담의 의제들을 하나의 해결안에 모아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의 안에서는 헬싱키협정 안전보장체제를 제도화하되, 이때 나토나 유럽공동체 체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또한 통일독일을 비동맹화하거나 중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 나토의 군사적 영향의 동구권으로의 확대 금지 및 나토의 정치적 성격의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헬싱키협정 체제의 기본 개념 및 그 작동을 위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연방 외무장관 겐서, 연방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라인하르트 쉬베페;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연방 외무장관 겐서; 연방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 미국 하원

내용

이 문서는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라인하르트 쉬베페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연방 외무장관 겐서, 연방 국방부장관 슈톨텐베르크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과 미 하원의원들과의 면담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방문에서 콜 수상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 남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독일의 주권에 대한 제한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럴 일이 있다면 아주 한정적인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콜 수상은 나아가 헬싱키협정은 나토에 대한 보완이지 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통일된 독일은 오데르-나이세 강이 국경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것을 연방의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독일통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통일이 초기에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3-4년 후에 독일의 동부지역은 풍요로운 지역(ein blühendes Land)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미래 수도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콜 수상은 소련군이 동독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답하였다.

반면 그는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미군이 독일과 유럽에 지속적으로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토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및 소련의 미래와 관련하여 그는 고르바초프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38 모스크바에서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와 소련 외무차관 크윈진스키 간의 회담(1990년 5월 17일)
1990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 소련 외무차관 크윈진스키

내용

이 문서는 소련 외무차관 크윈진스키와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가 모스크바에서 만나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소련의 입장을 논의한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크윈진스키 차관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소련의 안보와 관련된 소련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소련이 전승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과도기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소련의 입장은 동서독 간의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이 실현된 후에는 동독이 더 이상 자율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크윈진스키는 나아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4회담의 최종문서에는 반드시 군축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 포함되어야 하며, 소련군의 철수 이후 독일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문서
번호 39

포츠담협정-2+4회담의 틀 속에서 소련 측의 안전보장 이익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하여

1990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내용_

이 문서는 2+4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독 외무부가 2+4의 틀에서 1945년 8월 2일에 발표된 포츠담협정과 안보와 관련된 소련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한 실무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개 전승국이 포츠담선언에서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서방의 전승 3개국은 오래 전부터 이 결정을 인용하지 않았다. 소련은 이와는 달리 이 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며 중요하다는 점을 최근에도 강조하였다. 그 때문에 페이지에서는 포츠담협정의 어느 부분이 불필요해졌는지 그리고 2+4회담의 일환으로 소련 측의 안보 관련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외무부 실무팀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포츠담협정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 규율 대상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단지 몇 개의 목표 및 합의내용만이 아직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속될 수 있다. 그 하나가 ‘정의롭고도 지속적인 평화의 구축’(1장 6절) 규정이고, 또 다른 것은 ‘영토문제의 중국적인 규정’에 대한 4장(동북 프로이센 영토 관련) 및 9장(오데르-나이세 강 영역 관련)의 규정들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0E

서독정부가 2+4회담의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통일을 선언할 경우 그것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에 대해

1990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의 내부문서로 2+4회담의 틀에서 서독정부가 일방적인 성명으로 독일통일을 발표할 경우 그것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외무부는 이 문제를 3가지 관점에서 고려하였다.

첫째, 한 국가가 일방적인 성명을 발표했을 경우 그 국제법적 구속력은 한편으로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Estoppel-Prinzip,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명을 발표한 국가가 얼마나 국제법적 구속력을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있는지에도 달려 있다.

둘째, 2+4회담의 틀에서 서독 외무부가 통일독일을 선언했 때 그것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들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kumulative Voraussetzungen). a) 통일된 독일과 서독 간의 동일성 b) 그 일방적인 선언이 월권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이를 위해 다음의 두가지 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 4개 전승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서독 외무부 단독으로도 통일된 독일에 대한 성명으로써 발표할 수 있다. b) 4개 전승국의 권한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들 4개 전승국의 승인 혹은 제3국과 4개 전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서독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이 이러한 선언에 동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0E

1990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가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해 소련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석·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문제에 대한 소련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 내의 일부에서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이 약화되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화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여론의 노선 변경이 준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내 보수 강경파인 리가초프 및 군 수뇌부를 상대로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는 데 일부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통일된 독일의 나토잔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정도까지 발언하였고,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도 자신의 기존 반대 입장을 완화하였다. 그에 반해 군 수뇌부들은 그것이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통일독일의 나토잔류에 관한 긍정적 여론을 이끄는 선도자적 역할을 맡은 것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특히 고르바초프의 자문인 팔린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군사 전문가 바테닌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련의 언론 또한 최근 통일독일의 나토잔류 문제를 비교적 온건하게 다루고 있으며 중립국화를 거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의 공식노선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소련이 최종적으로 통일독일의 나토잔류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2+4회담에서 안보와 관련하여 소련이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총괄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는 특히 유럽 전체적인 안보구조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4 E



문서
번호 42

모스크바에서 열린 서독 외무부차관 라우텐술라거와 소련 외무장관 대리 오브민스키 간의 (경제 및 무역 문제에 관한) 2차 자문회의-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5월 22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차관 라우텐술라거; 소련 외무장관 대리 오브민스키;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연방 경제부; 연방 재무부

내용

이 문서는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서독 외무부차관 라우텐술라거와 소련 외무장관 대리 오브민스키 간의 (경제 및 무역 문제에 관한) 2차 자문회의에 대해 본부에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 측은 먼저 세금, 공과금, 사회적 문제, 재정적 지원 조치, 유럽공동체의 표준규정 등 1차 자문회의에서 제기했던 질의에 대한 서독 측의 답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3차 자문회의는 1990년 6월 19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 (동·서독 간)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WWSU)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동독의 소련에 대한 기존 경제적 의무사항을 계속 수행함을 통한 신뢰 보장(Vertrauensschutz) 문제
- 비차별 조항 (혹은 소련과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의 우선권) 문제: 이 사항을 위의 신뢰보장 논의에 부응해 적용해야 한다.
- 재정 문제: 무엇보다 소련 측의 동독 내 지분 및 동독 내 소련 군인들의 (3,000-7,000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예금액의 환전이 문제가 되었다.
- 기존 국제법적 관계를 서독-동독-소련의 3자 관계로 만드는 문제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부 외무장관 대리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롭; 미국 참사관 조엘릭;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등

내용

이 문서는 2+4회담의 틀에서 진행된 제3차 실무자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특히 통일된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측이 제출한 초안은 통일독일이 주권국가임을 확인하는 한편 베를린의 지위 및 폴란드-독일 간 양국 국경의 확정 및 그 종결적 효력에 대한 조약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미국 그리고 서독정부 대표들이 전체적인 동의를 표한 것에 반해, 소련은 위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도 포괄하는 방안만이 해결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는 평화적 독일에 대한 보장, 미래 독일국가의 정치·군사적 지위에 대한 확인 및 생화학 및 핵무기의 포기 등이 포함되었다.

서방 측 전승국들과의 교감 아래 서독은 통일독일의 지위는 동서독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독정부가 소련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 국경문제가 논의되었다. 서독은 동서독의 의회에서 오데르-나이세 강 경계로 국경을 확정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의결하고 통일 이후 최종 국경조약의 작업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본 3차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1990년 7월 17일의 3차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이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독과 동독 그리고 폴란드 간의 3차 회담은 추후 베를린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비에트 사회
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 소속 통역자 쉘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5월 23일 제네바에서 겐서 서독 연방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
무장관이 2차례의 단독회동에서 나눈 대화에 관해 통역관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회의에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2+4협상에 있어 소련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
고자 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간에 개최된 마-소 정상회담 기
간 중 본인과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간의 회담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인상
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상당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였다(문서에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회의의 주요 의제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1990년 5월 5일의 본 개최
2+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언급한 바 있던 '재정적 문제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겐서 외무장관: 이미 언급했던 50억 마르크의 차관 지급과 관련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
다." 다만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서 국가의 지급보증 문제를 아직 논의해야만 한다. 하지
만 이 문제는 외무장관과 연방 수상이 잘 준비해 처리할 것이다. 기타 아직 그렇게 시급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추가 차관과 관련해서 다른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다.
2+4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기 쉬워질 것이다.

세바르드나제: 서독정부가 소련의 어려움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조치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소련 간의
우호적인 양자 관계는 전 유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두 사람은 독일의 분단이 '많은 금전적, 감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동·서 간 대결구도 때문에 소련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비용을 치루어야 했다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양국 대표단; 서독 외무부 21 분과 과장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5월 23일 제네바에서 겐셔 서독 연방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2차례의 단독회동에서 나눈 대화에 대한 서독 외무부 21국의 분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먼저 독일통일 및 2+4회담에 대한 소련 측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독일통일의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에 대한 규정이 '시기적으로 동시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1990년 11월 19일에 파리에서 열릴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기본 원칙들을 하나의 '규정 모음'에 담은 빠른 합의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최종적인 소멸은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성립하고 실현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먼저 독일에 통일된 하나의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고 2개월이 지난 후에 1+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폐지가 2+4회담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전력 감축 문제 및 그 경제적 측면 등을 포함한 점령군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시간을 요하며, 소유권의 사회화 조치 등과 같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점령군에 의해 내려진 조치의 합법성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소련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독일의 군사동맹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겐셔 외무장관은 독일은 새로운 유럽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에 함께 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독일을 특수한 사례로 취급하는 것은 그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헬싱키협정 최종합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군축 및 전력 제한문제가 모든 국가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독일도 그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그에 대한 논의를 소련이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2+4회담의 틀이 아니라 비엔나 군축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4개 전승국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군대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과도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1990년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사소한 작은 문제들로 인해 협상이 방향을 상실하고 그 결과 역사적 진행과정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통일의 대외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전승국의 권한 소멸에 대한 문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외무장관은 앞으로 전문가, 실무자 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와 미국 2+4협상 담당 참사관 조엘릭의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의 소련 방문에 대한 대화-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의
보고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연방 외무장관 겐서;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로버트 B. 조엘릭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장관실 실장 엘베가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의 1990년 5월 15일부터
1990년 5월 19일까지의 소련 방문에 대해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겸 2+4협상 담
당 참사관 조엘릭과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 방문 중 베이커 미 외무장관은 소련 측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발언하면서
도, 다음 3개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였다고 한다: 1. 통일독일의 특수한 지위 불가, 2. 소련
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독일통일을 통해 소련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 3. 독일통일 과정과 유럽의 발전이 반드시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음.

베이커 장관은 나아가 소련이 안고 있는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9개 사항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거기에는 유럽에 주둔한 재래식 병력에 관한 비엔나에서의 협상문제, 단거리 핵무기
에 관한 협상의 의지, 통일된 독일에 생화학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 동독지역에 나토군을
주둔시키지 않는 것,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에게 충분한 과도기를 주는 것, 나토 전략의
재검토, 국경문제의 해결, 유럽안보협력기구 헬싱키 프로세스의 제도 및 심화, 실질적인 경
제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소련 측은 그중에서도 나토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소련은 포츠담협
정에 따른 전승국의 권한 문제 및 독일문제의 평화조약을 통한 해결이 경우에 따라 유럽
의 다른 국가들의 함께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럽 내 새로운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위한
일종의 '백지 수표'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나아가 미국이 소련에
200억불 규모의 국제적 차관을 제공하는 것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 메켈 동독 외무장관; 서독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텔치 국장

내용

이 문서는 모스크바에서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을 방문한 후 텔치 국장이 동베를린을 방문하여 동독의 메켈 외무장관과 소련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입장에 대해 나눈 대화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텔치 국장은 소련에 경제 및 재정위기가 닥쳤으며 지불불능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콜 수상이 소련에 대해 50억 마르크 상당의 단기 여신 및 220에서 500억 마르크 상당의 장기 은행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으며, 콜 수상은 그를 통해 소련이 2+4협상에서 최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길 기대했다고 했다. 그리고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달했다.

텔치 국장과 메켈 외무장관은 모두 소련 군대의 동독지역에서의 철수에 따르는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서독정부는 소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서독주민들이 그에 비판적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미온적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메켈 외무장관은 동독과 소련 간의 경제적 관계는 초기에 동독-소련 간의 양자 관계를 통해, 나중에는 서독을 포함한 3자 관계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동독과 소련 간에 존재하는 모든 요구사항 및 의무들을 서독이 한꺼번에 넘겨 받을 수는 없다는 시각을 공유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가입 여부 및 핵무기 체제의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들이 논의되었다. 텔치 국장과 메켈 외무장관은 소련의 이익이 고려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48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소련 방문-동독 외무장관에 대한 주 소련 동독 대사의 보고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및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과 회담한 것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동독 대사가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앞으로 결코 독일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였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으로 잔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서방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미테랑 대통령 또한 통일독일이 나토 산하 정치 기구에 회원국이 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토 군사동맹에 잔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유럽통합을 위한 비전들이 논의되었다. 프랑스 측의 유럽 국가연합 아이디어에 대해 소련 측은 헬싱키협정에 기초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미국 외무장관 제임스 A. 베이커; 서독 외
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서독 외무부 공보담당 013과 흐로보크;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로버트 B. 조엘락; 미국 외무부 유럽 및 캐나다 정책 담당 국장 세이츠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본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베이커 미 외
무장관 간의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베이커 장관은 먼저 1990년 5월 23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
관과의 회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 회의에서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
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적 측면들보다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베이
커 장관은 전했다. 통일된 독일의 나토잔류 문제는 소련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나,
겐서 외무장관은 소련이 결국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았다. 소련은 바르샤바조약이 유
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소련이 나토에 가입하는 안에 대해 언급하
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소련은 서방으로부터 제공될 차관과 관련해 특히 독일에 대해
일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베이커 미 외무장관은 서방 측이 ‘남은 카드들’ 적시적소에 상호 협의 속에서 내놓
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일 독일군의 전력 제한문제나 소련과 독일 혹은 소련
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의 관할 영역이 동독영토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소련 군대의 과도기 중
동독지역 주둔 등의 문제도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베이커 미 외무장관은 소련이
2+4회담의 틀 안에서는 안전보장 정책과 군축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이 문서에는 소련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과 서방 측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번호 50 본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역 스킴우크로프트의 회담-외무부 연방장관실의 보고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역 스킴우크로프트;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유럽 및 소련 문제 담당 실장 블랙월;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가 작성한 것으로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의 회담이 있었던 1990년 5월 25일에 열린 겐셔 장관과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 스킴우크로프트 간에 열린 회담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엘베 실장은 무엇보다 스킴우크로프트가 헬싱키협정 협상 초기에 미국은 이 협상이 가져올 여파와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오판했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겐셔는 상황을 더 정확한 판단하였다고 하였다. 스킴우크로프트는 이제 헬싱키협정의 제도화 문제 및 특히 소련 측 제안에 따른 헬싱키협정 내 분쟁방지센터 설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가 군사적 과제를 수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2+4회담 실무그룹 울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2+4회담 실무그룹 소속 울리우스 게오르크 루이가 작성한 보고로 2+4회담에서 논의될 베를린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담의 4번째 의제-4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 이 회담의 결과는 베를린에 관한 4자 혹은 6자회담 성명으로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정부가 최종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독일 전역을 하나로 인정하는 총괄적인 성명을 작성하는 것이다. 통일과 함께 전승국 권한 및 책임이 소멸되어야 하며, 그 처리방식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규정하도록 한다. 반면에 소련은 전 독일 의회 및 정부가 수립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베를린에 대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이 소멸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생각하고 있다.

한편 그 2번째 의제는 ‘정치·군사적 문제’이다: 서방군대, 소련군 및 독일군의 베를린 주둔 연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보장 정책적 해결안이나 양자 간 협정이 필요하다. 베를린의 동맹 소속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3번째 의제는 ‘베를린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 2번째 및 4번째 의제와 독립된 별개의 논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그 외 각 의제들에 대한 상세한 논점들이 정리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동·서독 외무장관 간 협의위원회 구성-메켈 외무장관과 겐서 외무장관의 동베를린 회의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 메켈 동독 외무장관; 겐서 서독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겐서 서독 외무장관이 동베를린에서 메켈 동독 외무장관 및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그리고 그 외 여러 정치인들을 만났던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의 외무장관은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겐서 장관은 소련이 원하는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적대적이지 군사적인 대립 관계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발언의 논지였다. 그는 런던에서 열리는 7월 초의 나토 정상회담에서 전략의 변화가 제시되길 기대하며, 소련 외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헬싱키협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다수의 헬싱키협정 기구를 베를린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폴란드와 독일 간의 국경조약과 관련하여 겐서 외무장관은 연방 수상, 기독교민주당 연방 의회 원내교섭단체 그리고 폴란드정부 모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겐서 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1990년 6월 22일의 2+4회담 틀에서 열리는 베를린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독일의 군사적 지위 및 베를린 지위의 변화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겐서 장관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에 소련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대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겐서 외무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2+4협상 이후에는 통일독일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과도기적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독일의 통일과 독일의 주권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두 외무부의 교류위원회 산하에 다양한 실무단들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거기에는 군비통제 및 군축; 유엔; 경제 및 남북문제; 유럽공동체; 외국 문화정책; 법무 및 영사문제; 행정적 문제 등을 담당하는 실무단들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이 문서의 부록에서는 동·서독은 외국에서 하나의 국가로서 대표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40

문서
번호 53

1990년 6월 9일 개최 실무자급 2+4회담의 논의 주제안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6월 9일에 개최될 실무자급 2+4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제안된 주제들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구조 및 체제; 국경문제 처리의 원칙; 1990년 6월 22일 개최 외무장관급 회담 준비; 동 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 발표 준비.

1990년 6월 22일에 개최될 외무장관급 2+4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군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국제법적 최종 합의 규정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결정, 국경문제 처리 원칙,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최종적 규율 및 해소를 위한 실무단 투입, 그리고 언론 보도 관련 결정.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동독과 서독 및 폴란드 간의 국경조약이 제안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당사국 간의 협의 내용을 다른 2+4회담 참가국들에 전달하며, 그것을 형식상으로 2+4회담 합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 제안되었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독일의 영토가 서독 및 동독 그리고 베를린이 될 것이며, 양국은 또한 독일영토의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으며 통일된 독일의 헌법에 이에 상응한 내용으로 변경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54

통일된 유럽 내의 통일독일-콜 수상이 미국의 독일위원회에서 행한 연설
1990년 6월 5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동독;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나토; 남·중·동유럽 국가들; 유럽공동체; 헬싱키회의

내용

이 문서는 콜 수상이 미국의 독일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그 주제는 독일통일과 독-미 간 관계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이래 최근 1989-1990년도까지 미국은 독일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었다. 지금 현재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는 것은 독일인들에게 ‘행운’이며, 독일인들은 미국인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독일인들은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앞으로 결코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것이며, 나토의 동맹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방 세계의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독일은 연방국가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 현재 동독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통일과 유럽의 통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는 12월에는 유럽연합 경제화폐연합과 정치적인 ‘국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회의가 동시에 개최될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야만 하며 결국에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간의 더욱 강화된 경제적·정치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13.06.1990, Nr. 74, S. 638-641.

문서
번호 55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간에 개최된 미-소 워싱턴 정상회담의 평가-서독 외무부 (미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6월 5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외무부 (미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 과장 폰 몰트케;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미국 및 부속 카리브해 부속지역, 독-미 간 사회·문화·정보정책적 협력 담당) 204과 과장 폰 몰트케가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간에 개최된 미-소 워싱턴 정상회담에 관해서 보고한 것이다. 그는 이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새로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내용적으로도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담에서는 독일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다. 문제에 대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부시 대통령은 서독정부의 핵심적 관심사인 완전한 주권, 통일 시점 및 자유로운 동맹 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서독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9가지 사항을 거론하였다. 거기에는 유럽에 주둔한 재래식 병력에 관한 비엔나에서의 협상문제, 단거리 핵무기에 관한 협상의 의지, 통일된 독일에 생화학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 동독지역에 나토군을 주둔시키지 않는 것,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에게 충분한 과도기를 주는 것, 나토 전략의 재검토, 국경문제의 해결, 유럽안보협력기구 헬싱키 프로세스의 제도 및 심화, 실질적인 경제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고르바초프는 통일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 회원국의 지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및 4대 전승국의 권한이 소멸하기 전에 오랜 과도기를 설정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하였다. 2+4협상의 완료 여부는 헬싱키협정의 최초 제도화 및 그에 상응하는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에서의 성명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군축문제, 양자 간 협의 내용, 지역문제 및 미-소 간 체결된 협정 목록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즈;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로버트 B. 조엘릭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6월 9일에 개최될 2+4회담의 4차 실무자급 회의 및 1990년 6월 22일의 2차 외무장관급 회의의 준비를 위해 개최된 자문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조엘릭이 먼저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간에 개최된 마-소 워싱턴 정상회담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는 소련 측이 4대 전승국의 권한 소멸과 관련하여 과도기를 갖는 것을 독일통일 과정과 유럽통합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고르바초프가 통일독일의 동맹 소속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자세한 논의에 이르지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는 소련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전체 회의의 핵심적인 안건이 되었다고 하였다. 재정적 지원은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의에서 모든 동서문제가 2+4협상을 벗어나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베이커 장관은 그에 대해 독일을 특수한 단일케이스로 만들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소련 또한 유럽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조엘릭은 나아가 마-소 두 정상 간의 회담 내용 및 외무장관 간 회담의 골자를 7개항으로 정리하였다. [문서 내용 참조]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은 자신의 모스크바에서의 소련 외무장관 대리 크위진스키 등과의 대화에 대해 보고하였다. 소련 외무장관 대리 크위진스키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과도기, 장래 독일연방군의 전력 그리고 통일된 독일의 나토잔류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있었던 것은 크위진스키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관계를 협력, 연대 그리고 공동성명 등을 통해 공식적인 관계로 확대하자고 한 것이었다.

곧 개최될 2+4회담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3개 문서가 제출되었다. 1. (미국 측) 결정의 시점과 순서에 대해 2. (프랑스 측)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대해 3. (서독 측) 국경문제에 대해 [이하에는 위 3개 문서에 대한 토론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3 E

문서
번호 57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의 회담-서독 외무부 21 분과의 보
고서

1990년 6월 5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미국 외무장관 제임스 A. 베이커; 서독 외
무부 21 분과 과장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이 서독의 겐서 외무장관을 만나서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사이에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미-소 정상회담 기간 중에 열린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전달한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 전승국의 권한이 소멸하게 될 과도기에 대해 더 상세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바르드
나제 장관은 소련이 (통일독일) 연방군의 전력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소련이 독일의 나토잔류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최초의 군축 협정을 종결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단지 독일 측이 그에 상응하는 의사만 표시하면 족하다고 한다.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소련 측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
것이 상호 신뢰구축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구체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동독사람들이' 서독정부가 너무 조속한 일시에 (전체
독일에서의) 선거를 서두른다고 불평한다고 전달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번호 58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

1990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기본법 23조 2항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내용 및 시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통일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관점과 헌법적 관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외무부의 조사결과는 동독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현 정부가 가입을 선언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법 23조 2항의 규정 내용은 헌법적 단일체의 형성에 대한 것인데, 이는 개념적이지 시간적으로 국가적 단일체가 선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국제법적·헌법적 관점 양자 모두에서 국가적 단일체의 형성은 가입에 의해 실현되며, 이때 가입과 가입 선언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입 선언과 동시에 가입이 이루어진다. 이때 가입 선언상의 표현이 국가적 단일체의 형성 시점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 문서집에 포함된 1990년 7월 20일의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해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 문서를 참고)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2E

담당자 / 기관 서독 겐셔 외무장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서독 외무부 국장 회의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장 회의이 작성한 것으로 서독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코펜하겐에서 만나 나눈 대화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간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소 워싱턴 정상회담이 양국 간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함께 합의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함께 체결된 무역협정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미소가 서로 이해를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결정은 6개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함께 내릴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동맹의 체제전환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합의점이 찾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동맹국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체제전환을 실현할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유럽에서 안전보장체제를 수립하는 데 힘을 모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 후에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보다 과도기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설명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독일의 동맹자유 선택권에 대한 세바르드나제 장관 발언의 진의를 물었고, 이에 대해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측면부터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의 두 동맹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이런 변화로 인해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세바르드나제는 동의하였다. 나아가 그는 다음 번의 군축협상에서 서독정부는 서독 연방군의 최대 전력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이 문제는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독일을 별도의 사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이에 대해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1990년도에 전래 없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8 E



문서
번호 60

‘(스코틀랜드) 턴베리로부터의 소식. 1990년 6월 7-8일에 열린 나토 자문단(NAC) 외무장관급 회의의 커뮤니케

1990년 6월 8일

담당자 / 기관 나토 소속국 외무장관들; 연방정부 언론공보처

내용

이 문서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나토 자문단 외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커뮤니케이다. 이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새로운 유럽 내 평화적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소련 및 모든 유럽국가들에 대해 ‘우정과 협력의’ 손을 내민다고 발언하였다. 이들은 또한 모스크바에서의 1990년 6월 7일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성명을 환영하였다. 나아가 헬싱키협정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또 제도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비엔나 군축협상을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하며, 독일통일이 유럽 내 안정에 ‘본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커뮤니케 상세 내용은 이하 문서를 참조]

출처 Presse-und Informationsdienst der Bundesregierung. Bulletin Nr. 75 (13.6.1990). S. 645f. aus: http://www.nato.diplo.de/contentblob/1927156/Daten/185443/1990_06_MinTag_DownlDat.pdf (Stand: 04.12.2015)

1990년 6월 8일

담당자 / 기관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

내용

이 문서는 런던 주재 서독 대사 폰 리히트호펜이 소련 담당관 헤만스로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처 영국 총리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회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르바초프가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내용을 전달하였다. 대처 영국 총리는 나토의 유럽에서의 방위능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설령 지금의 중·동유럽에서의 개혁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독재자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미군의 유럽 주둔도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독일통일 과정에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련이 기대하는 장기간의 과도기를 실현하는 것은 통일과정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고르바초프는 그러한 신속한 변화가 특히 경제적 효과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 동의하였다. 그는 통일독일의 동맹 가입 문제를 헬싱키협정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대처 영국 총리 또한 독일통일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본법 23조에 따른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동독은 자동적으로 나토에 속하게 된다고 발언하였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대처 영국 총리의 소련에서의 다른 발언들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0 E



문서 번호 62 베를린에서 열린 2+4 회담(4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6월 9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국무부차관 세이츠;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틴;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등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의 4차 실무자 회의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식으로 국경문제가 2+4회담의 최종 규정에 포함될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긴 토론 끝에 정해진 다음의 내용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1) 통일독일의 영토는 서독 및 동독 그리고 베를린이 될 것임. (2) 폴란드와 국경에 대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조약이 체결될 것임. (3)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하지 않는다. (4) 그에 상응하여 통일된 독일의 헌법이 변경될 것임 (전문, 기본법 23조 및 기본법 146조) (5) 4개 전승국 정부는 독일 국경의 임시적 성격은 이로써 종료됨을 확인함.

1990년 6월 21일 이전에 본에서 추가적인 실무자급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990년 6월 9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
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즈;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

내용

이 문서는 동베를린에서 열린 2+4협상 4차 실무자급 회담에 대한 서독 외무부 실무그룹
의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국경문제가 다루어졌다. 통일독일의 영토는 서독 및 동독 그리고 베를
린이 될 것이다. 통일된 독일은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소련 외무부 국
장 반다렌코는 4개 전승국은 그 나름의 책임과 권한이 있기에 독일 측의 결정에 대한 단
순한 수령자로 머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
장과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는 (독일 측의 폴란드와의 국경문제에 대한 성명에) 상응
하는 '6자성명'이 있어야 된다는 소련 측의 안에 반대하였다.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
트랑 뒤푸크는 동·서독이 폴란드와 규율할 문제와 6개국이 규율할 문제 간에 구분이 필
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국경문제와 관련한 세부 논의는 문서 참조] 마지막으로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대한 문안이 논의되었다.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는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
코는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전문과 국경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발언하였다. 소련 측은
그 외에 '베를린' 및 '군사·정치적 문제들' 항목을 이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시간적 부족 때문에 이 실무자급 회담의 협상을 1990년 6월 22일 이전에 속개하기
로 합의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0 E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워싱턴 주재 서독대사
관 보고

1990년 6월 1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양국 대표단;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 미국 국무부 차관보 도빈스

내용

이 문서는 서독 대사 대리 파쉬케가 미국 국무부 차관보 도빈스를 통해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와 부시 미국 대통령 간에 2시간 동안 진행된 워싱턴회담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시 대통령과 드 메지에르 총리 간의 회의의 논제는 모두 독일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자신과 고르바초프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고르바초프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 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다시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제 독일문제에 대해서 독일 연방군의 최대 전력 규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드 메지에르는 소련 측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도빈스 차관보는 고르바초프의 제안과 소련군을 계속 동독에 주둔시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길게 설명하였다. 그는 소련도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이 미군의 주둔을 원하지만, 소련군의 주둔은 원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통일독일의 나토잔류 문제와 관련하여 드 메지에르와 부시 사이에 행간에서만 읽히는 차이가 드러났다.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의 동독 측 입장에 대한 비판적 언급과 관련하여, 드 메지에르는 자신의 입장과 메켈 외무장관의 입장을 구별하였다.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는 메켈 외무장관의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를 안전 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발언하였다. 독일통일 과정의 소요 시간 범위와 관련하여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의 성립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아마도 사민당은 더 장기간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2 E

1990년 6월 11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외무부 (언어 담당) 105부 통역관 쉘; 서독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브레스트에서의 회담에 배석한 통역이 회담의 내용을 정리·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 두 사람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에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독일통일은 유럽과 동맹정치의 차원에서 그리고 당사국 간의 회의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세바르드나제와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가 1990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에서 열릴 미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려운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민감한 문제들에 관해 고르바초프와 헬무트 콜이 교환한 서신에서 서독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 소련 측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는 서독이 소련에 제공하기로 한 무담보 차관(ungebundener Kredit)을 위한 첫 단계 회의를 전문가 차원에서 또는 외무장관 차원에서 ‘내일부터라도’ 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그를 위한 준비는 상당 부분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하였다. 그에 따르면 양국 간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하였다. 그는 지난 며칠 간 양국 간 관계에 있어 돈으로 정치적 이익을 샀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바르드나제도 소련 내의 비슷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사람은 그러한 식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브레스트에서의 회담-서독
외무부 정치국의 보고

1990년 6월 11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2국(정치국) 대리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이 작성한 것으로 브레스트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간의 회의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회담이 정례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소련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독일통일을 찬성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중요한 것은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 간의 관계이며, 독일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다는, 오히려 그를 통해 다른 문제들의 해결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통일에 있어 두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통일독일의) 두 군사적 동맹으로부터의 동시 탈퇴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각 기구의 회원자격 자체의 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통일독일이 양 동맹의 회원국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양 진영을 소멸시키거나, 각 기구의 내적 변화를 이루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소련이 미국을 더 이상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양측이 정치적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와 공동의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구조와 협의체, 더 적극적인 비엔나 군축협상과 결부된 군축 조치도 필요하다.

겐서 외무장관은 '광범위한 신뢰가 구축'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특히 2+4협상이 국경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헬싱키 프로세스의 심화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으며 독일과 폴란드 간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정을 만드는 일도 통일 이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양 동맹국들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스코틀랜드) 턴베리로부터의 소식'으로 불리는 1990년 6월 7-8일에 열린 나토 자문단(NAC) 외무장관급 회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표현된 바 있다. 그는 독일통일의 과정이 다른 많은 문제와 관련해 추진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기쁨을 표시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2+4회담은 전 유럽적 과정의 일부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제기되는 많은 질문들은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개최 때까지 답해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5년 정도의 (통일 이후 4개 전승국 권한 소멸까지의) 과도기가 필요하다.

겐서 외무장관: 미해결 문제들 때문에 독일통일 문제 해결에 부담이 지워져서는 안된다. 가장 느린 배의 속도에 전체 함대의 속도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의 군사적 잠재력과 관련해 독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식의 해결책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2+4회담에서의 관련 협상 때문에 비엔나 군축협상이 느려지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2+4회담은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990년 6월 11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외무장관 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외무부 105부(언어 담당부); 통역관 쉘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이 작성한 것으로 브레스트에서 열린 겐서 서독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간의 회의에 대한 통역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외무장관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 대해 통일독일을 ‘차별하거나 단일 사례로 특정하는 일 없이’ 그 군대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에 대한 규정에 있어 그 시간적 진행 순서가 논점이 되고 있다. 과도기에 대한 소련 측의 제안도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다. 그런데 통일독일의 전력 제한이나 과도기 제안과 같이 독일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식은 현재 양국 간의 순조로운 협력자적 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는 일종의 불신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파 정치세력에 논란 거리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및 소련에 대한 신뢰의 자본이 계속 충실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의 서신 교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한 뒤, 서독정부 측이 양자 간 관계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2+4회담의 틀 안에서 전력 규모 제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관련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였다.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을 2+4회담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는 겐서 외무장관이 소련 측의 과도기 제안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이 생각이 소련측의 “단순한 변덕에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한편, 동독 측의 참여하에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이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에 미칠 영향이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번호 68

독일 연방의회 및 독일 연방회의 내 베를린시 대표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유보적 자세를 재고하였다는 내용의 3대 전승국의 서신

1990년 6월 12일

담당자 / 기관 프랑스 대사 부아드보; 영국 대사 몰러바; 미국 대사 월터스; 연방 수상 콜; 내무부장관 쇼이블레; 서독 연방의회

내용

이 문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전승국에 의한 점령통치 하에 있으며 분단된 독일 내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서베를린의 지위에 관한 문서이다. 1990년 6월에 보내진 이 서신의 내용은 서방 측 3대 전승국의 대표들이 독일 연방의회 및 독일 연방회의 내 베를린시 대표자들이 직접 선출되는 것과 이들이 독일 연방의회에서 완전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이전에 보였었던 자신들의 유보적 자세를 재고한다는 것이다. 서신은 프랑스 대사 부아드보가 같은 날 연방정부 콜 수상에게 전달하였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27, 20.06.1990, S. 1068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부;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 그리닌;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대사 비서 그리고르체프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 그리닌이 통일과정과 관련한 소련 측의 입장을 동독 외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닌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소련이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일독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의 나토에 잔류해서는 안된다. 나토가 변화될 경우, 이는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소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변화들은 소련의 시각에서 볼 때 안정적이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토는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유사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독일이 동시에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준회원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4회담 외에도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 간에 특히 평화 증진 및 진영적 사고의 해소에 기여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그리닌은 통일된 독일에 3년에서 15년까지의 과도기를 두고 그 기간 동안 2+4협상 결과들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 이후에야 연합국들의 특별 권한이 완전히 소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닌은 동독 측의 입장과 소련 측 입장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문서
번호 70

소련 측의 전체 유럽 지형에서 본 독일통일 방안(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의
발언 내용)-서독 외무부 배경분석 보고

1990년 6월 15일

담당자 / 기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외무부 기획실 바이스 박사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소련 정치 지도부의 전체 유럽 지형 내에서의 독일통일에 대한 발언들을 분석·평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의 핵심 목표는 “소련이 유럽 내 ‘유기적인 부분’으로 자리잡는 것”인데, 이로써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소련이 미래에 자신의 고립 가능성이 적다고 여길수록, 그만큼 더 소련 지도부가 과도기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해 볼 수 있다. 소련은 독일통일의 국제적 측면에 있어 ‘그 문제에 대한 옳은 해결책’이 모색되길 희망하였다. 소련 측은 ‘역동적이면서도 그 과정이 증시되는 열린’ 협상에 임할 자세가 되었다고 밝혔다.

소련 측은 통일독일이 동시에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두 조약 기구의 양자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나아가 양자의 상위 기구가 구성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헬싱키협정 체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서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련 측의 제안들에 대한 서독 외무부의 분석이 담겨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5 E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경제국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무역국가, 유고슬라비아 담당) 421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현재 소련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서방 측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르바초프의 지도하에 소련에서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목표는 권력 분립의 확립과 법치주의 및 정치적 다원주의의 실현이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동시에 분리주의 움직임과 인종적, 사회적 불안 상황이 대두하였다. 이들은 소련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하겠다. 현재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을 대치할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지도부에 대한 내부의 비판이 점점 늘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를 위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점점 열악해지고 경제적 성과가 나빠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련이 이러한 문제들을 자력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즉각적인 조치
- 소련 경제체제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재정부문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신용 제공
- 소련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 소련 경제의 세계경제 통합 장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45 E



문서 번호 72 소련 측의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평화 규정'안-독일의 완전한 주권 및 개별 취급 방지를 위한 서독 외무부의 회담 준비안

1990년 6월 15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6월 9일 소련 측이 제안한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평화 규정'안과 관련하여 1990년 6월 22일에 개최될 다음 2+4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독일의 완전한 주권 및 개별취급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서독 외무부의 회담 준비안이다. 여기에서는 소련 측 문서의 각 항에 대한 설명 및 평가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서독 측의 입장 및 다음 회담에서의 대응 논리가 정리되었다.

이 준비안에 따르면, 평화조약 체결 논의를 배제해야 하기에, 해당 국제법적 규정을 '국제법적 최종 규정'으로 칭해야 할 것이다. 소련 측 초안에 대한 서독 측의 주된 비판은 전자가 통일독일을 개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통일독일의 주권이 침해된다는 점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 외에 동 초안에서 언급된 측면들 중 일부는 비록 2+4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해도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별도 논의의 틀이 존재한다.

또한 예를 들어 국경문제와 같은 독일 측이 이미 동의한 사항들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3 E

문서
번호 73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독-독 간 조약에 대한 폴란드정부의 비망록
1990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메켈 동독 외무장관; 스쿠비체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내용_

스쿠비체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바르샤바 주재 동독 및 서독의 대사관들에 독-독 간 조약에 대한 폴란드정부의 비망록을 전달하였다. 바르샤바 주재 동독대사관이 메켈 동독 외무장관에게 보낸 별도의 문서에서는 국경문제에 대한 동독과 서독 그리고 폴란드의 입장이 요약되었다.

본 비망록에서는 폴란드정부의 상기한 독-독 간 조약 및 독일의 통일에 대한 입장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폴란드는 통일 이후에 이제까지의 조건으로 독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 밖에도 폴란드가 유럽공동체로 통합되는데 독일 측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한편 별도의 문서에서는 국경조약에 대한 협상은 통일 이후 독일 단일정부가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포츠담 선언-2+4회담의 틀 속에서 안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고려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1990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 외무부 법무국 국제법 분과 아이텔 국장; 외무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빗헬;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내에서 2+4회담의 틀 속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6월 7일자 실무보고서가 전달되었다. 이 실무보고서는 포츠담협정이 형식적으로는 계속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련이 동 포츠담 선언의 주 목표들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동 선언을 인용한 바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서독 외무부 법무국은 포츠담협정의 어느 부분이 현재 (그 규율 대상의 소멸로) 불필요해졌는지 그리고 2+4회담의 일환으로 소련 측의 안전보장 이익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요청에 따라 위 실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외무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은 그 결과 동 협정의 상당 부분의 규율 대상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단지 동 선언 중 몇 개의 목표 및 합의 내용만이 아직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속될 수 있다. 그 하나가 '정의롭고도 지속적인 평화의 구축'(1장 6절) 규정이고, 또 다른 것은 '영토문제의 중국적인 규정'에 대한 4장 (동북 프로이센 영토 관련) 및 9장(오테르-나이세 강 영역 관련)의 규정들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6313E

1990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양국 대표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겐셔 서독 연방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북부 독일의 뮌스터시에서 만난 회의에 대해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회담에서 두 외무장관은 향후 유럽의 체제와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 헬싱키협정 및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군축 조치 및 독-소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양) 동맹체제가 냉전의 도구였음을 지적하면서 동맹체제의 종결로 냉전에도 종언을 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진영이 없는 체제’에 대한 소련 측의 구상을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에 전달하였지만 이에 대한 서방 측의 반응은 유보적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서방 측의 인사 중 일부는 명백하게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붕괴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소련 지도부는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만일 소련 지도부의 근본적인 교체가 생긴다면 이는 전 유럽적 변화과정의 종단을 의미할 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경우에 따라 1990년 안에 동맹 회원국들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그는 이어 소련 측 제안 중에 서독이 지지할 수 있는 입장들을 열거하였다. 여기에는 국경의 불가침성,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 포기, 광범위한 비군사적 해결 선언 및 추가적인 군축조치 등이 그것이다. 1990년 11월에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여기에서 2+4회담의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는 겐셔 외무장관의 발언에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동의했다.

세바르드나제는 소련 측이 제안한 ‘과도기’ 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과도기는 4개 전승국의 그 권한 및 책임에 대한 포기 합의로서 시작되며, 그 기간의 종료 시 이 권한과 책임이 소멸된다. 과도기 기간 중 군대 주둔 문제, 통일독일의 동맹 소속 문제 및 베를린의 지위 문제 등의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겐셔 외무장관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는 “통일된 독일에 미해결 문제라는 부담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라고 답하였다. 통일과정의 기간을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소련 측이 말하는 과도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논란 중인 문제들을 취합해 전문가 그룹에 전달하자고 제안하였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동독영토에 주둔하는 소련군 문제, (통일독일) 연방군의 전력 제한 문제 및 독-소 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번호 76 본에서 열린 2+4회담(5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참사관 조엘락;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등

내용

이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들은 3차 및 4차 실무자급 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문제 및 국제법적 종결 규정의 구조에 대해 재차 토의하였다.

종전 4차 실무자급 회담에서 국경조약 관련한 절충이 이루어졌다. 본 5차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그 때문에 필요해진 서독의 기본법 23조의 수정에 대해 논의되었다. 1990년 7월 4일의 실무자급 회담 및 1990년 7월 17일의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국경문제가 논의될 때는 폴란드정부 파견단이 참석할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정부 파견단은 그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동 5차 회담에서 2+4조약의 '임시 목차'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그에 있어 어느 정도로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 서방 측 연합국들 및 서독 측의 입장과 소련(및 상당부분 동독)의 입장은 여전히 서로 대립하였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990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내용

이 문서는 2+4회담의 틀에서 열린 실무그룹의 회의에 대해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회의의 주제는 독일통일 과정의 형식적·시간적 순서와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문제 및 향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관계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는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였다.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은 서독정부가 아직 이에 대한 최종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하지만 전 독일에 걸친 선거는 1990년 12월 초에 개최된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전에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프랑스 외무부 뒤푸크 정치국장은 동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19일에서 20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독정부는 폴란드 측의 국경조약 안에 국경문제 외의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를 거부하였다. 카스트룹 국장은 폴란드정부는 서독 연방의회와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공동결의로 국경문제에 관한 충분한 보장을 얻은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에 근거해 추후 국경조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프랑스 외무부 뒤푸크 정치국장은 그 “국경조약은 유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서독정부 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뒤푸크 정치국장은 소련 측의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관계 제도화 노력에 반대하였다. 그런데 대처 영국 총리와 쟈셔 외무장관은 동 제도화 안에 대해 공동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다음의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소련 측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표시될 것이지만, 프랑스는 나토동맹 내에서 자국의 자율성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7 E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즈; 미국 외무부 경제 및 농업 국장 로버트 B. 조엘릭

내용

이 문서는 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정부의 국장급 자문회의에 대해 서독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은 3대 서방 전승국 정부의 국장들에게 동독이 소련과 지속적으로 재산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서독과도 부분적으로 이 내용이 공유되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소련은 분명히 동독지역에 소련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과도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서독은 그 처리 기간의 만기를 확정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는 앞으로 진행될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간적 절차를 제안하였다. 2+4회담을 1990년 11월 19일에 파리에서 열릴 헬싱키협정 정상회담과 폴란드와의 국경조약 및 그에 대한 국회비준 그리고 '독일 관련 최종해결에 대한 조약'에 대한 서명 시기 이전에 종결시킬 것. 이에 대해서는 아직 상호 논의가 필요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7 E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셰이즈;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

내용

이 문서는 본에서 열린 5차 2+4 실무자급 회담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후 폴란드의 2+4회담 참가 시 논의의 기초가 될 국경문제에 대한 문서 문안에 대한 문제가 주로 협상 대상이었다. 그 외에도 이제까지 제출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동독, 프랑스 및 소련 측의 문서안들이 논의되었다.

소련 측 대표 본다렌코의 발언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협정문의 한 문장을 수정, 삭제, 첨삭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소련이 제안한 것은 서독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서독 대표 카스트룹 국장이 설명하였다. 오랜 토론을 거쳐 참가자들은 결국 본다렌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폴란드를 장관급회의에 참가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1990년 7월 17일 오찬과 오후 회의에서 폴란드를 초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폴란드는 국경문제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종안과 관련하여 3개의 초안에 포함된 공동적인 사항만 논의하기로 하였다. 협정의 전문에는 일반적인 정치적 원칙만 포함하고 국경문제나 베를린의 지위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잠정적인 결정만 내리고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7 E

담당자 / 기관 겐서 외무장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장관 메켈;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 내 2차 외무장관급 회담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외무장관들은 국경문제 해결 초안에는 합의했으나, 국제법적 종결 규정의 구조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베를린에서 열린 1990년 6월 9일 개최 4차 실무자급 2+4회담에서 작성된 기본원칙들이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에게 전달되었다.

종결 규정에 대한 소련 측의 초안을 토론하였는데, 이 안은 2+4회담 이후 5년 간의 과도기를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에 관한 제안에 포함하였다. 그 기간에 서독과 동독의 이적까지의 모든 조약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독일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의 회원국이 될 것이며, 자신의 전력을 3년 내에 (약 60만 명에서) 2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연합군의 전력은 최소한 5년 동안 계속 독일에 주둔한다는 것이다. 서독, 프랑스, 미국 및 영국은 그에 따를 때 독일에 완전한 주권을 지니지 못한 특별 지위가 부여되게 되는 소련 측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였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81

본에서 1990년 6월 19일에 열린 서방 측 법률전문가 (1+3: 서독 + 영국, 미국, 프랑스) 회의

1990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힐젠베르크 500과 과장(독일 측, 회의 의장); 도시(프랑스 측); 마이클 우드(영국 측); 마이클 영(미국 측); 서독 외무부 정치국 소속 인사; 그 외 여러 법률전문가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1990년 6월 19일에 본에서 열린 서방 측 법률전문가 (1+3: 서독+영국, 미국, 프랑스)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며, 1990년 6월 1일에 작성된 보고서가 함께 언급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는 2+4회담의 틀과 병행해서 1+3(서독+영국, 미국, 프랑스) 국가 간에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3개국 국장들은 실무단에 대해, 특히 독일조약과 외국군대의 서독 주둔에 대한 조약 그리고 전환협정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 외에도 2+4회담의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동의 절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라는 요청을 실무단에 전달하였다.

그 외 전체적으로 보아 영국과 미국 측은 작업의 결과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프랑스 측은 지시 사항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6313E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내무부; 외무부 정치국 210과(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외무부 법무국 510과(헌법 및 행정법 담당)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로 동독이 서독, 즉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체계 내로 가입할 때 베를린을 포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서독 연방 내무부가 작성한 2차 국가조약, 즉 통일조약과 그에 따른 전환입법을 위한 첫 번째 실무초안과 관련된 것이다.

실무초안에서는 동베를린이 제외된 동독의 주들을 주로 다루지만, 베를린이 가입할 독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입된 동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베를린의 영역과 관련된 조항에는 그 사이 있었던 베를린의 영역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서베를린 시정부(Senat)는 통일독일에서 베를린 연방주의 영역은 현재의 동·서 베를린의 바깥 경계 내의 영역 및 이에 (현 슈판다우구의 일부인) '서스타켄(West-Staaken)' 지역을 합친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환법(Überleitungsgesetz)의 초안에서는 베를린과 관련하여 4대 전승국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유보적 권리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초안은 통일 시점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독일 전체 및 베를린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된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누려야 한다.

4개 전승국의 권한 소멸과 함께 베를린은 하나의 '정상적인' 연방주가 될 것이며, 그 결과 베를린에도 연방법도 더 이상의 예외를 두지 않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일과 함께 베를린에도 연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전환법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전 베를린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한 연방주가 된다. 동·서베를린은 하나의 완전한 법적 단일체를 구성한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2E

담당자 / 기관 메켈 동독 외무장관(회의주재 의장);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베이커 미 외무장관; 허드 영국 외무장관;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동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의 국장급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이 회의는 동독의 외무장관 마쿠스 메켈이 주재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1990년 6월 21일 서독 연방의회와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동시에 승인한 폴란드와의 국경에 대한 결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폴란드 측 정치국장은 1990년 7월 17일의 회담에 초청되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1990년 6월 22일자 문서 참조)에 대한 소련 측의 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의 패키지를 통한 해결'과 '평화의 규율을 위해 적합한' 문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여기에 있어 독일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그 주권상 제약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그는 과도기와 군축협상이 2+4회담의 일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1990년도 늦가을의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전까지 정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실무자급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협상 기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파리에서 1990년 7월에 열릴 외무장관급 2+4회담에서 최종 문서의 '뼈대'가 확정되고, 1990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릴 회담에서는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허드 영국 외무장관, 베이커 미 외무장관 및 겐서 외무장관은 소련 측 안에서 독일이 개별 취급되고 있다는 점과 소련 측 안에서 제안된 과도기 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핵심 내용에 이미 4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이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였다. 허드 영국 외무장관은 프랑스 측 제안에 따라 소련, 동독 및 프랑스 안 간의 공통점을 추려 앞으로의 작업에 그 기초로 삼자고 발언하였다. 또한 소련 측이 제안한 것처럼 더 활발하게 전문가급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항구적인 대화 체제에 대해서는 거부를 표시했다.

메켈 동독 외무장관은 통일된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에 대한 확고한 총의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통일과정이 유럽통합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동독이 통일된 독일이 생화학 및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동·서독의 각 전력을 합쳐서 최대 30만 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 측의 과도기 제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7 E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소련측 안-1990년 6월 22일 2+4 외무장관급 회담을 위한 준비자료

1990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

내용_

소련 지도부는 본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소련측 안 에 따라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다음의 14가지 사항이 열거되었다.

1. 통일독일의 영토는 서독 및 동독 그리고 광역 베를린이 될 것이다.
2. 독일은 자국 영토에서 혹은 자국 영토로부터 (타국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개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제3국에 의한 행동도 포함된다.
3. 통일독일은 그 전력을 2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4.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특히 재산 및 농지문제와 관련한) 조치 및 처분들은 철회되지 않는다.
5. 독일은 나치즘 이데올로기가 다시 발호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독일은 파시즘의 희생자 위령비 및 전몰자 묘지들을 보존할 의무를 지닌다.
7. 단일 의회와 정부의 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5년 간의 과도기 동안 독일은 그 전까지 동·서독이 체결한 모든 국제적 조약과 협정들의 효력을 인정한다. 기존 동·서독의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지위는 (통일 이후 동·서독의 상대 측 영토로) 더 확대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한다.
8. 과도기 기간 중 4대 전승국의 군대는 계속 독일에 주둔한다. 그 규모는 3항의 독일군 감축에 맞춘다.
9. 연합국 군대는 기존 동·서독 간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는다.
10. 9항의 내용은 동독 인민군과 서독 연방군 및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전까지 독일군이 주둔할 수 없는 군사적 회랑(Korridor) 내부에 대해 적용된다.
11. 독일에서 단일 의회와 정부의 구성이 이루어진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4개국 군대는 광역 베를린시에서 철수한다. 베를린과 관련된 연합군의 군사적 합의는 그 효력을 잃는다.
12. 2+4회담은 헬싱키협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13. 이상의 기본 원칙들은 헬싱키협정 참가국들에게 배부되었다. 이는 협상국들 및 단일 독일 국회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14. 독일에서 단일 의회와 정부의 구성이 이루어진 후 21개월 이후 독일정부는 1+4 외무장관급 회담 형식을 통해 4개 승전국에 대해 협상 및 (통일) 이전에 체결되었던 조약들과 관련한 평가 내용을 전달한다. 그 후 회담의 참가국들은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을 규정하는 최종 의정서의 발표 및 서명 시기를 결정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2 E

담당자 / 기관_ 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서방 측이 소련의 개혁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의 경제적 어려움과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소련의 재정문제가 독일통일 과정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다. 서독은 동독이 소련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소련이 특히 민주화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독일의 나토 잔류를 받아들이고, 군축 및 군비 통제 그리고 헬싱키협정의 제도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서독과 서방의 다른 국가들의 공동의 관심사이다. 소련 측의 장기적 지불능력(Bonität)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서독 연방정부가 소련의 채무이행의무를 보증함으로써 독일 은행들 컨소시엄으로부터 금융 차관을 받게 해 달라는 소련 측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었다. 소련 측의 채무이행은 서방 측 은행들과 기업들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소련 내 개혁이 계속되는 한, 그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서방 측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01 (212)-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부 기획실 실장 알브레히트; 서독 외무부차관 카스트룹

내용

이 문서는 동독정부가 작성한 2+4조약의 '쟁점 검토 리스트'이다. 여기에는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과 관련해 동독이 주요 문제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I. 전문, II. 국경문제, III.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를 고려한 정치·군사적 문제, IV. 베를린 문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중 II. 국경문제에서는 동·서독 공동으로 (다른 상대국들이 성명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일방 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성명은 4개 전승국에 의해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틀 안에서 양지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III. 유럽 내 안전보장체제를 고려한 정치·군사적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독일군 전력의 최대 규모 제한 등이 다루어졌다. III절의 주제 역시 동·서독 공동의 일방 성명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또한 동독영토의 군사적 지위에 대해서 동·서독 간에 조약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련군의 현재 동독지역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독일과 소련 간의 2자 간 협정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베를린문제를 다룬 IV절에서는 그중에서도 4개 전승국의 권한과 기능들이 독일의 책임 하로 전환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3E

문서
번호 87

통일 이후 조약 체결 전까지 남은 법적 만기들 개관
1990년 7월 2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과견단장 마르틴 나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통일의 달성 이후 조약 체결 전까지 남은 법적 기한을 개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의 국가적 통일 달성 시점부터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 후 연방의회가 최초로 국회에 소집되고 정부가 구성된 후 조약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소요되는 법적인 최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은 2+4협상 중의 회의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이 개관적 논의의 결론을 보면, 연방의회 선거일에서 첫 회의까지 최소 기간인 21일보다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더 단축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의 구성은 법적으로 보아서 연방의회의 첫 회의일에 완료될 수 있다. 실제로 이에 필요한 기간은 연립 정부 내의 협상 기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서 경험한 바 있었던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의 경우를 볼 때 새로 내각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조약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최소한 60일에서 70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문서
번호 88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관한 1990년 6월 21일자 최고인민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폴란드 측 보고

1990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주 폴란드 동독 대사; 메켈 동독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바르샤바 주재 동독대사관이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의 보고를 전달 받아 동독정부에 보낸 것이다. 폴란드정부는 이 문서에서 1990년 6월 21일 서독 연방의회와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동시에 통과시킨 국경에 대한 승인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자마자 폴란드와 독일 간의 국경조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폴란드정부는 동 조약이 2+4회담에서 만들어질 ‘국제법적 최종 규정’과 시간적으로 연계될 것을 요구하였다. 폴란드정부는 특히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 측이 양 결의를 임시 조치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독일국가 간의 통일 이전에 이 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내용적으로는 폴란드정부도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들에 동의를 표했다. 현재 영토의 불가침성; 특히 1945년 포츠담선언을 포함한 기존 협정들에 대한 존중; 독일이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 등이 그것이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내용_

서독 외무부는 1990년 6월 22일에 개최된 외무장관급 2+4회담 이후의 2+4회담 현황을 보고하면서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을 열거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국제법적 최종 규정’이 합의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4개 전승국의 독일 전체 및 베를린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의 완전하고도 대체되지 않는 소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서 독일이 특별한 사례로 취급되거나 차별받아서 안된다. 통일된 독일은 전적인 주권을 누려야 하며 자유로운 동맹 선택권을 지녀야 한다.

한편 독일-폴란드 간 국경문제에 관련해서도 기초적 문서가 비준되었다.

소련 측은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소련 측 안을 제출하였는데(1990년 6월 22일 문서 참조), 본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제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서독 외무부는 소련 측 안은 전체적으로 독일 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중 몇 개 항목은 독일 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1990년 6월 22일의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소련 측 안에 담긴 소련 측 입장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3 E



문서
번호 90

2+4회담의 틀 속에서 1990년 7월 3-4일 간 동베를린에서 열린 6차 실무자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베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즈;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

내용

다음의 보고에는 2+4회담의 틀 속에서 1990년 7월 3-4일 간 동베를린에서 열린 6차 실무자급 회담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포함될 사항들이 열거된 초안을 함께 작성하였다.

소련과 프랑스 및 동독의 제안이 이 리스트에서 기초가 되었다. 우선 ‘미해결 문제’들을 취합한 후 이들이 이미 양자 간 혹은 다자간 다루어진 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열거된 사항들이 논의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느 부분에서 논의될 것인지를 전원의 합의 하에 결정하였다. 이는 그것이 2+4회담의 틀 안에서, 혹은 최종 문서나 아니면 다른 형식을 통해 논의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논의되지 않을 것인지를 의미하였다.

본 문서의 부록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 및 그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4 E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국무부차관 세이츠;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틴;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츨; 폴란드 유럽정책국 국장 솔렉 등

내용

2+4회담의 6차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파리에서 1990년 7월 17일에 열릴 3차 외무장관급 회담의 논의사항이 준비되었다. 폴란드는 최초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20개의 질문들이 정리되었다. 이들은 주로 소련의 관심사들에 해당하였는데(그리고 종종 동독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즉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 필요할 경우 그 과도기의 기간, 나토, 구동독지역의 지위 등에 관련한 내용 및 독일의 평화의 무(Friedensgarantie für Deutschland)에 대한 조항이 동 조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그에 이어 폴란드정부 파견단은 국경문제에 관해 종전에 작성되었던 기본원칙들에 3가지 추가 제안을 하였다. 이때 가장 논쟁거리였던 것은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 조약이 2+4회담의 최종 규정과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는지(이는 폴란드 측 입장이었다), 아니면 전자가 통일된 독일의 최종 규정을 통해 실현되어도 좋을지(이는 서독 측 입장이었다)의 질문이었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92 2+4회담의 틀 속에서 1990년 7월 4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6차 실무자급 회담 중 폴란드 정치국장이 참석한 회의-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7월 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베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츠; 소련 외무부 국장 만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젤비츠; 폴란드 유럽정책국 국장 술렉

내용

2+4회담의 틀 속에서 1990년 7월 4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6차 실무자급 회담에는 폴란드 유럽정책국 국장 술렉이 참석하여, 특히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문제를 논의하였다. 폴란드 유럽정책국 국장 술렉은 동독정부의 국경 관련 문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국제법적 최종 규정’과 관련하여 폴란드 측의 요망 사항을 전달하였다. 그에 있어 동 최종 규정에서 평화조약적 성격이 분명히 포함되는 것과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문제가 이로써 최종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독일과 폴란드 간에 별도로 국경조약 체결 및 국경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4 E

문서
번호 93

1990년 6월 22일자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소련 측 안-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평가

1990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서독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나토 및 방위 담당) 201과 과장 대리 그뢰닝 및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2+4회담 실무그룹 울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내용

이 문서는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소련 측 안에 대한 서독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의 평가 내용이다(1990년 6월 22일자 문서 참조).

소련 측 안에 따르면 독일에서 단일 의회와 정부의 구성이 이루어진 후 21개월 이후에야 최종 의정서가 ‘검토위원회’에 의해 작성되게 된다. 그 시점이 되어야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이 최소한 5년의 과도기 이후에 규정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소련 측 안의 개별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 안을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소련 측 안은 독일을 ‘개별 취급’하며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입장이라고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3 E



문서
번호 94

본에서 열린 독-독 간 유엔 실무단 2차 회의-서독 외무부 보고 전문
1990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독-독 간 유엔 실무단

내용_

본에서 열린 본 독-독 간 유엔 실무단 2차 회의에서는 다음 내용이 논의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1990년 9월 초에 동베를린을 방문할 계획이다. 동독은 그때 지난 수년 간 유지했던 유엔고문금지협약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철회할 것이다. 동독은 (시민 개개인의 항의권을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1차 선택적 의정서의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미국은 동독이 동유럽 국가 그룹을 탈퇴하는 것이 동 그룹의 해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독일통일에 관한 유엔에서의 통지 방식과 시점은 예상하기로는 오는 1990년 9월의 다음 독-독 간 유엔 실무단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독일통일에 관한 유엔에 대한 통지문 초안의 작성은 서독 측에서 맡는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2 E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내용_

서독 외무부는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 인정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형태로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였다.

이 외무부 문서는 2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에서는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과 관련한 동독 측의 1990년 7월 1일자 ‘쟁점 검토 리스트’가 논의되었다. 이 동독 측 리스트 중 4항에서는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조치 및 처분들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리스트에서는 동·서독이 공동성명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그 조치 및 처분들에 상응한 의무를 인정함을 밝히고, 나머지 4개국은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일환으로 이를 양지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실현은 국가적 통일의 완성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이 동독 측 제안은 소련의 1990년 6월 22일자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넣거나 혹은 이러한 내용을 동·서독이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고 4개 전승국이 이를 양지하는 방식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처분과 조치라는 표현은 점령법의 지나친 정형적 해석을 불러올 것인데, 이는 통일 이후의 독일의 주권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3E

문서
번호 96

‘국제법적 최종 규정’-서독 외무부의 2+4회담을 위한 논의안
1990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 회담 편집위원회

내용_

서독 외무부는 2+4회담 참가 6개국 모두가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4개 전승국의 독일 전체 및 베를린에 대한 권한이 완전히 소멸되도록 해야 하며, 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외무부의 입장이었다. 미해결 문제가 남아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후 시기를 종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이나 헬싱키협정과 같은 틀 안에서 다루어질 문제일 경우 이를 2+4회담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서독 외무부 2+4회담 실무단의 입장이었다. 그 외에 이 문서에서는 현재까지의 회담 결과들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1990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유럽공동체, 대외 관계, 유럽자유무역지대, 공동 무역정책, GATT 등 담당) 411과;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무역국가, 유고슬라비아 담당) 421과; (국제 교통정책, 국제 우정·통신 분야, 라디오 및 티브이부문기획; WTO 포함 국제 관광정책 담당) 235과; 서독 연방 재무부; 연방 경제부; 연방 법무부; 연방 노동부; 연방 국방부; 연방 연구·기술부; 연방 환경부; 연방 교통부; 서독 수상청장

내용

이 문서는 독일통일 이후 소련의 경제·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서독 외무부 내 여러 부서가 참여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의 통화 교체 이후 동독 주둔 소련군에 대한 (주둔 비용 재정지원, 소련군 예금에 대한 환전 비율 등의) 관련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1990년도에 동독과 소련 간의 환전 비율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를 위한 협정이 준비 중이다. 연방 경제부는 그를 위한 회담의 진전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 유럽위원회와 함께 상품교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독정부의 외무부와 연방 경제부, 동독 및 유럽공동체 유럽위원회 간에 회담이 개최되었다. 천연가스 및 선풍(選鑛) 부문 등에 대한 동독과 소련 간의 장기 조약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통화 및 세계시장 가격에 대한 전문가급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연방 연구·기술부가 파악한 바로는, 1989년도까지 동독 내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 순환 체계(Brennstoffkreislauf)는 소련의 재량권 하에 있었다. 여기에는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1990년도 10월까지 동독과 소련 간의 전문가급 회담에서 학문·기술 분야의 향후 협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이미 (상당수의) 동독 전문가들이 서독 측에서 일하고 있다. 동독에서의 우라늄 채굴은 1991년 1월 1일부로 중단된다. 그에 영향을 받을 일자리는 4만 개에 달한다. 동독과 소련 간의 실무단은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어쩌면 기계설비제작 및 광산설비의 일부 부문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향후의 손상 비용은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이다. 연방 재무부는 소유권 및 재산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할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8 E



문서
번호 98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대한 폴란드 측 입장-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와 메켈 동독 외무장관의 전화 통화 내용

1990년 7월 14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부; 메켈 동독 외무장관; 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 판 츠볼

내용

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 판 츠볼은 메켈 동독 외무장관에게 자신과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을 전달하였다.

폴란드 외무부장관에 따르면, 폴란드는 하나로 파악된 독일에 대한 4개 전승국들의 권한 행사가 지체되게끔 폴란드가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외무부장관은 4개 전승국들이 그들이 연합국으로서의 권한을 아직 행사하는 한에 있어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폴란드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발언하였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1990년 7월 16일

담당자 / 기관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한스 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
무부장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부 장관

내용

고르바초프와 콜 수상 간의 대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독일통일과 더불어 함께 완전한 주권을 획득한다.
2. 통일독일과 소련은 현재 동독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을 철수하는 것에 합의하였
다. 소련군은 양자 간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현 동독지역에 계속 주둔한다. 이 양자
간 협약은 소련과 독일연방공화국이 지금 준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서독은 동독과
비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독일이 어느 동맹에 속할지는 독일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소련군이 동독지역에 주
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NATO 조직이 그 지역까지 확장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하는 방
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소련군이 철수하고 난 후 독일의 거취문제는 주권국가인 독일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
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
야 할 것이다.

출처 Küsters, Hanns Jürgen/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
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90. München: Oldenbourg Verlag. S. 1355-1367.



문서 번호 100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에 줄 영향에 관한 유럽 의회 결의
1990년 7월 17일

담당자 / 기관 유럽 의회; 유럽공동체; 더블린 유럽이사회; 동독; 중·동유럽 국가들; 소련; 동독 최고인민회의; 연방정부; 유럽 경제공동체; 헬싱키회의

내용

유럽 의회는 동 결의에서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을 용이하게 해 줄 일련이 임시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독일통일이 완성될 때까지의 이행 기간 동안 동독지역에 정보 센터(유럽정보센터, Euro-Info Centres)들을 건립해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동독은 이 기간 중 유럽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유럽공동체 유럽위원회는 독일통일에 맞추어 실행해야 할 조치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결의는 유럽공동체의 거의 모든 정책 부문에 있어 가능한 한 시간적으로 제약된 경과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동 농업정책, 유럽공동체 환경 기준에 동독을 맞추는 일 및 후자를 유럽 역내 시장에 통합시키는 일 등이 포함된다.

출처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7.09.1990. Nr. C 231. S. 154-163.

담당자 / 기관 겐서 외무장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장관 메켈;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2+4회담의 일환으로 파리에서 열린 본 3차 외무장관급 회담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는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이 참가하였다. 동 회담은 그 전 회담들과 비교해서 확연할 정도로 분명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담에서는 국경문제를 다루는 기본원칙에 대한 공동 결의가 작성되었다. 이 결의는 베를린에서 열린 1990년 6월 9일 개최 4차 실무자급 2+4회담에서 논의되었던 5가지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1) 통일독일의 영토는 서독 및 동독 그리고 베를린이 될 것임. 독일의 국경 확정은 유럽 내 평화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위 사항은 독일-폴란드 간 국경조약의 체결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3) 이 외의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4) 이상의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독일 기본법상의 조항들은 변경되어야 함. 이는 기본법 23조 및 기본법 146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5) 4개 전승국 정부는 이 상을 확인함.

경제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독일-폴란드 간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소련은 독일에 대해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 7월 15일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의 캅카스 정상회담을 통해, 그리고 1990년 7월 5-6일 간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정책 방향이 수정된 것을 계기로 도출되었다. 그 밖의 양국 간 관심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4회담의 종료 이후에 독일-소련 간에 전체 조약(Gesamtvertrag)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동독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그리고 경제·학문·기술 분야 다자간 국제
법적 협정들에서의 회원 지위

1990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경제상호원조회의의 동독 대표 하리 뮐러; 외무부 경
제국 (서독과 동독 및 동남유럽의 국영무역국가, 유고슬라비아 담당) 421과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내부에서 1990년 7월 18일에 작성한 보고서로 경제상호원조회의의 (COMECON)의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문서에 첨부된 부록에는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가 경제상호원조회의의 동독 대표 하리 뮐러의 1990년 7월 10일자 서한 복사본을 송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1990년 7월 10일자 서한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인 빙켈만을 수령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2가지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상호원조회의의 동독 대표 하리 뮐러가 동독의 경제상호원조회의의 회원국 지위에 대해 갖는 의견에 대해 언급이 되었다. 동독 대표 하리 뮐러는 동독이 경제상호원조회의에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혹은 계속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정식 회원국 자격을 지니진 않았지만 동독의 각 주가 이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래 내용을 보면 통일독일 전체가 아니라 그 연방주 일부만이 경제상호원조회의에 가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암시] 이미 이러한 식으로 유고슬라비아와 핀란드, 멕시코 및 이란이 실행한 방식이 있기도 하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사례는 그것이 다른 3개국들의 경우보다 더 잘 진행된 측면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미래의 통일된 독일은 유럽공동체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기본 전제가 된다. 설령 독일이 유럽공동체와 경제상호원조회의에 동시에 회원국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상호원조회의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은 그 실익이 없기에 추천할 만하지 못하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 대표 하리 뮐러는 (동독체제가 유지되었던) 장기간에 걸쳐 성립된 다자간 결속 관계 및 국제적 정보 네트워크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지 말 것을 제안하였다. 독일기업들에 대해서도 그중 여러 학술 및 기술 부문의 협력 관계들, 그리고 투자 계획 및 생산 협력들이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경제상호원조회의의 자산에서 동독이 약 13-15% 정도의 지분이 있다는 점을 경제상호원조회의와의 협력 여부 및 그 시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라고 제안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1668E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회담에 대한 보고-외무부 정치국의 보고

1990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_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의가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회담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연방 외무장관 겐서 및 연방 재무부장관 바이젤이 소련을 방문하였던 1990년 7월 15일과 16일 간 소련에서의 회담을 통해 독-소 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파리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파리회담의 오전 회의에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구조에 대하여 빠른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 20개 항이 포함된 최종 규정안은 각국 외무부 정치국장들에 의해 계속 검토되게 될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문제에 대한 내용은 같은 날 오후에 2+4+1의 형식으로 최초로 논의되었는데, 그 결과 다음의 5개 원칙이 도출되었다.

1. 서독과 동독의 영토로 이루어진 독일의 현 국경은 최종적임을 확인함
2.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을 국제법적 조약을 통해 확인함
3. 독일은 영토 변경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주장도 하지 않음
4. 추후 공동성명에서 이와는 다르게 표현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5. 4개 전승국의 이에 대한 형식적 확인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의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비준 등 법적, 형식적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헬싱키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이를 완료한다는 시간 계획은 확실히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105

본에서 열린 2+4 회담(7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

동 본에서 2+4회담의 일환으로 열린 7차 실무자급 회담에서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질문들의 대부분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며 전문의 초안도 계속 작성될 수 있었다. 참가국들 간에 더 이상 근본적인 이견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06

본에서 열린 7차 2+4 실무자급 회담-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영국 외무부 정치국 국장 존 웨스턴; 프랑스 외무부 정치국장 버트랑 뒤푸크; 미국 국무부차관 겸 정치국장 레이몬드 세이즈;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동독 외무부차관 미첼비츠

내용

이 본에서 열린 7차 2+4 실무자급 회담에서 참석한 각국 정치국장들은 다음 1990년 9월 12일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될 '국제법적 최종 규정'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총 20개 항목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중 첫 7개 항목 및 마지막 3개 항목은 군사적 문제 및 동맹 문제와 관련되었다. 8항에서 12항까지의 항목은 법적 문제 및 통일된 독일의 주권 문제와 관련되었다. 13항에서 17항까지의 항목은 기존에 체결된 바 있던 협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독 대표는 이제까지의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단지 실제로 2+4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확정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발언하였다.

초안의 수정 과정 중 7항과 9항은 빠지게 되었고, 그 외 각 항목에 대한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는 개별 항목의 표현 문구의 수정 정도만이 이루어졌다.

그에 이어 전문의 문구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 토대가 된 것은 서독 측의 초안이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1990년 8월 말에 2일 간 2회의 추가 회담을 갖는 데 합의하였다.

소련 측은 특정 부문에 대한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문을 제외한) 전체 규정에 대한 독자적인 광범위한 초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8 E

문서
번호 107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해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2+4회담 편집위원회 파견단장 마르틴 나이

내용_

이 외무부의 문서는 기본법 23조 2항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었다. 외무부는 동독정부에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다는 결정을 내릴 권한 및 가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법 23조 2항의 규정 내용은 헌법적 단일체(Verfassungseinheit)의 형성에 대한 것이다. 헌법적 단일체의 구성은 개념적이자 시간적으로 국가적 단일체가 선결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법적·헌법적 관점 양자 모두에서 국가적 단일체의 형성은 가입에 의해 실현되며, 이때 가입과 가입 선언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가입 선언상의 표현이 국가적 단일체의 형성 시점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문서
번호 108

동독의 제3국들과의 국제법적 조약체결 현황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법무국 511과 벤첼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긴급서신으로 수령인은 연방 법무부장관이다. 본 서신은 동독의 제3국들과의 국제법적 조약체결 현황에 대한 파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990년 7월 16일의 서신이 인용되고 있다.

외무부의 의견에 따르면 통일독일에서 국제사법공조(internationale Rechtshilfe)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상이한 2개의 법적 공간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 때문에 동독과 제3의 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간 조약들에 대한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1668E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내용_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2차 국가조약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통일된 독일의 영토는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으로 한다.
2. 두 국가 간 통일이 완성됨과 동시에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대해서 조약상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3. 통일된 독일은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4. 독일땅에서 더 이상 전쟁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5. 헌법상으로 파시즘과 군사주의(패전국이었던 국가가 과거 패전처리의 부당성을 사후에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보복주의 및 테러를 금지한다.
6. 생화학 및 핵무기의 생산 및 보유, 그 배치 및 확산을 금지한다.
7. 동시에 동독 인민군(NVA)과 서독 연방군을 감축한다.
8. 통일 독일군대의 인적·기술적 전환을 일원적인 법적 규정을 통해 시행한다.
9. 구동독 및 전 베를린지역의 군사적 지위 및 독일 내 외국 주둔 군대의 철수에 대한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구동독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던 조약들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11. 두 독일국가의 비자정책을 동일하게 만들.
12.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을 위한 경과 규정들.
13. 동독 출신의 인사를 유럽 의회 및 유럽 평의회 의원으로 배정함.
14. 통일독일에서 동독의 해외 공관을 인계받으며 동독의 해외 문화원 및 정보센터들을 유지시킬 것.
15. 인권의 보호.
16. 망명권의 보장 및 개선.
17. 소수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
18. 동독의 개발 프로젝트를 유지할 것.
19. (특히 전문 및 독일 국적 관련 규정의 수정을 포함한) 기본법의 수정. 동 위원회 소속 민주사회당 의원들은 위와는 별도로 다음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전 유럽적 안전보장체제가 성립될 때까지는, 현 동독에 독일연방군 및 나토와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군사 관련 법률(Wehrrecht)을 제정하여야 한다. 동독, 서독 및 베를린에서 국민투표(Volksbefragungen)를 통해 미래 독일이 어느 진영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베를린이 통일된 독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정부기관들이 지역에 분산 배치될 수도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내렸던 결정들은 구동독에 속했던 연방주들 및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1



문서
번호 110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 관련 협상-동·서독 간의 협의 및 독일의 의무에 대한 성명-서독 외무부 2A 분과의 보고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A 분과 (군축 및 군축 통제 담당 연방관) 분과장 홀릭 대사

내용_

통일된 독일의 군사 설비 수준이 현 서독의 그것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독과 군사 설비의 감축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밖에도 동독 할당량이 사라지는 만큼 생기는 할당량이 동유럽 내,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 서명국들 간에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된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결정을 동유럽 국가들에 맡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동독은 현재 이러한 분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아마도 동독은 형식적인 주권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서독 측의 성명에 통일된 독일의 전력을 3년에서 4년 사이에 37만 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 감축은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이 발표함과 동시에 개시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4 E

독-소 간 조약-외무부 내 관할권에 대한 논의-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7월 27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외무부 2A 분과 (군축 및 군축 통제 담당 연방관) 분과장 홀릭;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 및 그 외 외무부 소속 분과들;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동-서 관계, 동유럽 국가들·소련 및 미국과의 양자 관계 및 군축과 군비 통제 특히 헬싱키협정 관련 담당) 외무부 212과 과장 대리 니켈; 연방 재무부 소속 자우페; 연방 국방부 소속 대령 올딕스 및 플렉; 연방 경제부 국제경제국 국장 쇼메루스, 동-서 경제적 관계 담당 국장 하이트란트

내용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는 외무부에서의 여러 부처 및 수상청 대표들 간의 논의를 정리·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0년 7월 17일 회담에서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미래의 통일독일과 소련 간에 광범위하고도 장기적인 조약을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1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준비는 지금 이미 개시되어야 한다.

각 부처 및 수상청의 대표들은 동 조약에 대한 소련 측 초안을 서독 측 논의를 위한 기초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 나토 및 유럽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일치가 있었다. 문서의 다음 부분에는 소련 측 안에 대한 논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카스트롭 국장은 수상청과 각 연방부처가 1990년 8월 중순까지 소련 안의 각 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그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카스트롭 국장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독일 측을 대표할 것이다. 소련 측의 그 상대역은 소련 외무장관 대리 크원진스키로 예정되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문서
번호 112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과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의 향후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대한 대화-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과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의 향후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대한 대화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은 동독 내 화학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검열하기를 원하였다. 서독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련 측은 서방 측 동맹국들 군대의 (여기에서는 서독을 의미하는) 독일연방 내 주둔에 대한 조약문을 (소련의 의회인) 소련 최고 소비에트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카스트롭 국장은 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동독 내 소련군 주둔과 관련된 조약문 내용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서독 측은 동독에서 소련 측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특히 그 소유권 관계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전달하였다. 그 외에 카스트롭 국장은 동독 내 소련 관련 위령비 및 '전몰자' 공동묘지들의 현황을 파악하길 원했다.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는 동독지역에서의 소련군의 철수는 서방 측 열강 및 서독 측의 태도를 포함한 여러 측면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테레초프 대사는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해지를 명시적으로 2+4회담 최종문에 표시하기보다는 다른 의정서나 통지문 교환 등의 형태로 진행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테레초프 대사는 대화 말미에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장기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카스트롭 국장은 그에 대해 나토와 소련은 장기적으로는 서로 대립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5 E

1990년 7월경 추정

담당자 / 기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메켈 동독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메켈 동독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 소련 외무장관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의를 통해 ‘진영을 초월한 유럽 내 일반적 안전보장 기구’의 초석이 놓여졌다고 적었다. 그는 나토 사무총장 뷔르너의 모스크바 방문(1990년 7월 14-17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회동에서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공동선언이 발표될 것인데, 이에 따라 상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원칙들이 확립되고 또 다른 모든 헬싱키협정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소련은 그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동독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을 희망하였다. 바르샤바조약의 사무총장에게 동 선언의 준비 및 초안 작성을 위해 나토 회원국들과 협의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토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대표자를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초청하여 외교 관계 수립을 제안하였고, 바르샤바조약기구 또한 나토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 내 정치자문위원회(Politisch Beratender Ausschuss)에서 발언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비엔나에서 1990년도에 예정된 ‘군사교범(Militärdoktrinen) 및 전력 간 비율(Kräfteverhältnissen)에 대한 유럽군사회의’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전 유럽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핵무기 문제를 포함한 유럽 내 군축 협상에는 더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헬싱키협정에서 유럽 의회(Europäischer Versammlung)에 상당하는 의회 기구를 만드는 안에 나토 회원국들이 찬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47



문서
번호 114

1990년 7월 17일 파리 개최 3차 외무장관급 2+4회담 및 1990년 7월 19일 본 개최
실무자급 회담 이후의 2+4회담 현황-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보고

1990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 외무부 2+4회담 실무그룹

내용

1990년 7월 17일 파리 개최 3차 외무장관급 2+4회담에서는 (독일문제 및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다음과 같은 구성에 대해 빠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전문; 4개 전승국의 권한 소멸; 양독 간 공동성명 내용이 그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맥락 혹은 그 일부로 포함될 것이라는 점; 국경문제

외무부 정치국장 회담에서는 20개 항목이 포함된 리스트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 문서에서 간략하게 설명되었다. 20개 중 7개 항목에 대한 합의 내지 접근이 즉시 가능했다. 앞서 외무장관들은 각 정치국장에게 전문 및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1990년 7월 19일에 대부분 완료되었다. 단지 리스트 중 20번에 해당하는 서독 및 동독지역의 독일군 전력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다.

1990년 9월 12일까지 정치국장들은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초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소련 측은 자체적인 광범위한 초안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참가국들이 제출한 안을 기초로 하여 ‘국제법적 최종 규정’이 1990년 9월 초의 실무자급 회담에서 협의된 확정안으로 작성될 것이다. 본 보고의 그 다음 부분에서는 폴란드 측의 이해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5 E

기본법 23조 2항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그 국제법적 영향
1990년 8월 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힐젠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외무부차관 및 장관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서의 첫 항목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즉시 가입’을 다룬다. 이 초안에서는 특히 그 가입의 국제법적 영향을 논의하였다. 초안의 두 번째 항목에서는 외무부차관의 구두 지시가 포함되었다.

외무부는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즉시 가입하는 것을 성명으로 발표할 경우, 그로써 동독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될 것임을 밝혔다. 이때 동독은 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동독 단독으로 더 이상 조약을 체결 혹은 폐지할 수 없으며, 또 더 이상 단독으로 국제 기구의 구성원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외무부는 이러한 입장을 국제적으로 공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5E

문서
번호 116

서독 외무장관 겐서와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전화통화-외무부 외무장관실 보고

1990년 8월 7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장관 겐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서독 외무부 장관실 실장 대리 뢰펠부르크

내용

이 문서는 겐서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서 장관은 세바르드나제 장관에게 독일 내의 변화와 동·서독 간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독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10월 14일자로 전 독일에서 선거가 시행되는 것과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문제를 1990년 8월 8일에 의결을 할 예정이며, 그 일정 및 헌법상 원칙과 관련하여 정당들 간에 아직 의견 차이가 있지만,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대해서는 동독 내 경제적 변화 때문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본인도 이런 상황을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의 성명을 언론을 통해서 비로소 접하였다고 말했다.

겐서 외무장관은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2+4회담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가입 일정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보았다. 1990년 7월 15일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의 카우커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은 완전히 실현된 상태이다. 통일된 독일의 향후 전력 규모에 대한 성명은 8월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통일과정의 빠른 진행 속도에도 불구하고 2+4회담의 진행이 뒤쳐져서는 안될 것이며, 1990년 9월 12일에는 최종적인 문서가 완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걸프만 위기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과 미국 간에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결의안을 환영하였다. 비엔나 군축협상에서도 시간적 일정 계획이 준수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회의; 동독 경제부; 소련 주 동독 서방군; 동독 내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 서부군단이 필요로 하는 물자보급에 관련된 지시이다. 이 지시의 근거는 1950년대 동독과 소련 간에 체결된 조약들이다.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 서부군단의 물자 보급에 포함되는 것은 (식료품을 포함한) 직접적인 필요물자 및 건축 자재, 건축 노동력 및 교통, 체신 및 통신 그리고 에너지와 수리(水利) 및 기초지자체들의 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물품을 보급하기 위해 동독 경제부는 업체들에서 공급을 받는다. 주문 배정은 소련군의 결정에 따른다. 서부군단이 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소비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동독 경제부는 기업들에 대해 상담 및 중개를 도와, 계약 준비에서 체결 및 실행 그리고 건설 조치 및 소비재를 위한 주문 배정 등을 맡는다. 또한 동독 경제부는 동독 내무부가 소련군 서부군단의 토지를 인계받을 때 협조한다. 그 밖에도 교통·체신·통신부, 건설·도시계획·주거경제부, 무역·관광부는 경제부 및 소련군 서부군단과의 협의를 거쳐 상기한 물자 보급에 참여한다. 경제부는 소련군 서부군단 및 동독의 관련 담당 부처와 함께 매년 물자 및 서비스의 전체 수량을 조사한다. 본 명령의 실행을 위한 규정은 경제부장관이 동독의 관련 담당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다. 더 오래된 조약들은 개정을 필요로 하며, 그 외 다른 규정들은 폐지된다(문서 중 상세내용).

출처_ Gesetzblatt der DDR Nr. 1990 I/53

문서
번호 118

연방 외무장관 겐서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회담
1990년 8월 17일

담당자 / 기관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내용

겐서 외무장관이 보기에 동독 지도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동독 내 문제가 고조되고 있다. 그는 1990년 10월 14일이 통일의 일시로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독일과 소련 간의 양자 간 협상을 위한 일정도 계획되어야 한다. 연방은행 행장 뫼른은 그에게 소련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통일이 달성되리라는 데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이 너무 빨리 달성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이것은 독일 내정 문제에 속한다. 2+4 협상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동독 내 주둔 소련군 문제인데, 특히 소련 (복귀 후) 수용 및 직업전환교육이 문제가 되었다. 소련군에 있어 3년에서 4년 이내라는 철군 시간은 너무 일렀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 모두에 대해 (2+4조약 서명일인) 1990년 9월 12일까지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그들의 직업전환교육이 이미 동독지역에서 개시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소련군들은 (다른 동독주민들과) 거의 차단된 채 생활하는데, 이는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 소련과 독일 측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겐서 외무장관은 또한 영국 및 미국 외무장관과 모스크바에서 열릴 2+4회담에서 협상이 종결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독일 측은 동 2+4조약의 서명이 독일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그 서명이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도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답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회담 말미에 3-4년의 철군 시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 이는 동독 측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1990년 8월 17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외무장관 겐셔;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소련정부 대표단 [소련 외무부차관 카르포프, 기획실장 타라센코, 특임대사 본다렌코 등]; 서독정부 대표단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익, 외무부 연방장관실 실장 엘베,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등]

내용

이 문서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간의 회담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측의 외무장관과 대표단은 먼저 1990년 9월 12일에 체결될 2+4조약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양자 간 관계 속에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 외 경제적인 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조약 체결도 계획되어 있었다.

겐셔 외무장관은 4개 전승국의 권한을 2+4조약의 비준과 발효 중의 기간에 4개국 각각의 일방적인 성명에 의해 해지하는 방식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조약의 발효와 함께 4개국의 권한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은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이러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소련 최고위층이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대한 결정은 추후에 내리기로 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소련 측 안에서 2+4협상의 틀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비무장지대화에 대한 규정, 나치주의 청산 및 점령법의 적법성 문제 등에 관한 사항들은 소유권이 반환되거나 보상이 기본법 14조에 근거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난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강제노역자 문제 및 위령소 책임 문제는 각각의 양자 간 협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논쟁은 소련 측의 두번째 안 중 자국 영토에서 혹은 자국 영토로부터 (타국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개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독일만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놓고 벌어졌다. 겐셔 외무장관은 이 조항은 독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모든 다른 국가들이 같은 의무를 지닐 때 이러한 조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한 취지는 전문 안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분명하고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동 조항이 필수적인 것인지의 여부 및 그 표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양자는 그 이후 소련군의 철군 절차 및 양국 간 외교 관계 유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번호 120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

1990년 8월 21일

담당자 / 기관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유럽 의회; 동독;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독일연방공화국; 유럽 경제공동체; 중·동유럽 국가들

내용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 그리고 유럽 의회는 통일을 지지한다. 유럽 의회는 '독일통일을 위한 비정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 문서에서 동독의 경제를 다루었다. 서두에서 유럽위원회는 1988년도 말부터 60만 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동독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였다. 동독의 1인당 소득은 아일랜드, 그리스 및 포르투갈보다 높지만, 스페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독일연방공화국의 3분의 1 정도 더 낮다. 이는 관료주의적 중앙 계획과 자극의 결여 그리고 낙후된 기술 수준에 기인한다. 기술의 낙후 현상은 특히 1980 년대에 심화되었다. 동독은 전세계 갈탄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위 생산국이다. 동독에서 전기의 85 퍼센트가 갈탄으로부터 나왔다. 환경보호를 위해 갈탄 생산에 대한 지원 및 1998까지 갈탄 연소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계획되었다. 본 문서에는 동독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개관이 포함되었다. 핵 에너지는 총 에너지 생산량의 10 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그 안전 기준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동독에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독일연방공화국보다 15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그 원인은 특히 산업 분야 에너지 투입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핵원자로의 작동 수준이 저조했고 또한 주거용 열 차단설비가 불충분했다. 식료품 산업의 주된 문제는 품목 다양성의 부족 및 낮은 품질이었다. 이 산업 부문의 생산성 역시 특히 낮았다. 도로망은 상대적으로 촘촘했지만, 도로 상태는 열악했다. 앞으로의 여행 통행 및 차량수의 증가 때문에 미래에는 정체 지역이 증가할 것이다. 동베를린을 제외하면 통신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출처 Amt für amtliche Veröffentlichung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KOM(90) 400/III endg. Dokumente DE 10 01. Katalognummer: CB-CO-90-423-DE-C. ISBN 92-77-63783-8. ISSN 0254-1467.

담당자 / 기관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유럽 의회; 동독;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독일연방공화국; 유럽 경제공동체; 중·동유럽 국가들

내용

유럽위원회는 통일과정이 역동적이면서도 규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독일통일은 유럽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유럽통합을 진전시키고 또 가속화시킬 기회이기도 한다. 동독의 통일 독일 및 유럽공동체로의 귀속은 여러 단계에 걸쳐 완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반드시 유럽공동체조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이사회는 독일통일을 유보없이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유럽이사회는 동독 해당 지역의 유럽공동체 귀속이 문제점없이 조화롭게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 의회는 유럽이사회와 결론을 환영하며 독일통일에 대한 비정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독일통일이 기본법 23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유럽공동체 측의 관점에서는 더 용이하다고 보았다. 본 문서의 다음 부분에서는 동독의 경제에 대한 개관이 이루어졌다. 동독의 경제는 전문화가 결여되었다. 서방 공업국가들과 비교하면 동독경제 구조는 지난 수십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은 편이다. 동독경제에서 제조업은 가장 중요한 부문인데, 다른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에 있어서는 서비스 부문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차이가 있다. 그 국가 규모를 고려할 때, 동독은 세계무역체제와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출은 GDP의 약 25 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네덜란드에서 이는 GDP의 55에서 60 퍼센트에 달한다. 그 밖에도 이 문서에서는 동독의 양자 간 및 다자간 경제조약들이 열거되었다. 이 문서의 두번째 부분에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가 제안하는 다수의 법령안들이 포함되었다. 동 문서의 세번째 부분에서는 통일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논의되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70



문서 번호 122 2+4조약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 성명 초안
1990년 9월 3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부

내용

서신 형식으로 연합군 측 외무장관들에게 전달된 본 2+4조약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 성명 초안에서는 연합군 측의 결정의 효력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총 4개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 (1)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점령법에 기초해서 시행되었던 몰수 조치 및 농지개혁을 소련이나 동독이 원상복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통일된 독일의 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손해보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전쟁 위령소 및 전몰자 묘지들은 독일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관리되어야 한다.
- (3) 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는 예를 들어 나치 연맹(nationalsozialistische Vereinigungen)과 같은 조직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 (4) 다른 국가들과 동독이 맺은 조약들의 지속이나 변경 혹은 폐지의 결정에 있어 유럽공동체의 관할권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담당자 / 기관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 겐서 외무장관;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노이베르트

내용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는 겐서 외무장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전달하였다: 2+4회담과 관련해서 아직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미해결 상태이다. 첫째, 침략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소련의 일반 여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바 있는 강제노역자 관련 협정을 아직 소련과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2+4조약 외의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 자체는 필수적이다. 셋째,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유럽통상전력조약, VKSE)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통일된 독일의 전력이 37만 명으로 감축될 것인지의 여부이다(실제에 있어 동 조약은 1992년 하반기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동 조약을 통해 공격형 무기들의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본 주재 소련 대사 테레초프는 소련 철군을 위해 주어진 3년에서 4년의 기간이 개시되는지를 질문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통일된 독일의 전력이 37만 명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소련군의 철군은 위 조약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강제노역자 문제는 1990년 7월 15일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의 캅카스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 2+4조약안에서 (독일의) 군사적 행동 포기에 대한 문안은 이미 매우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9 E



문서
번호 124

본에서 열린 2+4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1일차)
1990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

2+4회담의 최종 문서의 제목을 놓고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아직 그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정해진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전문; 국경문제 조항;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조항; 생화학 및 핵무기 관련 조항; 독일군 전력에 대한 조항이 그것이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25

본에서 열린 2+4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2일차)
1990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

이 자문회의와 관련한 소련 측 협상 지침에 따르면 논의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다시 정치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처음부터 강조되었다. 동독의 군사적 지위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또한 그 외에도 소련 측 안의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했다: 통일된 독일의 평화 엄수 의무; 4개 전승국 조치의 정당성; 나치 증의 금지; 역사기념관 및 위령탑 등의 현상 유지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26

본에서 열린 2+4회담 (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3일차)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

2+4회담의 일환으로 열린 8차 실무자급 회담 중 자문회의 3일차에 해당하는 본 회의에서 최종 규정의 상당 부분이 완성될 수 있었다. 즉, 전문과 국경문제, 4개 전승국의 권한 소멸, 독일의 생화학 및 핵무기 포기 및 독일군 전력의 상한에 대한 조항들이 그것이다. 아직도 회담의 (최종) 문서의 명칭에 대해, 그리고 구동독지역에 핵무기 탑재 체계가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확실히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또 연합국 군대가 이제까지의 동·서독 간 국경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조약의 효력 발생 전까지 4개 전승국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했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담당자 / 기관 수상청; 수상청 (경쟁, 구조, 산업, 에너지, 기업, 수공업 및 무역, 마샬플랜 재정, 국제경제, 내각 경제위원회 정책 담당) 421과 과장 베스터호프; 수상청장 자이티스

내용

수상청 과장 베스터호프는 수상청장 자이티스에 대한 본 보고서에서 소련군의 철수와 관련된 경제적·재정 문제를 다루는 소련과의 전환협정이 상당부분 완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소련군의 철수를 위한 전반적인 재정적 틀이 협의되어야 규정이 가능한 재정적 측면들을 일단 제외하고 1990년 9월 6일 오전 3시 정각에 전환협정이 완성될 수 있었다. 4년 기간에 나누어 185억 마르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련 측의 주장을 서독 연방재무장관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였다. 서독 연방재무부의 계산에서는 그 비용을 40억 마르크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 바이겔이 스스로 소련에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독일 측에서는 그 외의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지역의 소련군 주둔 대지 및 작센주와 튀링겐주 소재 독-소 비스무트 주식회사 (과거 세계 4위의 우라늄 채굴량을 자랑하였으며, 1991년 12월에 소련에서 독일에 그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던 광산회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 우려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 136/ 26869, 441-84010 Wo 107 Band 2



문서
번호 128

독일문제에 대한 규정 논의에 대한 발트해 연안국가들의 참여 요구-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 리투아니아 국회의장 란드베르기스;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하이켄 박사

내용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는 발트해 연안국가들의 성명을 접수하였다. 여기에서 이들 국가는 소련이 발트해 연안국가들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방 연합국 및 소련은 발트해 연안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발트해 연안국가들의 완전한 독립 상태의 재확립은 지체없이 서방 연합국들과 소련 간의 협상 중의 안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7 E

본에서 열린 2+4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4일차)
1990년 9월 7일

담당자 / 기관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

2+4회담의 일환으로 열린 8차 실무자급 회담 중 자문회의 4일차 회의에서는 연합군 군대가 이제까지의 동·서독 간 국경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남은 문제들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내려진 연합군 측의 결정들의 효력에 대한 질문은 동·서독의 외무장관들이 2+4조약의 서명일에 4개 전승국 외무장관들에 전달할 공동 서신에서 답해질 것이다(이와 관련해 본 문서집에 포함된 1990년 9월 3일자 <2+4 조약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 성명 초안> 문서를 참고).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30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간의 전화통화
1990년 9월 7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장;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내용_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공유하였다. 동독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에 대한 협상에도 진전이 있었다. 콜 수상은 전환협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련 내 (복귀한 군대를 위한) 주거시설의 건설 문제, 철수 전까지 동독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그리고 (소련 군인들의) 직업전환교육 및 귀환 교통비용 문제 등이 그에 해당한다. 위 주거시설의 건설 문제를 현지에서 전담해 결정할 소련 측 인사가 필요하다. 양측의 전문가들이 그 진행을 협의해야 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콜 수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실질적인 문제들을 밝힐 포럼의 구성에 찬성하였다. 이 포럼은 비용의 총액에 대해 합의가 되자마자 만들어져야 한다.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해 큰 그림을 잘못 그려서는 안될 것이다. 콜 수상은 80억 마르크라는 제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보고, 주거시설의 건설을 이 제안의 특별한 내용으로서 제외하였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주거시설의 건설에만 11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콜 수상은 소련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지 주거시설이 아니라 인프라 설비의 건설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콜 수상은, 특히 6억 마르크 상당의 돈육이 소련에 공급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동 물자는 동독에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공급은 1990년 10월 3일까지만 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가트(GATT)와 유럽공동체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1990년 10월 3일의 통일 경축행사에 초청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30130 S 25 Üb 5 Band 2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 파견단 단장 겸 동독이 체결했던 국제법적 조약의 전환협상 전권 대사 크로박; 소련정부 파견단 단장 겸 동독과의 국제법적 조약의 전환협상 전권 대사 샤르코프;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제 조약 담당) 501과

내용

이 외무부의 보고서는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과 소련 간 조약들의 처리 문제에 대한 1차 자문회의의 논의 내용을 다룬다. 소련 측 요청에 따라 위 조약들을 처리하는 데 대한 자문 회의가 1990년 9월 6일 및 7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를 위해 동독 외무부는 동독과 소련 간 체결되었던 조약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제공하였다. 이 조약들의 리스트를 바탕으로 조약들은 독일통일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될 조약들, 그 효력이 종료될 조약들 및 그에 대해 조속히 협상이 요구되는 조약들로 분류되었다.

한편 여기에 동독과 소련 간 체결되었던 3개의 정치적 우호 및 협력에 관한 조약들은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외에도 소련군의 동독 주둔에 관련되는 조약 및 협정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소련 측이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맥락에서 논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외무부는 그 다음 단계로 각 담당 부처에 대해 이 리스트에 수록된 조약들을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40713E



문서
번호 132

1990-1991년도 동독지역에서 소련 측에 제공된 식료 및 기호품-그 협상과정에 대한 모스크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고

1990년 9월 10일

담당자 / 기관 소련 국제경제관계부; (서독) 연방 식량·농림부차관 키텔 박사;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슈미트-폴크마

내용

1990년 9월 7일에 소련 국제경제관계부와 동독 식량·농림부 간에 소련 측에 제공될 약 10억 마르크 상당의 식료 및 기호품에 대한 의정서가 작성되었다. 동 협상은 서독 연방 식량·농림부차관 키텔 박사가 독일 측을 대표하였는데, 그 협상에 동독 측의 대표도 배석하였다. 독일 측은 동 협상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동독 생산 잉여 농산품을 판매하고자 하였다. 동 협상 의정서의 작성은 동·서독의 각 주무부 관료들이 공동으로 맡았다. 독일 측은 동 협상에서 자신의 상품 목록안을 거의 대부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로써 동독의 과잉 생산물이 서독의 물가 수준을 지나치게 내릴 것이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소련에 제공할 제품들의 가격은 저렴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그와 관련된 비용은 연방 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 소련 측 역시 최소한의 외환을 가지고 식료품 공급 결핍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1990년 9월 11일

담당자 / 기관_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소련 외무장관 대리 유리 크위진스키;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과장 클라우스 노이
베르트

내용_

겐서 외무장관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 대해 오는 모스크바에서의 2+4조약 서명
으로 이제까지의 협상 중의 동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긍정적인 발전의 방향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앞으
로 통일된 독일과 소련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자고 답하였다. 소련 외무장관 대
리 유리 크위진스키는 다음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2+4조약에서 아직 미해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최종 문서가 ‘조약’으로 불리게 되는 데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
다. 조약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 문안에 대해서는 1990년 9월 11일 6개
국 외무부 정치국장들의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3개 서방 전승국의 군
대가 소련군의 철수 이후 동독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남아
있었다. 3개 서방 전승국은 동독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겐서 외무장관은 이 문제를 동독지역에 있어서 독일 주권의 문제로서 이해하였다. 그
에 따르면 독일연방정부가 모든 국가들의 안전보장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선언을 소련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이러한 군사 작
전에 대해 (조약 내)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 대신 영국이나
프랑스 측이 원하는 것처럼 다른 성명이나 해석을 덧붙이지 않으면서, (구동독지역에 서방
측) 군대가 “주둔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독일 측의 표현만을 사용해야 할 것이
다. 겐서 외무장관은 이 문제는 수년 후에는 특별한 쟁점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겐서 외무장관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소련 측은 그 외에 독일과 소련 간에 앞으로 빠른 시기에 합의에 도달한 사항들에 대해
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예를 들어 군사협정과 관련해 별도로 약 1주일
간의 협상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문서
번호 134 독일 관련 최종 규정에 관한 조약
1990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 한스 디트리히 겐서 외무부장관, 로타 드 메지에르, 톨랑 뒤마, 더글라스 허드,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제임스 베이커

내용

이 조약을 통해 독일통일과 함께 4대 전승국이 베를린 및 독일에 대하여 갖는 권한 및 책임은 모두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데르 나이세 강을 포함한 통일독일의 현재의 국경은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 독일과 폴란드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조약을 통하여 양국 간 국경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한다.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 더 이상 새로운 영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국방과 관련하여 독일은 화생방 무기 생산 및 보유 포기의사를 확인하였고, 통일 이후 3-4년 안에 병력의 규모를 37만 명으로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1994년에 종료되는 독일 주둔 소련군 문제는 독일과 소련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소련은 현재 동독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이 1994년에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속하지 않는 독일군만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그때까지 프랑스, 영국, 미국 군대는 독일 측의 요청에 따라 베를린에 계속 주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무기를 반입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소련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주둔지역에 군사동맹에 소속된 독일군도 주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지역에 핵무기 발사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출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1990. Verträge zur politischen Einheit. Bonn.

담당자 / 기관 겐서 외무장관;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9월 12일의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대한 조약-2+4조약 및 1990년 10월 1일의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성명'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1) 서독과 동독 및 전 베를린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현 국경은 최종적이다. 폴란드와 이후 체결할 국제법적 조약을 통해 이점이 재확인될 것이다.
- (2) 독일은 평화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 (3) 독일은 생화학 및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독일군의 전력은 3년에서 4년 이내에 37만 명으로 제한한다.
- (4) 소련군은 1994년 말까지 동독지역에서 철군한다.
- (5) 소련군이 동독지역에서 철수할 때까지 구동독 영토에는 오직 다른 지역에서 독일군 전력만 배치될 수 있다. 다른 외국군 전력은 동독지역에 주둔할 수 없으며 이곳에서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 외에 동독지역에 핵무기 탑재체계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 외 다른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6) 독일은 동맹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 (7) 연합국들의 모든 권한과 책임 및 시설들은 소멸 및 제거된다. (8) 동 조약의 비준 및 승인에 대한 규정들 (9) 조약의 효력 발생 (10) 조약상의 언어(독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조약문의 공탁 및 복제에 대한 규정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MULT-781

문서
번호 136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모스크바 회담
1990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셔;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내용

2+4조약의 서명 이후 서독 연방 외무장관 겐셔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및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졌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함께 걸은 ‘먼 여정’에 대해 치하하였다. 소련과 독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특히 모스크바조약 및 양국 간의 양자 간 협력의 결과였다. 만일 독일통일 과정에서 다른 조약들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는다는 인상이 생겼을 경우, 소련 사회에 폭발적인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 외 재정적인 합의들도 적절했으며, 그에 독일은 한 축을 담당했다.

겐셔 외무장관은 2+4조약의 실현에 있어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개인적인 기여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겐셔 외무장관은 소련의 오늘날의 결정은 가장 어려운 종류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소련 측이 보여준 신뢰가 옳은 것이었음을 (독일 측 역시) 증명해 보이려고 하며, 이제 갑자기 (이를 금새 잊고)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겐셔 외무장관은 (동독 주둔 중인) 소련 군인들이 독일을 친구가 된 상태에서 떠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28 E

담당자 / 기관 겐서 외무장관; 동독 드 메지에르 총리;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장관 허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 프랑스 외무장관 뒤마

내용

이 문서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2+4회담의 제4차 외무장관급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최종 조약규정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비록 동독영토에서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가 이중 탑재 가능한 탑재체계의 배치가 허용되었기는 하나, 이는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을 탑재하는 형태로서만 계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참가자들은 동 협상의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치하하였다. 이들은 뉴욕에서 열리는 오는 1990년 10월 1일과 2일의 헬싱키협정 정상회담에서 본 2+4조약에 대해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통일된 독일은 2+4조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독일은 생화학 및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그 군대 전력을 제한한다.

동독의 드 메지에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동 2+4조약에 필수적인 부록이 될 양자의 공동 서한을 다른 4개국 외무장관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서한에서는 다음 4개 사항이 중요하였다. 1. 여기에서는 미해결 재산권 문제에 대한 1990년 6월 15일의 서독과 동독정부의 공동 성명이 언급되었다.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점령법에 기초해서 시행되었던 몰수 조치는 더 이상 원상회복될 수 없다.” 소련과 동독은 당시 시행되었던 조치들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서독정부는 그러한 입장을 인식하였다고 답하였다.

서독정부는 미래의 통일된 독일의 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손해 보상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2. 전쟁과 폭력적 지배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 및 전몰자 묘지는 그대로 유지·보존되어야 한다. 3. 통일독일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4. 구동독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맺었던 국제법적 조약들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혹은 폐지될 것인지 아니면 변경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 서한의 내용을 발터 쉘 전 외무부장관의 소련정부에 대한 1970년의 서신 및 전 연방특임장관 예곤 바의 동독정부에 대한 1972년의 서신 각각의 내용과 비교해 볼 만 하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38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점령법의 폐지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율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연방 법무부; 연방 경제부

내용

본 암호화된 외무부의 전문에서는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4개 승전국의) 점령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독일 측 실무단이 만든 안에 따르면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해지 혹은 종료와 함께 점령법은 베를린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관할권 소재의 협의를 포함하여 확정된 절차는 각 관할지의 정치적 진전 상황과 연계하여 추후 시점에 다시 논의가 될 것이다. 외무부는 이 때문에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이 해지 및 종료되는 문제를 독일 각 연방 간에 조정해 놓을 것을 제안하였다.

[문서의 다음에서는 그 상세 제안 내용을 6개항에 걸쳐 요약하고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8E



문서
번호 140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 해지에 대한 성명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보고로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해지에 대한 성명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를 위한 형식 및 범위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보고에서는 다음 두가지 사항에 걸쳐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35개 헬싱키협정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기 전 1990년 10월 1일에 뉴욕에서 동 성명에 4개국 외무장관이 서명해야 한다.

둘째, 영국이 동 해지 문제와 얽힌 복잡한 문제들의 조정 역할을 맡는다. 영국 측은 성명의 문안을 우선 프랑스, 미국 및 독일 측과 협의한 이후에 소련 측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영국 측이 동일한 내용의 성명안을 프랑스, 미국, 및 소련 측에 제안한 후, 동·서독의 두 외무장관의 배석 하에 그 4개국 외무장관들이 성명에 서명을 할 것이다.

서독 외무부는 이러한 영국 측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다른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4개국 외무장관들이 성명에 서명을 하면, 동·서독의 두 외무장관은 동 문서의 추가 문서 형식을 통해 이를 양지하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대안에서 독일이 이 권한 해지 성명에 ‘참여’했다는 점이 더 잘 표현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8E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산하 ‘국제위원회’;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내용

이 문서는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가 보낸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블레히 대사는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2+4 외무장관급 회담 중 소련 측으로
부터 2+4의 최종 문서가 지금까지 상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소련 최고 소비에트(Oberster
Sowjet der UdSSR)에 의해 서명되고 비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다. 그 서명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산하 ‘국제위원회’(Ausschuss für internationale Angelegenheiten
des Obersten Sowjets der UdSSR)가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항 변동은 서
독대사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소련 내) 법령 변경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사는 위
원회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관 기구가 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4회담의 최종안에 대한 소련 내부에서의 결정적인
논의가 더 쉽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사는 보고하였다. 그 이유는 이 위원회의 위
원들이 소련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 및
국가안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2+4조약의
처리는 비판과 어려운 논쟁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4조약의 내용은 소
련 내부에서 잘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련 외무부는 특히 조약에서 재정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에 부응하여 고르바초프
는 서독과 약속한 금액이 아주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소련 측은 헬싱키협정 내 신설
될 군사적 충돌 방지 센터를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동독을 포함한 중·동유럽에서의 (세력)
상실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줄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8 E



문서
번호 142

독일조약의 폐지, 전환협정(1952-1954년)의 부분적 폐지 및 베를린에서의 법적 전환 문제에 대한 합의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 서독 외무부 법무국 (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내용

본 외무부의 초안에서는 독일조약의 폐지, 전환협정(1952-1954년)의 부분적 폐지 및 베를린에서의 법적 전환 문제에 대한 합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초안은 외무부차관 및 장관에 대한 보고용이다.

프랑스, 영국 및 미국과의 협상 중 1990년 9월 18일에 보고를 위해 2개의 영문 문서가 작성되었다. 첫 번째 문서는 독일조약의 폐지, 전환협정(1952-1954년)의 부분적 폐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한 및 서신 교환 내용을 다루고 있다(본 문서 부록 1 참조).

두 번째 문서는 베를린에서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의 특별한 권한의 종결 및 그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다룬다(본 문서 부록 2 참조). 이에 해당하는 독문 및 프랑스어 문서는 아직 작성 중이다.

그 작성에 있어 독일 대표단은 연방 외무부, 법무부 및 재무부 그리고 베를린 시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8E

문서
번호 143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에 따른 독일과 관련된 규정들의 무효화 및 파리강화조약 및 핀란드-소련 간 조약에 의거했던 핀란드 주권 제약의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핀란드정부의 결정

1990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핀란드정부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핀란드 외무부가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로 핀란드정부가 1990년 9월 21일에 내린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결정에서는 핀란드정부는 독일의 통일 및 2+4조약에 따른 독일 주권 회복에 근거하여, 1947년 2월 10일의 파리강화조약의 3부 내용은 (핵무기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의미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48년 4월 6일자 핀란드-소련 간 친선, 협력 및 조력에 대한 조약에 관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즉 양 조약에 의거하였던 핀란드 주권의 제약이 이로써 함께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이 선언되었다.

파리 평화회의 의결 3부에는 핀란드가 독일에서 생산된 전쟁물자 또는 민간항공기를 구입하거나 독일형 모델을 생산하는 것이 금지되었었다. 나아가 핀란드는 독일의 재무장을 막는 데 협력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 협정은 나아가 핀란드의 주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육해공군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 그런 것이다. 이 규정은 핀란드가 완전한 주권국가로서 유엔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회원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와 유사한 것이 1948년 4월 6일에 체결된 핀란드-소련 간의 협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에는 독일은 가능한 침략자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 9월 12일에 독일과 소련이 2+4조약에 서명하고 친선우호관계를 맺기로 확인하면서 2차 세계대전과 동서냉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황이 종결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조약도 그에 부응하게 새롭게 해석할 것이라는 것이 이 보도자료의 논지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1 E



문서
번호 144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군대의 바르샤바조약기구 연합군 탈퇴에 관한 의정서
1990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민주공화국 군축국방부장관, 바르샤바조약기구 최고사령관

내용_

- 제1조: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과 더불어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에서 탈퇴하며, 조약과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 제2조: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 가입국가의 군대를 위해 어떠한 참모진도 제공하지 않는다.
- 제3조: 바르샤바조약 지도기관에서의 인민군 소속자의 활동은 중단된다.
- 제4조: 군사적 안보 이익의 보장과 관련해서는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 간 협약을 따른다.
- 제5조: 독일민주공화국은 문서들을 바르샤바조약 군사기구에 반환하거나 혹은 군사기구의 동의에 따라 파괴한다.
- 제6조: 인민군 지도부와 바르샤바조약 군사기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요구나 요청을 하지 않는다.

출처_ Ehlert, Hans (Hrsg.).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S. 511-512.

담당자 / 기관_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한스-디트리히 젠서 연방 외무장관

내용_

아정스 외로프(Agence Europe)지 주간인 에마누엘 가조(Emanuele Gazzo)는 독일통일의 당일에 유럽 내에는 통일된 독일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가조 주간은 이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정치에 대해 신뢰를 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콜 수장과 젠서 외무장관은 독일의 통일이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가조 주간은 독일문제의 해결은 유럽연방(Föderation)을 통해 가능한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한국가의) 헤게모니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독일은 유럽 내 화폐통합을 받아들여야 한다.

출처_ Gazzo, Emanuele. Germany in Europe. Increased responsibilities. In: Europe. 03.10.1990. Nr. 5341. S. 1.



문서
번호 146

전 세계 정부들에 보내는 연방 수상 헬무트 콜의 서신

1990년 10월 3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독일연방공화국; 폴란드공화국; 동독; 유럽공동체; 미국; 소련; 유엔

내용

독일통일의 당일에 콜 수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전 세계 모든 정부들에게 동 서신을 보냈다. 콜 수상은 통일이 세계평화와 유럽통합에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독일이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구동독의 국제조약들은 재검토될 것이다. 독일은 앞으로도 서구 민주주의 및 나토의 일원이며 전 세계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독일정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전력 감축을 통해 국제적 군축에도 공헌할 것이다.

출처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05.10.1990. Nr. 188. S. 1227-1228.

문서
번호 147

통일이 유럽공동체의 운영 방식에 주는 영향
1990년 10월 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독일연방공화국; 유럽공동체;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지는 통일된 독일에 대한 두려움을 비판하면서, 독일 통일이 다음의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독일통일을 통해 유럽이 두 부분으로 분할되었던 것이 종결되며, 또한 그로써 유럽통합이 촉진된다. 통일된 독일은 미래에 변화를 겪겠지만, 이제까지 독일이 유럽공동체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출처_ François-Poncet, Jean: Les deux unités. In: Le Figaro. 03.10.1990. Nr. 14 340. S. 1. Übersetzung vom Centre Virtuel de la Connaissance sur l'Europe.



문서
번호 148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의 독일통일 공표
1990년 10 3일

담당자 / 기관 유엔총회; 유엔사무총장; 연방 외무장관 겐서

내용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1990년 10월 3일자 서한에서 이날부터 2개의 독일국가는 하나의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며, 그 명칭은 '독일 (Deutschland)'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은 이를 유엔의 각 회원국 및 각 산하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같은 날 유엔 사무총장은 이 요청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독일의 통일을 공표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29 E

문서
번호 149

통일에 대한 영국 및 프랑스정부의 유보적 자세
1990년 10월 4일

담당자 / 기관_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연방정부; 소련; 미국

내용_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독일통일에 대한 여러 우려들에 대해 보도하였다. 먼저 독일이 소련에 접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금은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독일 자체에 대한 우려가 더 지배적이다.

독일통일은 무엇보다 프랑스와 영국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양국에 있어 자신의 국가 이익을 대변할 주권을 가진 독일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 프랑스와 영국의 방위 및 유럽정책은 (서)독일과의 비평등적 관계에 근거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제 독일에 자국과 동일한 독립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주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권까지 유럽통합을 위해 함께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로에 서 있다.

출처_ Wallace, William: Joy leaves heartache in London and Paris. In: The Guardian. 04.10.1990. S. 11.



문서
번호 150

독일통일의 국제적 성격
1990년 10월 4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헬싱키회의; 나토; 서유럽 연합;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폴란드 총리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남·중·동유럽 국가들

내용

전 독일을 포괄하는 최초의 연방의회 회의에서 콜 수상은 의회가 2+4조약을 비준할 것을 호소하면서, 독일통일의 국제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였다. 독일은 서방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집단 방위체제 내에서 주권을 분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목표는 유럽 국가연합을 건설하는 것이다. 콜 수장은 프랑스와의 협력자 관계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 외에도 "더 적은 무기가 평화를 만든다"라는 모토 하에 국제적 군축에도 기여한다. 이에 관해 콜 수장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합의한 바 있다. 소련군은 1994년 말까지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다. 그 밖에도 독일은 폴란드공화국 간의 현존하는 국경을 보장한다. 또한 독일은 빈곤과 기근, 그리고 환경 파괴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출처 Kohl, Helmut. 1991. Vereinigung Deutschlands im Jahre 1990. Verträge und Erklärungen. Bon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S. 280-287.

문서
번호 151

구동독지역에 대한 소련 원유 공급의 축소-독일 외무부의 모스크바대사관에 대한 통지문

1990년 10월 19일

담당자 / 기관 독일 연방 외무부 (국제 에너지 정책, 비핵 에너지 정책 등 담당) 405과 소속 보빙어; 모스크바 주재 독일대사관

내용

독일 연방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독일대사관에게 소련 외무부의 가능한 한 고위급을 접촉하여 다음 내용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조약 속에서 합의된 바 있던 구동독에 대한 소련의 원유 공급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동독지역의 정유시설은 소련의 원유 공급에 의존적이며 단지 소량의 원유 비축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일부 정유시설은 원유 공급 부족으로 폐쇄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오는 동절기에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련은 자신의 공급 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68 E



문서
번호 152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과 소련 간 조약들의 처리 문제-2차 자문회의
1990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외무부

내용_

본 외무부의 외무부차관에 대한 보고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과 소련 간 조약들의 처리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0년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상기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결과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본 보고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동 의정서에는 독일통일의 달성과 함께 폐지되게 될 기존의 61개 합의들이 열거되었다. 외무부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폐지는 별도의 추가 합의가 없어도 국제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동 2차 자문회의는 쉽지만은 않았는데, 소련 측이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 그 다음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 10월 12일로 동 의정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후에도 소련 측은 놀랍게도 또 다시 자문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하였다. 우선 중요한 문제는 기존 조약들의 폐지가 어떠한 형식으로 확인가능한가의 문제였다. 이 외에도 소련정부는 동 자문회의 협상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를 원했는데, 독일 측은 그 공개가 이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에 동의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1668E

1990년 10월 24일

담당자 / 기관 외무부, 법무부 (남극회의 및 해상법, 항공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
등 국제법적 특수부분 담당) 504과; 연방 재무부

내용

본 외무부 차관에 대한 보고 초안에서는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법적 지위 존속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유럽 해양 채굴산업 컨소시엄인 국제해양금속(Interocean-metal)이 문제가 되었다.

외무부차관은 상기 컨소시엄에서 동독 지분의 유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는데, 동 보고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외무부는 상기 컨소시엄에서 동독 지분을 유지하는 문제는 국제 기구들에서 회원국의 권리 문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무부의 모든 관련 담당부처는 동 컨소시엄 내 구동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원자재 정책이나 미래 학술적-기술적 협력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 컨소시엄 참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인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해양금속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폴란드 측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을 통해 독일의 동 컨소시엄 회원국 지위가 소멸하였음을 전달할 것이다. 연방 재무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이 구동독의 컨소시엄에 대한 (약 100만 마르크 상당의) 기존 의무적 분담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1668E



문서 번호 154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기민당/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의 발의
1990년 10월 30일

담당자 / 기관 독일 연방의회;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교섭단체; 사민당 원내교섭단체; 자민당 원내교섭단체; 신연방주들; 유럽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공동체 이사회(Ministerrat)

내용

기민당/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의 발의에서 연방정부는 독일통일을 가능한 한 유럽공동체 및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조화 속에서 실현하도록 요구받았다. 동 원내교섭단체들은 유럽공동체 각 기관의 조속한 처리에 감사하면서, 아직 협상해야 할 이행조치들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해주길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으로 확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동독지역에서 구신탁청이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 및 동 지역에서 (특히 구조펀드를 포함한) 유럽공동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타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391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정부 파견단 단장 겸 동독이 체결했던 국제법적 조약의 전환협상 전권 대사 크로벡; 소련정부 파견단 단장 겸 동독과의 국제법적 조약의 전환협상 전권 대사 샤르코프

내용

본 외무부의 보고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과 소련 간 조약들의 처리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는 특히 그를 위한 3차 자문회의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1990년 11월 12일에서 16일까지 본에서 동 3차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본 보고 부록에 첨부되었다.

주된 논의는 교통 및 토지 관련 문제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2개의 실무단이 수행하였다.

전의 2차 자문회의에서 소련 측은 그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199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97개 조약에 관해 거론하였다. 이 조약들의 대부분은 소련에 매우 경제적으로 중요한 (동독 측으로의) 물자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었기에, 소련 측 대표단은 이에 대한 확약을 의정서의 내용에 포함시키길 원했다. 전권 대사 크로벡은 외무부가 소련 측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1668E



문서
번호 156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과 관련한 유럽위원회의 법령 권고 1990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 유럽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공동체 이사회; 동독; 독일연방공화국

내용

독-독 법률지(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는 유럽위원회가 권고한 동독의 유럽 공동체 귀속 관련 경과 규정의 절차들을 요약하였다. 또한 해당 법령들의 목차를 정리하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독일통일 때문에 이들 경과 조치들은 1990년 10월 3일의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이후부터 잠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유럽공동체법 전환협정'에 의거해 독일연방공화국은 1990년 9월 28일자로 경과조치들을 물려 받았다. 유럽 의회는 1990년 말까지 유럽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된 예외 조항들의 대부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출처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0. Heft 9. S. 352.

담당자 / 기관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공동체 이사회; 동독지역; 유럽위원회; 독일연방공화국

내용

이 문서는 유럽이사회가 의결한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을 위해 199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경과 규정들을 열거하였다.

동 경과 규정들은 4가지 부문에 적용된다.

구동독과 중·동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동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들 국가들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예외규정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농업 부문에서는 설탕, 우유 및 육류에 대한 유럽 생산량 쿼터 규정이 구동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환경 부문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 밖에도 구조정책 부문에서도 구동독이 비록 그 경제에 대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조 펀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다양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은 1991년에서 1993년까지 30억 유럽 통화 단위(ECU)로 인상되었다.

출처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1991. Mesures transitoires nécessaires à l'intégration de l'ex-RDA dans la CEE. In: Documents d'actualité internationale. 01.03.1991. Nr. 5. S. 238.



문서 번호 158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폐지에 대한 공식적 확인
1990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 구동독 기체결 국제법적 조약의 전환협상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 전권 대사 크로벡; 독일 외무부

내용

이 문서는 외무부가 외무부 내의 모든 부서와 해외대표부에 보낸 회람이다. 그 내용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과 제3국들 간의 기존 조약들의 처리 문제이다. 특히 이 회람은 구 동독의 제3국들과의 국제법적 조약들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회람의 부록에는 모든 연방부처를 수신인으로 하는 1990년 12월 11일자 서신이 포함되었다.

동 회람에서는 미래에 외무부에서도 역시 상기 서신에서 서술된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하 문서에는 동 서신에 규정된 업무 처리 절차를 요약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1668E

소련과의 경제적 관계-소련과 구동독 간의 조약들, 천연가스 공급, 독일 수출, 미 이행 지불금 등의 문제에 대해-모스크바 주재 독일대사관의 소련 경제부와의 협의 내용

1990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 소련 총리 대리 스테판 시타르잔; 소련 국제경제관계부장관 콘스탄틴 카투셰프; 소련 국제경제은행장 유리 모스스코프스키; 모스크바 주재 독일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

내용

모스크바 주재 독일 대사 클라우스 블레히는 소련 측 대표들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소 간의 경제적 관계의 재건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블레히 대사는 소련과 교역이 있던 동독지역 기업들은 1991년도에도 소련 측을 위해 생산을 계속해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소련 측은 상품의 공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독일연방정부가 신용을 보장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련 측은 독일연방정부가 동독지역 소재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이들이 계속 소련과 교역을 계속하기를 명백하게 원하고 있었다. 소련 국제경제은행과 관련한 사업 보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소련 측은 다음 며칠 내로 답변을 하고자 하였다. 소련의 동독지역 가스 공급이 1991년도에는 중단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소련은 1990년도 말에 독일 측이 전문가 대표단을 파견해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및 운송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원했다. 블레히 대사는 소련 내 기관들이 특히 (독일의) 중소 사업체들에 대해 대금지불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소련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그 문제가 앞으로 빠른 시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소련 측은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외채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였다. 소련 측은 상기 외채는 오로지 독일에 대한 기존 소련의 채무 이자의 상환에만 사용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블레히 대사는 이 대화로 미루어 보아 소련 측에 있어 동독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는 소련에 심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출처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160

독일통일과 국제법
1991년 1월 3일

담당자 / 기관_ 프란스 폰 더 던크(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 페터 H. 코이만(레이덴대학교)

내용_

48쪽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독일통일 과정의 국제법적 측면들은 1990년도 말의 시점에서 보아 대체적으로 이미 규정된 상태라고 견해를 밝혔다. 본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관련한 국제법적 변화가 논의되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통일 전에 동·서독이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동안의 동·서독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4개 전승국, 폴란드, 헬싱키협정 회담, 유럽공동체,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같은 외부적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되었다. 독일의 통일이 국제법적으로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다시금 되살릴 것인지의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출처_ Faculty Publications, Paper 7,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 Spring 1991, S. 510-557

문서
번호 161

구동독 영토 및 폴란드 주둔 소련군의 철수 및 폴란드 측의 동독 인민군 물자
인수 의향-독일 외무부 정치국 216과

1991년 8월 9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외무부 정치국 216과

내용_

독일 외무부 정치국 216과는 구동독 영토 및 폴란드 주둔 소련군의 철수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 이 보고서에는 폴란드 측의 동독 인민군 물자 인수 의향과 관련한 회담 논의의 준비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제까지 폴란드는 소련군의 독일에서의 철수 문제를 소련군의 폴란드에서의 철수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소련과 폴란드 간에는 소련군의 폴란드에서의 철수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소련은 소련군이 폴란드에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폴란드에 우선 유지되는 소련군 주둔 규모는 독일에서의 소련군 철수와 연계하여 이용될 것이다.

한편 폴란드 측의 동독 인민군 물자 인수 의향과 관련해서는 이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현재 중·동유럽과 관련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유보 중인 상태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162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 국가 파트너들의 유보적 자세
1996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 헬무트 콜; 유럽공동체;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내용

유럽공동체 내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회원국 간에 큰 입장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유보적 자세를 보인 것은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였다. 대처 영국 총리는 독일인들에 대해 깊은 불신을 지니고 있었다. 콜 수상에 따르면 이 때문에 대처 영국 총리가 통일독일이 유럽공동체에 확실하게 통합되도록 전력을 다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네덜란드 측의 입장에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이 큰 영향을 끼쳤다. 룩셈부르크 및 벨기에 대표들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티가 새로운 '범독일주의'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유럽공동체에 대해 전혀 유보적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단지 스페인 및 아일랜드의 총리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역시 통일에 대해 그 나름의 문제를 우려한 바 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우선 그에 관해 분명한 전략이 없었으며, 프랑스 외무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무엇보다 프랑스 외무부는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출처 Kohl, Helmut. 1996.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Dargestellt von Kai Diekmann und Ralf Georg Reuth. Berlin: Propyläen-Verlag. S. 196-198.

담당자 / 기관_ 유럽연합; 유럽공동체;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정부

내용_

이 법률 주석에서는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에 있어 그 법적 근거가 설명되었다. 원칙적으로 유럽공동체 가맹국들의 영토 변경은, 그 영토 변경이 크지 않은 경우, 그 조약의 변경 없이도 또 다른 유럽연합 소속국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동독에는 모든 유럽공동체 가맹국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가입이 독일의 경제력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1990년 4월의 더블린 유럽이사회의 특별 정상회담에서 유럽공동체 가맹국들은 조약의 변경 없이 동독을 유럽공동체에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였다.

출처_ Vedder, Christoph; Folz, Hans-Peter; Grabitz, Eberhard; Hilf, Meinhard. 2009. Das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zum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Artikel 48. Randnummern 10 bis 12. <http://www.beck-online.beck.de>

문서
번호 164

폴크스바겐/작센주와 유럽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1999년 12월 15일

담당자 / 기관 유럽 사법재판소; 유럽위원회; 독일연방공화국; 작센 연방주; 폴크스바겐주식회사; 폴크스바겐 작센 유한회사

내용

1심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작센 연방주, 폴크스바겐주식회사 및 폴크스바겐 작센 유한회사의 1996년 6월 26일자 유럽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를 기각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독일이 폴크스바겐 그룹의 모젤 및 캄니츠의 공장에 대해 지원하고자 한 보조금의 일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결정은 유럽연합의 유럽공동체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독일의 위 보조금 중 5,391만 마르크를 지역적 열악함의 균형을 위한 지원으로서 승인하였지만, 다른 2,497만 마르크에 대해서는 그 승인을 거부하였다. ‘독일의 분단 때문에 영향을 받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특정 지역의 경제적 낙후 상태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은 유럽공동체조약에 의거하여 공동체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이다. 하지만 신연방주들의 경제적 낙후상태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구연방주 수준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단으로 초래된 경제적인 낙후상태’라는 말은 동·서독 간의 국경 설치 및 유지로 인한 고립으로 발생한 것만을 가리킨다. 즉 구연방주들과 신연방주들 간의 상이한 발전은 동·서독 간의 분단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국가 내에서 상이한 정치·경제적 체제가 설립되고 진전되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출처 Europäischer Gerichtshof, Abteilung Presse und Information, Pressemitteilung Nr. 97/99, Rechtssachen T-132/96 und T-143/96.

독일연방공화국과 유럽위원회 간의 폴크스바겐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2003년 9월 30일

담당자 / 기관 유럽 사법재판소; 유럽위원회; 독일연방공화국; 작센주 경제·노동부; 영국; 폴크스바겐주식회사; 폴크스바겐 작센 유한회사

내용

유럽 사법재판소는 독일연방공화국 및 작센 주의 폴크스바겐 그룹의 모젤 및 켐니츠의 공장 보조금을 제한한 1996년 6월 26일자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988년에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자동차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공동체 지침’에 합의한 바 있었다. 1990년 9월 19일에 유럽위원회는 독일 연방정부에게 신연방주들 내 투자계획에 대한 독일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 및 작센주의 폴크스바겐 그룹은 1991년에 폴크스바겐에 대해 약 9,000만 마르크의 보조금을 승인했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작센주의 보조금 약 2,400만 마르크를 추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독일은 유럽위원회가 잘못된 비용과 효용 분석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독일정부가 그 비용과 효용 분석에 긴밀히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모젤지역에 1994년도에 이미 ‘잘 운영되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공장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다. ‘푸른 초원 위에’ (전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과 확장 투자를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에 그에 대한 보조금의 승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이의제기는 기각되었다.

출처 European Court of Justice, Case C-301/96.



문서 번호 166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독일 연방회의 및 연방의회 위원회
2004년 11월 24일

담당자 / 기관 연방국가적 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독일 연방회의 및 연방의회 위원회; 토마스 드 메지에르 작센주 내무부장관; 동독지역 연방주들

내용
토마스 드 메지에르 작센주 내무부장관은 연방국가적 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독일 연방회의 및 연방의회 위원회에 대해 연방주들의 공동과제 해체(Entflechtung der Gemeinschaftsaufgaben der Bundesländer)에 대한 동독지역 연방주들의 제안들을 전달하였다(기본법 91조, 연방주들의 과제에 대한 연방의 동참 조항 참조). 기본적으로 각 연방주의 수반들은 이미 상기 공동과제를 폐지할 것에 합의한 상태였다. 그 대신에 개정된 기본법 104a조 4항에 의거한 연방의 재정보조가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문서에는 그 상세 내용 포함]

출처 Kommission von Bundestag und Bundesrat zur Modernisierung der bundesstaatlichen Ordnung, Arbeitsunterlage 0099.

담당자 / 기관 동독; 유럽위원회 사무총장 대리 카를로 트로이안; 유럽공동체;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 유럽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르; 유럽 의회; 네덜란드 총리 뤼트 뤼버르스; 벨기에 총리 빌프리트 마르텐스;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내용

온라인 뉴스포털인 EurActiv상의 동 문서에서는 유럽위원회 대표인 카를로 트로이안(Carlo Trojan)의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을 통해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포함되는 것은 유럽 내 존속하고 있었던 의구심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일은 아니었다. 트로이안은 통일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조약안 및 경과 규정을 함께 작성하였다. 자신에 대한 본 인터뷰에서 그는 통일과정이 빨리 진행된 것 때문에 유럽위원회가 겪게된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독의 국제외교적 의무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했다. 동독의 통계가 잘못된 것임이 알려짐과 동시에, 동독이 유럽공동체 내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누릴지도 모른다는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되었다. 트로이안은 독일통일을 위한 들로르 의장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사후적으로 살펴보자면 트로이안은 독일통일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한스-디트리히 겐서 연방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여기에서 겐서 외무장관은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주권국으로서 가입 결정을 하는 데에 대해 또 이를 통해 유럽공동체에 간접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데 대해 어떤 국가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Besondere Sitzung des Europäischen Rates, in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pril 1990, Nr. 4, S. 8.

